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320-01

연구용역사업  
최종 보고서

---

# 사료 관련 법령 체계화 방안 연구

---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2020. 11. 1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보고서 내용을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해당 주관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와 사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사료 관련 법령 체계화 방안 연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박태균)”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관연구책임자 : 박태균

# 목 차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	1
II. 연구개요 .....	6
1. 연구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III. 국내·외 사료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제 비교 .....	20
1. 사료산업과 사료 관련 법령	
IV. 사료 종류별 유통·보관·판매 실태 조사 및 현황 .....	25
1. 사료의 종류	
V.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	49
1. 해외 사례	
2. 한국	
3. 종합 검토 의견	
VI. 유통·보관업과 판매업 업종 신설 필요성 .....	118
1. 해외사례	
2. 한국	
3. 종합 검토 의견	

VII. 사료 표시제도 개선 방안 ..... 164

1. 해외 사례
2. 사료 표시의 주요 내용
3. 사료표시 개선방안
4.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5. 사료 관련 협회의 사료표기 개선에 대한 의견
6. 종합 검토 의견

VIII. 사료관리법의 분법화 ..... 211

1. 사료관리법의 입법 목적
2. 사료 관련 외국 입법 사례
3. 사료관리법의 분법 필요성
4. 사료관리법의 분법 관련 개정 방향
5. 기관별 역할 체계
6.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7. 사료 관련 협회의 사료관리법 분법화에 대한 의견
8. 종합 검토 의견

참고문헌 ..... 266

# 표 목차

<표 1> 사료 오염 물질 .....	8
<표 2> 연구방법 .....	10
<표 3 > 식품안전 법령 체계 .....	14
<표 4> 세계 각국의 사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제 .....	15
<표 5> 배합사료의 유통형태별 판매 비중 .....	28
<표 6> 배합사료 거래형태 .....	28
<표 7> 배합사료의 축종별·판매형태별 현황 .....	30
<표 8> 배합사료의 판매형태별 판매 현황 .....	30
<표 9 >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	31
<표 10> 단미사료 생산 현황 .....	33
<표 11> 단미사료 업체별 판매현황(2019) .....	35
<표 12> 단미사료 총 판매현황 .....	37
<표 13> 반려동물사료 판매업 종류 .....	39
<표 14 > 국내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추정치 .....	41
<표 15 > 우리나라 펫푸드 소매시장 동향과 전망 .....	42
<표 16> 주요 국가별 펫푸드 시장 규모(2017)와 연평균 펫푸드 시장 성장률(2013-2017) .....	42
<표 17> 글로벌 펫푸드·펫케어 상품 시장 매출액과 성장 전망 .....	43
<표 18> 산업 및 상품 매입처별 구성비(애완용 동물과 관련용품 소매업) .....	43
<표 19> 산업과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통계(애완용 동물과 관련용품 소매업) .....	43
<표 20> 주요 어종별 양어용 사료 사용량 .....	48
<표 21 > AAFCO 위원회 .....	51
<표 22> EU의 과학패널구성 .....	54
<표 23> 과학위원회 운영과 협력절차 내부규칙 항목 .....	54
<표 24> 일본 농업자재심의회 사료분과회 위원 명부 중 소속(이름 제외) .....	58
<표 25> 전국사료평심위원회 자격 .....	61
<표 26 >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	75
<표 27>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	76
<표 28>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세부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각 사료 관련 협회의 의견 .....	77
<표 29 >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세부 전문위원회 위원수에 대한 각 사료 관련 협회의 의견 .....	78
<표 30 >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 명칭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의 찬·반 의견 차이 .....	78

<표 31> 사료안전관리위원회 내 세부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위해요소별·유통 단계별·대상 축종별)에 대한 각 사료 관련 협회의 의견 .....	79
<표 3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방안 .....	99
<표 3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업무 .....	101
<표 34> 사료관리법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추가하는 안 .....	107
<표 35>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안 .....	108
<표 36> 사료관리법 운영세칙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추가하는 안 .....	110
<표 37> 사료관리법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추가 주요 내용 .....	115
<표 38>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추가 주요 내용 .....	116
<표 39> 미국 산업분류(NAICS) 반려동물 관련 업종 구분 .....	120
<표 40> 일본 표준산업분류에서 반려동물용 사료 유통업의 업종 구분 .....	125
<표 41> 하치장 리스트 .....	128
<표 42>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보관업과 유통·보관업 신설 관련 의견 .....	133
<표 43> 사료 판매업 신설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의 찬·반 의견 차이 .....	134
<표 44> 등록을 요구하는 영업 .....	158
<표 45>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 신설에 대한 검토 후 제안 .....	163
<표 46> AAFCO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 .....	165
<표 47> 일본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 .....	166
<표 48> EU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일반적 요구조건) .....	166
주: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R.767/2009) .....	167
<표 50> 한국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 .....	168
<표 51> 식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일자 표시제도 .....	178
<표 52> 세계 각국의 식품기한 제도 .....	181
<표 53>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고시) .....	195
<표 54> 반려동물 유기사료 표시방법 예시 .....	196
<표 55> 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의 제한적 유기표시 예시 .....	197
<표 56>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신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 홍보 내용 .....	199
<표 57>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	200
<표 58> 보조사료·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	201
<표 59>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 라벨링 개선 방향 .....	203
<표 60>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 라벨링 개선 방향 .....	204
<표 61> 사료 표시제도(라벨링) 중 표시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의 의견 차이 .....	205
<표 62> 사료 표시제도(라벨링)의 표시 기준을 양축용·수산동물용(생사료 포함)·반려동물용으로 나눠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별 의견 차이 .....	206

<표 63>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의 사료 관련 법률 .....	207
<표 64 >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만한 해외 사료 관리 제도 .....	208
<표 65> 사료 표시제도 개선 관련 제안 .....	210
<표 66> 21CFR Volume 6 목차(발췌) .....	215
<표 67> 일본의 사료안전법과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비교 .....	220
<표 68> 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의 차이점 .....	229
<표 69> 사료관리법상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용 사료의 차이점 .....	230
<표 70> 양축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의 차이 .....	231
<표 71> 배합사료의 축종별·판매형태별 현황 .....	232
<표 72> 배합사료의 판매형태별 현황 .....	232
<표 73>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소관 사항 예시 .....	239
<표 74> 사료관리법 분법의 입법 형식 .....	250
<표 75> 소방법의 분법 내용 .....	251
<표 76>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습지보전법 사례 .....	255
<표 77> 사료관리법 분장할 경우 사료관리법 소관 부서 검토 .....	256
<표 78>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법화 방안 .....	257
<표 79>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법화 방안 .....	258
<표 80> 사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법화 방안에 대한 사료 관련 단체의 찬·반 의견 .....	260
<표 81> 사료관리법 분법, 분장(章)화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의 찬·반 의견 .....	261
<표 82> 사료관리법 분장(章) 때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별 의견 .....	261
<표 83> 사료관리법 분장(章)할 때 수산동물용 사료의 정부 내 관리 부서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별 의견 .....	263



# 그림 목차

<그림 1> 사료의 각종 오염물 유입 경로와 이로 인한 결과 .....	7
<그림 2> 국가적 차원의 사료 안전성 확보 필요성 대두 .....	14
<그림 3>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요 내용 .....	16
<그림 4> 우리나라 배합사료 유통 경로 .....	27
<그림 5> 한우 농가의 사료 공급 경로 .....	32
<그림 6> 반려동물사료 시장의 유통구조 .....	38
<그림 7> 국내 반려견 사료와 반려묘 사료 시장 규모(건사료·습식사료·간식 포함) .....	40
<그림 8> 반려동물용 사료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	41
<그림 9> 양어용 사료의 유통 경로 .....	44
<그림 10> 수입 어분과 국산 어분의 유통 경로 .....	46
<그림 11> 독일의 식품 안전 네트워크 .....	56
<그림 12>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표 .....	117
<그림 13>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179
<그림 14> 식품의 유통기한과 섭취가능기간 .....	179
<그림 15> 기본법의 기능 .....	236

# I .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b>연구과제명</b>	사료 관련 법령 체계화 방안 연구		
<b>중심단어</b>	사료, 분법화,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사료 판매업, 사료 표시제도, 펫푸드, 사료관리법		
<b>주관연구기관</b>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b>주관연구책임자</b>	박태균
<b>연구기간</b>	2020.06.23 ~ 2020.11.19		
<p>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사료관리를 총괄하는 사료관리법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p> <p>이 연구용역에선 사료 안전 관련 전문가 자문·평가 모임인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의 설립 필요성과 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엔 포함되지 않은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유통업을 법에 추가해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사료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했다. 현재 1개의 법(사료관리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료 안전성을 사료의 유형별(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로 분법해 별도 관리하는 것의 효용성과 부작용에 대해 검토했다.</p> <p>전문가 자문회의와 4개 사료협회의 의견 수렴, 문헌 연구와 법적 검토를 통해 각각의 정책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p> <p>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의 설치 방향을 정할 때 행정기관위원회법 등을 포함한 6개 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유사 위원회의 구성 등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사료관리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사료관리안전위원회는 ‘안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사료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질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사료 내 위해물질(동물용 의약품·방사능·중금속·유해미생물·유해 화학물질 등)·사료 원료 안전·사료 표시 등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료안전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각 분과위원회별 참여 위원 수는 10명 이하로 제안했다.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 신설에 대해선 사료의 유형별·업종별로 신설 필요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사료하치장(사료차량)에서의 사료 하자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사료보관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대부분의 직매장이 사료제조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U와 일본 등은 사료보관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보관장소의 안전 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사료제조업체·사료수입업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양축용 사료의 경우 주로 직거래·대리점의 형태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해 사료유통업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판매업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와 관련해선 사료유통업과 사료판매업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려동물용 사료는 사료하치장 보관과 무관하므로 사료 보관업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산동물용 사료에선 생사료 규제 등을</p>			

위해 사료판매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사료유통·보관업과 사료판매업을 사료관리법에 추가하더라도 신고 대상 업종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에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는 유통기한 표시의 폐지와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이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채택되지 않는 일자 표시 제도이고, 유통기한 표시로 인한 식품과 사료 원료 낭비가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엔 식품 분야에서도 유통기한의 폐지가 정부 차원(식약처)에서 적극 검토·추진되고 있으므로 식품(food)보다 안전 요구 수준이 높을 수 없는 사료(feed)에 계속 유통기한 표시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human grade'·'genuine'·'pure'·'natural'·'100%' 등 사료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료 표시에서 해당 용어의 사용이 가능한 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GMO 완전 표시제의 채택을 대비해 GMO 사료 표시제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 사료의 한국어 번역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사료 각 원료의 % 수치(비율)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축용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포함해 사료 원료의 % 공개를 공론화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양축용 사료 표시기준과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료관리법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있는 법령이다. 대상 동물의 유형(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에 따라 사료관리법을 분장(分章)하는 경우 소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양분화, 공동부령 가능성을 검토했다. 분법화를 추진할 경우 일본과 같이 반려동물사료에 적합한 별도 법률(가칭,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와 유통공정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Summary

<b>Title of Project</b>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eeding		
<b>Key Words</b>	feed, separation of the law, feed safety management committee, feed sales, feed labeling system, pet food, feed management law		
<b>Institute</b>	Korea Food Communication Forum	<b>Project Leader</b>	Ph. D. Park, Tae Kyun
<b>Project Period</b>	2020.06.23 ~ 2020.11.19		

People and society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the safety of feed. Accordingl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required to enhance the safety of feed. There is also a need to revise the Feed Management Act, which oversees feed management.

This research presen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Feed Safety Management Committee (tentative name), a gathering of experts on feed safety, and measures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mitte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mmittee. The government conducts a review on whether feed distribution and storage businesses and feed sales businesse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feed management law, should be added to the law to be manage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feed labeling system. The feed safety, which is currently regulated by one law (the Feed Management Act), is divided into types of feed (for farm animal, pet, and marine animals) and the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of separate management are reviewed.

The expert advisory council and the four feed associations gather opinions, present their review comments on each policy plan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legal review.

Whe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eed safety management committee (tentative name), it is possible to refer to the six laws,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Act, and the composition of similar committee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etc.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eed safety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included in the feed management law. The feed management safety committee suggests that a subcommittee should be formed for each hazardous substance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feed, as the focus is on 'safety'. A sub-committee dealing with harmful substances in feed (animal medicines, radioactivity, heavy metals, harmful microorganisms, harmful chemicals, etc.) and safety of feed and marking of feed is proposed. The feed safety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operated mainly by subcommittees, but the number of members participating in each subcommittee is proposed to be less than 10.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feed distribution and storage business and a new feed sales busin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eed business by type and industry. It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consider establishing a new feed storage business to control the occurrence of feed defects in feed storage facilities, but also consider changing the facility standards of feed manufacturing businesses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direct stores are operated by feed manufactur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U and Japan are imposing duties for safety management of storage sites without stipulating the feed storage business separately, it is deemed more desirable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feed manufacturers and feed importers.

But the feed distribution business should be regulated only for the sales business, considering that feed for livestock is distributed mainly in the form of direct trade and agency. Regarding feed for pets,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eed distribution business and feed sales business. Since feed for pets is not related to the storage of feed storage, it seems un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eed storage business. Feeds for marine animals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new feed sales business to regulate raw feed. Even if feed distribution and storage businesses and feed sales businesses are added to the Feed Management Act,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m into those subject to reporting. Propose the abolition of the expiration date mark that must be marked on the feed and the change to the consumption period. This i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expiration date indicator system is rarely adopted worldwide, and the waste of food and feed materials due to the expiration date marking is very severe. In the food sector, the abolition of the expiration date is being actively reviewed and promoted at the government level, so it is not reasonable to maintain the expiration date mark on feed that cannot be higher than food. Definition of various commonly used terms is needed to emphasize the quality of feed products such as 'human grade', 'genuine', 'pure', 'nature' and '100%'.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term can be used in the feed mark.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alternative to the GMO feed labelling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adoption of the GMO complete labell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Korean translation of imported feed and help consumers understand i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method of recording the % figure (ratio) of each raw material of feed. It is suggested that the disclosure of the percentage of feed ingredients, including feed for livestock and pets, should be resolved rationally.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livestock feed and pet food labeling standards. The Feed Management Act is current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f the Feed Management Act is divided according to the type of animals subject to the designation (for farm animal, pets, and marine animals), the competent department shall be unified in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viewed the possibility of bifurcation and joint edict. In case of decentralization, a separate law (tentative name, pet food management law) suitable for pet food, such as in Japan, is proposed to provid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feed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processes for p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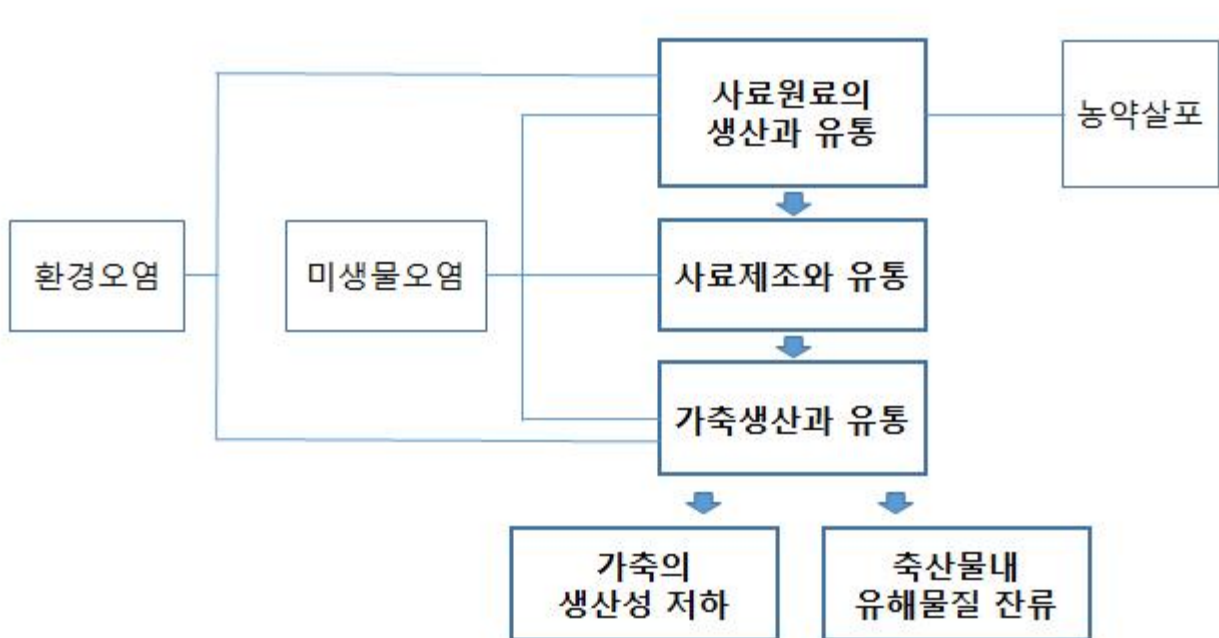
## Ⅱ. 연구개요

## II. 연구개요

### 1. 연구 목적

- 국내 사료분야 산업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사료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사료 품질과 안전성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임.
- 사료 품질과 안전성 관련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도입, 사료 판매업과 사료 유통·보관업의 신설, 사료 표시기준 명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정책 채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현행 사료관리법은 제조·수입에 관한 규제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통단계 사료 관리의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통단계 사료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해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을 사료관리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사료관리법이 양축용 사료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사료 유형별·품목별 특성에 맞도록 법체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현재 사료는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반려동물용(반려동물사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음.

<그림 1> 사료의 각종 오염물 유입 경로와 이로 인한 결과





<표 1> 사료 오염 물질

분류	유형
화학적 위해요소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다이옥신·푸란(PCDFs)·PCB 등) 수의약 잔류물(항생제 잔류물 등) 유기염소계 농약 독성물질(비소·카드뮴·납·수은) 곰팡이 독소 식물유래 독소(Pyrimidine·알칼로이드·항곰팡이 물질 등) 새로운 화학 위해요인
생물학적 위해요소	세균(살모넬라·Mycobacterium) 브루셀라·클로스트리듐·용혈성 대장균·리스테리아 기생충(비료 잔류물) 바이러스 프리온 단백질(BSE 원인 물질)
물리적 위해요소	방사능 물질(세슘·요오드 등) 나노(Nano) 물질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금속·플라스틱 백 등 포장재

출처: FAO/WHO.2015.Hazards Associated with Animal Feed

## 2. 연구내용과 방법

### 가. 연구 내용

#### 1) 국내·외 사료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제 비교 분석

- 현행 사료관리법(하위 법령·고시 포함)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함. 이를 위해 CODEX(UN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미국·EU(유럽연합)·일본·호주·중국 등 주요국의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체계와 규제사항 사례를 분석함.
-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방향을 제시함. 사료 안전성 상시 관리를 위한 민간 협업시스템인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 제안함.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안과 역할·운영 방향 등을 제시함.
- 현행 사료관리법엔 미포함된 사료 유통·보관업, 판매업 등을 사료관리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함. 이를 위해 사료 종류별로 유통·보관과 판매 실태 조사와 현황 분석을 수행함. 배합사료와 단미·보조 사료,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반려동물용 사료(반려동물사료) 등 다양한 사료 유통·보관과 판매 관련 업종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장단점을 분석함. 사료하치장과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 등 업종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설 업종의 종사자 준수 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 2) 사료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 소비자에게 사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소분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표시 기준을 명확화함.

#### 3) 사료관리법 분법화 등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현행 사료관리법을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반려동물용 등 사료 섭취 주체별로 분법화하는 것이 사료 안전과 품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인지 검토함. 현행 사료관리법을 분법화 또는 분장화할 때 기관별 역할체계를 마련하고, 사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나. 연구 방법

<표 2> 연구방법

과제 내용	과제 수행 연구방법	고려 사항
국내·외 사료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제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등과 해외 사료 관련 법령 비교</li> </ul>	
CODEX·미국·EU·일본·호주·중국 등 외국의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체계와 규제사항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li> <li>• EU 일반식품법(GFLR)</li> <li>• 일본 사료안전법</li> <li>• 호주 Livestock Management Act</li> <li>• 중국 식품위생법</li> <li>• CODEX The Codex code of practice on good animal feeding 등 비교 검토</li> </ul>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li> <li>•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li> <li>• 농약관리법 상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li> <li>•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생심의위원회</li> <li>•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 상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li> <li>• 법·시행령·시행규칙·운영세칙 등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명칭 검토(심의를 붙일 것인지 여부, 심의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의미 차이)</li> <li>• 위원회 소속 기관 검토(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li> <li>• 위원회를 사료관리법에 명시할 것인지, 시행령에만 명시할 것인지 검토</li> <li>• 다른 법에 의한 유사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검토</li> <li>• 위원회 위원 숫자 검토</li> </ul>
사료 종류별 유통·보관과 판매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 연구 (관련 통계 자료 수집과 정리)</li> </ul>	

<p>사료하치장과 사료유통·보관업, 사료판매업 등 업종 신설 필요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회의 통한 의견 청취</li> <li>• 해외 사료관리 관련법에 유통·보관업이나 판매업 포함 여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 상 유통판매업의 안전 관련 법령 벤치마킹 검토</li> </ul> <p>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 유통 상의 품질 관리</p> <p>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사료 유통·보관업의 등록, 사료하치장의 등록, 사료 판매업의 등록</p> <p>제9조(제조업의 승계) →사료 유통·보관업의 승계</p> <p>제10조(사료안전 관리인) →사료유통관리인, 사료 유통 종사자 준수 사항</p> <p>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유통 사료의 표시 사항</p> <p>제13조의2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의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이 함유돼 있거나 함유 가능성이 있는 사료 등의 표시</p> <p>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 제조·수입·판매·유통 또는 사용 등의 금지</p> <p>세계 주요국의 사료 유통·보관업 관련 법령과 규정 검토 →사료관리법에 유통·보관업이나 사료 판매업 포함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사</p>
--	---	---

<p>신설 업종의 종사자 준수 사항 등 세부 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상(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참고</li> <li>• 대규모 유통업상(법 12조) 준수사항 참고</li> <li>• 해외 사료 관련법의 사료 보관업과 사료 유통·판매업 종사자 준수사항 규정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 제10조(사료안전 관리인) 벤치마킹 검토 →사료유통관리인, 사료 유통 종사자 준수 사항</li> </ul>
<p>사료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회의 통한 의견 청취</li> <li>• 해외 사료관리법의 라벨링 방안과 국내 라벨링 관련 법안의 차이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관리법상 표시 관련 법령 중 개선 필요가 있는 내용 검토</li> <li>• 해외 주요국의 사료 라벨링 관련 법령 벤치마킹 검토</li> </ul>
<p>양축용·수산동물용·반려동물용 등 사료관리법 분법화와 기관별 역할 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의 시장 규모와 사료의 특성상 차이 조사(사료협회 등 통해 통계자료 수집 등 문헌 조사)</li> <li>• 사료관리법 분법화하는 경우 정부 내 담당 부서의 변화 검토</li> <li>• 권리 대상을 분할 또는 병합한 국내외 다른 법률 사례 검토</li> <li>• 해외 각국 사료관리법의 분법화 정도 검토</li> <li>• 해외 사료관리법의 사료 종류별 분법화 여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관리법을 대상별로 분법화 또는 분장화 시 예상되는 장단점 검토</li> <li>• 사료관리법 분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별 예상 시나리오 검토</li> </ul>

<p>사료 정책의 효율적 운영 위한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의 영양표시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li> <li>• 유전자재조합사료의 표시제도 검토</li> <li>• 사료 원산지표시제도 타당성 검토</li> <li>• 위해사료의 회수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li> <li>• 사료 내 이물 발견보고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li> <li>• 사료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li> </ul>	
-------------------------------	--	--

○ 사료는 가축이나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기타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먹이 등)임. 다만, 동물용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됨.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 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의미(다만 동물용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 제외)

사료첨가제는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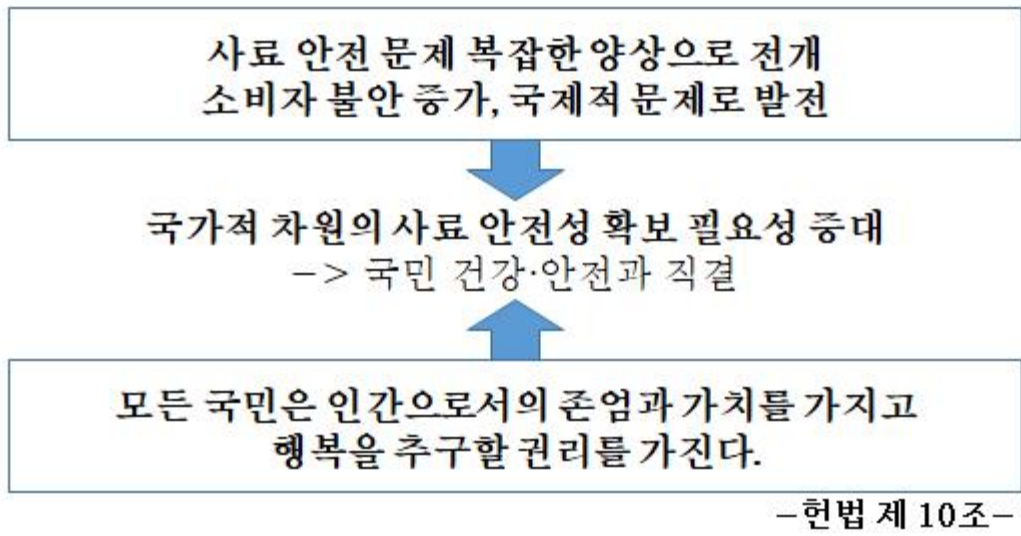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조(정의 등)**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6.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 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해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 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 사료 안전은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 예로 소의 해면상 뇌증(광우병), 동물용 의약품 잔류(가축용 항생제·성장호르몬 등 첨가 사료)는 사료가 원인일 수 있음

<그림 2> 국가적 차원의 사료 안전성 확보 필요성 대두



<표 3 > 식품안전 법령 체계

식품안전 법령 체계	
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중심법	식품위생법
규율 분야 및 대상별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법 위생관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사료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학교 급식법 등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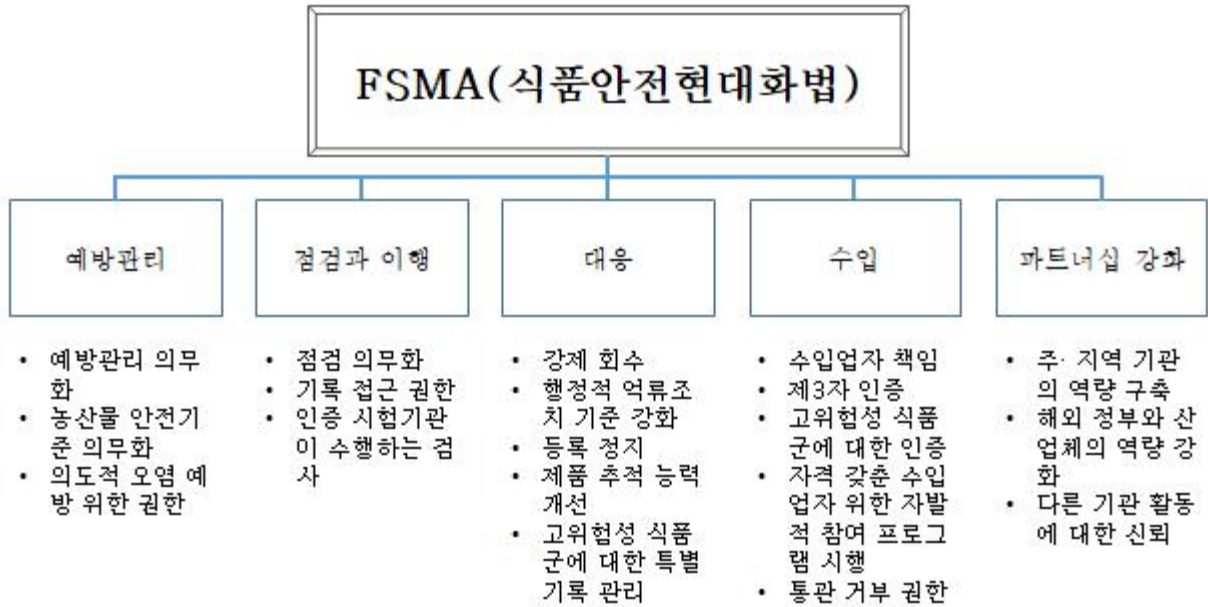
<표 4> 세계 각국의 사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유럽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GFLR) 긴급 경보시스템(The Rapid Alerts System for Food and Feeds, RASFF)
일본	농림수산물안전기술센터(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 FAMIC)의 사료 안전법
중국	1999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국무원령으로 관리 조례로 발표된 후 2012년 5월부터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로 법령명이 개정
한국	1963년 8월 법률 제1393호로 사료관리법 제정, 1963년 11월 시행 - 2002년 사료공정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발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통해 사료의 안전관리 규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료의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 실시

- 사료 안전 관리 규제와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로는 UN식량농업기구(FAO)·UN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세계동물보건기구(JOIE) 등이 있음.
- 미국의 사료 관련 법령과 규제는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식품안전현대화법, 2011년 제정)가 있음. 이 법은 사람의 식품 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사료에 대한 관리와 규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그림 3>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요 내용



○ NU(유럽연합)의 사료 관련 법령과 규제로는 NU Regulation (EC) No 178/2002 (General Food Law Regulation, 일반 식품규제법)이 있음. 이 법은 General principle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hat underpin decision making in matters of food and feed safety, covering all stages of food and fe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을 포함하고 있음.

**일본의 사료안전법**

제 12 조 농약,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항에 규정하는 사료 첨가제 등의 품질·유효성·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에 독점적으로 동물에 사용되는 물질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 대상 동물·고기·우유 기타 생산물에 대해 식용 가능한 범위를 결정할 때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농약·사료 등의 정보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 중국 식품안전법(2009년 2월 28일)은 제 11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통과됨.

**중국의 식품안전법**

제 13조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Risk) 평가 제도를 마련해 사료와 사료 첨가제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식품 안전 위험(Risk) 평가엔 전문가 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제 35조 식용 농산품 생산자는 식품 안전 표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부응하는 농약·사료·사료 첨가제 등 농업

투입 품을 사용해야 한다.

-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의 설치 방향을 고려할 때 국내 법령·제도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농약관리법상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등을 참고함. 해당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운영세칙 등을 벤치마킹해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 제9조(분과위원회)
- 제9조의2(연구위원)
- 제10조(간사)
- 제11조(수당과 여비)
- 제12조(운영세칙)

### 식품위생법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3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 제40조(위원의 직무)
- 제41조(회의 및 의사)
- 제42조(의견의 청취)
- 제43조(분과위원회)
- 제44조(연구위원 등)
- 제45조(간사)

- 제46조(수당과 여비)
- 제47조(운영세칙)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제1조(목적)
- 제2조(위원의 위촉 등)
- 제3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제4조 (위원의 해촉)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제6조(위원의 의무)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위원회 회의)
- 제9조(분과위원회)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1. 위생제도 분과위원회
  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
  3. 잔류물질 분과위원회
  4. 미생물 분과위원회
  5.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6. 위해평가 분과위원회
  7. 방사능 분과위원회
-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등)
- 제12조(분과위원회의 회의 등)
- 제13조(조사·심의의 효력)
- 제14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 제15조(관계인)
- 제16조(연구위원)
- 제17조(수당 등 지급)

- 사료관리법에 사료하치장 및 보관업 사료 유통·판매업 등을 새로 포함하고자 할 때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제7조 (영업의 종류)**

-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사료관리법에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을 추가한다면 식품위생법 상 유통전문판매업을 참고할 수 있음.
- 사료 유통·보관업을 신설할 경우 현행 사료관리법 제3장의 ‘사료의 품질관리 등’에 ‘사료 유통·보관상의 품질 관리 등’을 추가함.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에 (사료 유통·보관업의 등록, 사료하치장의 등록 등)을 추가함. 현행 사료관리법 제9조(제조업의 승계)에 (사료 유통·보관업의 승계)를 추가함.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에 (사료유통관리인, 사료 유통 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함.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를 (제조·수입·판매·유통 또는 사용 등의 금지)로 변경함.

### Ⅲ. 국내·외 사료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제 비교

### Ⅲ. 국내·외 사료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제 비교

#### 1. 사료산업과 사료 관련 법령

##### 가. 사료 산업

- 사료는 축산업의 범주에 포함됨. 2018년 기준으로 축산업 생산액(가축사육 생산액)은 18조9천억 원이지만,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다 포함하면 총 규모는 60조2천억원에 달함. 고용유발 효과는 35만3,000명(자체 24만4,000명, 타 산업 유발 10만9,000명)으로 예측됨<sup>1)</sup>
- 사료산업은 축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 산업이며 후방산업 중 가장 큰 산업으로 알려짐. 1960년대 초 국내 사료산업은 단순 가공업으로 출발했고 대부분은 영세 규모로 운영됨. 1963년 사료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료의 수급조절과 품질 보장을 위한 배합사료공장 등록제가 실시됨. 1974년 배합사료 공장 등록제가 허가제로 개정되고, 자유 업종이던 단미사료공장이 등록제로 전환됨. 이를 계기로 사료가공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함.
- 2018년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1983년 5천537톤으로 연간 9조1천839억 원 규모임. 축산업 후방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으로 발전함<sup>2)</sup>
- 사료 안전 관리를 위해선 사료 제조과정이나 유통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함. 현재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상태임. 해외에서 수입되는 사료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현재 국내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이 강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료의 안전성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됨. 수입 사료 원료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면 사료 안전성 문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해외 사료의 수입단계에서 원료 사료의 검사·검정을 강화하면 통관 속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멜라민이나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에선 기준이 없어서 국내 사료업체나 검사·검정기관에서 관리가 불가능했던 경험이 있음. 현재의 사료관리법에 최근 이슈가 되는 위해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에 곤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함. 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료 안전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유사 시 시·군·구 등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사료 안전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중요 사건이 터지면 상황을 바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독일 식품안전시스템의 BVL 같은 식품안전 조정기관과 긴급대응 담당기관을 벤치마킹해 유사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료 안전과 관련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사료 안전 시스템을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1) 2018, KOSIS 국가통계포털

2) 2018,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사료 품질·안전관리 업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여러 기관이 분담해 하고 있음.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태임.
- 사료 안전·품질 관리 관련 국내 연구론 백인기(1999)의 ‘한국의 사료 안전성 관련 법체계와 금후 과제’, 강창원(2001)의 ‘사료제조 및 배합비 구성’, 김홍균(2002)의 ‘한국 사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장동석(2009)의 ‘배합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음.
- 백인기(1999)는 사료산업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의 사료 관련 법규 사례와 사료 품질 관리 제도를 연구함. GMP와 HACCP을 포함하는 종합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함.<sup>3)</sup>
- 강창원(2001)은 국내외 사료 안전과 품질관리 제도를 비교 분석함. 해외의 사료품질 관리 제도를 토대로 국내 사료 품질관리의 변화 방향을 제시함.
- 김홍균(2002)은 현행 국내 사료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와 해외 사료 안전성 관련 품질관리 제도와 정책을 고찰함. 사료 관리제도 개선과 HACCP·GMP 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사료산업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장동석(2009)은 국내 양어용 사료 관리법과 안전성 관련 규정과 해외의 사료 안전성 관리모델 사례를 분석함. 양어용 사료의 품질·안전에 대한 생산자·제조사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양어용 배합사료 안전성 관리모델을 제시함. 생산이력제를 통한 품질개선, 안전성 관리위원회 설치, 사전 모니터링 제도 등을 제안함.
- 사료의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기관별로 분산된 사료관리 기능의 통합과 총괄 컨트롤타워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임.
- 기관별로 분산된 사료관리 기능을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 연구와 기관 조사를 실시함. 미국·일본·독일 등의 사료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관의 역할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사료관리 관련 기관의 분석과 해외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사료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함.

3) 진현정 외, 각국의 동물용 의약품 관리제도 및 조직체계 비교 (n.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d.), 6-7.

## 나. 사료 관련 법령

○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 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중국의 사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제2조 본 규정에 언급된 "사료"는 단일 사료, 첨가제와 사전 혼합사료, 농축 사료, 배합사료와 농축 사료 보충제를 포함해 산업적으로 제조·가공 후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본 규정에 언급된 "사료 첨가제"는 영양 사료 첨가제와 일반 사료 첨가제를 포함해 사료의 가공·생산·사용 과정에서 첨가되는 소량 또는 미량의 물질을 말한다.

사료 성분 목록과 사료 첨가제 목록은 국무원의 농업 행정부가 제정해 공포한다.



- 유럽의 사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유럽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제3조 식품 외의 정의

- ④ 사료(또는 feedingstuff)란 동물의 입을 통해 공급되며, 가공·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첨가제를 포함한 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한다.
- ⑤ 사료 사업이란 자신이 사육 중인 가축에게 사료를 생산·가공·보관하는 생산자를 포함해 사료의 생산·제조·가공·저장·운송·유통을 수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 ⑥ 사료 사업자란 식품법규에 포함된 사료 사업 내에서 사료가 식품법규를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적 책임자를 말한다.
- ⑤ 추적성이란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이나 사료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사료·식품 생산 동물 또는 물질을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⑥ 생산·가공·유통 단계란 식품의 1차 생산, 최종 소비자까지 저장·운송·판매 또는 공급을 포함한 과정을 의미하며, 식품의 수입·생산·제조·저장·운송·유통·판매와 공급을 포함하는 모든 단계를 의미한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가축과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에 대해서도 생산자·제조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의무와 FDA의 규제와 권한을 포함하고 있음. 다양한 측면에서 식품과 사료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하고 있음.

#### IV. 사료 종류별 유통·보관·판매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 IV. 사료 종류별 유통·보관·판매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 1. 사료의 종류

- 사료산업은 축산업의 근간이며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공동 성장을 위해선 사료 품질향상과 안전성이 우선 확보돼야 함. 세계적인 수준의 사료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 품질 사료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면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음.
- 사료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단미사료의 자급률을 높여야 함. 보조사료의 수출을 촉진해 배합사료의 기반산업을 공고화해야 함.
- 국내에서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임. 단미·보조사료업체의 대다수가 직원 수 50인 미만임.
-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의 시장 규모를 확대해야 함. 사료 원료 산업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동물성 사료를 생산하는 등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요구됨.
- 국산 사료의 수출 증대를 위해선 그동안 중심이 된 동남아는 물론 남미국가 등 신시장을 개척해 전체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15년부터 이뤄진 사료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도 고려해야 함.
- 국내 유통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단미사료(單味飼料)·보조사료(補助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등 세 가지로 구분됨. 단미사료는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임.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결착제·유화제·보존제와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아미노산제·비타민제·효소제·미생물제·향미제 등으로 구분됨. 배합사료는 단미·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하거나 가공한 사료임. 양축용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대용유 배합사료·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등이 있음.
- 조사료(粗飼料)는 부피에 비해 가소화 영양소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임. 각종 짚류·건초류·생초류·청예작물·사일리지·근채류 등이 여기 속함. 농후사료(濃厚飼料)는 조사료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량에 비해 용적이 적고 조섬유 함량이 낮으며, 가소화 양분함량이 높은 사료임.
- 단미사료는 크게 식물성·동물성·광물성·기타·혼합성 등 5가지로 구분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도 유해성이 없는 것을 단미사료라고 볼 수 있음. 식물성 단미사료는 옥수수·밀 등 곡류, 대두박·야자박 등 박류, 미역·과래 등 해조류, 알팔파·벚짚·섬유질 가공사료·섬유질 발효사료 등 섬유질 사료 등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원료임. 동물성 단미사료는 어분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류, 닭기름 등 유지류, 번데기·건조 귀뚜라미 등의 곤충류, 우유·치즈 등 낙농가공 부산물류 등으로 동물에서 유래된 원료임. 광물성 단미사료는 식염류·인산염류·칼슘염류, 다량·미량·혼합 광물질로 구분되며 광물에서 유래한 사료 원료임. 기타 사료 중 대표적인 것은 남은음식물사료임. 들

이상의 단미사료를 혼합한 혼합성 혼합제 등도 있음.

- 단미사료는 가축에 직접 사용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됨. 30~40여종의 단미사료에 축종별 특성에 적합한 보조사료를 혼합해 만든 완전 배합사료가 축산 농가에 공급됨. 단미사료 자체가 매우 중요한 영양공급원이라 볼 수 있음. 단미사료의 한자는 ‘單’(단, 하나의)과 ‘味’(미, 맛)로, ‘한 가지 맛’이란 의미임. 단미사료는 다른 것이 혼합되지 않은 원료 자체임. 단미사료는 ‘원료사료’라고 볼 수 있음.

## 가. 배합사료

### 1) 유통구조<sup>4)</sup>

- 우리나라에서 배합사료의 유통은 다양한 경로를 거치고 있음. 많은 축산 농가가 사료업체와 직거래를 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사료를 구매하고 있음. 농협사료가 아닌 일반 배합사료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사료회사와 단위농협 사이에서 사료 판매를 주선하기도 함. 사료업체가 직접 단위농협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과거엔 주로 도·소매점을 통해 사료를 판매했으나 최근엔 도·소매점 이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축산 농가에선 생산비 절감 등의 이유로 최근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의 배합사료를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한국사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에 있는 사료 물류시설은 대략 152곳임. 이중 약 27개 업체가 물류센터·하치장·공장·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4> 우리나라 배합사료 유통 경로



자료: 농수축산신문, 2016

4) 김종진 외,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시장성과 분석 (n.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0.), 23.

<표 5> 배합사료의 유통형태별 판매 비중

자료: 한국사료협회, 2012

단위: %

구분	직거래	대리점	OEM	기타	계
판매비율	65.6	16.0	15.1	3.3	100.0

주: 기타 거래엔 단위농협과 도·소매점 거래가 포함됨.

- 배합사료는 직거래를 통한 유통 비율이 65.6%로 가장 높음. 다음은 대리점(16%)을 통한 유통임.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제조업자)가 축산 농가에 직접 사료를 공급하는 직거래 형태가 대부분임.

<표 6> 배합사료 거래형태

직거래	<p>배합사료업체가 생산한 배합사료를 축산 농가가 직접 구매하는 방식임.</p> <p>배합사료공장과 축산 농가 간의 계약에 통해 거래와 유통이 이뤄짐.</p> <p>대규모 축산 농가와 자체 영업소·대리점이 없는 사료업체는 대개 직거래 형태의 유통을 통해 사료를 거래함.</p>
중간 대리점 통한 거래	<p>사료업체가 중간 대리점을 거쳐 축산 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유통 경로임.</p> <p>배합사료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유통 형태임.</p> <p>지역 대리인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축산 농가를 집중 공략해 사료 판매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p> <p>외상매출액에 따른 사료업체의 자금난을 피할 수 있음. 중간 대리점을 통해 사료를 거래하면 소비자인 축산 농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p> <p>소량·다수 거래처 관리의 편리성, 소량 주문 수송 등이 장점임. 대리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함.</p> <p>대리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판매 수수료 지급에 따른 원가 압박과 수수료로 지급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한다는 것이 단점임.</p>
도·소매점 통한 거래	<p>사료업체에서 제조된 배합사료가 도·소매점을 거쳐 실수요자인 축산 농가에 공급되는 유통 경로임.</p> <p>국내 사료산업 초기엔 배합사료가 주로 도·소매점을 거쳐 유통됨.<sup>5)</sup></p> <p>최근엔 사료 소비가 대량 또는 차량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도·소매점을 통한 사료 거래는 거의 없음</p>
지역농협	<p>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지역농협과 직접 계약해 사료를 공급하는 유통 형태임.</p>

<p>통한 거래</p>	<p>배합사료의 물류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 가깝고, 거래 조건이 유리한 회사와 지역농협이 직접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유통 방식임.</p> <p>공급계약은 각 사료회사와 축산 농가 간의 거리나 결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짐.</p>
<p>OEM</p>	<p>축산 농가 또는 조합이 일반 또는 농협 사료공장에 배합사료 제조를 의뢰한 뒤 제조된 사료를 공급받는 형태의 유통 형태임.</p> <p>대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뤄짐.</p> <p>주로 대규모 축산 농가 또는 조합에서 주문 제작 형태의 유통을 선호하고 있음.</p>

## 2) 배합사료 생산 실적

- 2019년 배합사료 생산동향을 보면, 모든 마릿수 증가, 종계 입식 증가, 송아지 생산 잠재력 향상 등의 영향으로 낙농용을 제외한 배합사료의 생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sup>6)</sup> 특히 2019년 6월 이후 생산 증가폭이 더 커짐.

5) 김종진 외,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시장성과 분석 (n.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0.).

6) "<2020 신년 특집>배합사료산업 전망 / 사상 최대 2천만 톤 시대 유지 여부 가축질병이 관건," CNS 축산신문, <http://chuksannews.co.kr/mobile/article.html?no=232167>.

<표 7> 배합사료의 축종별·판매형태별 현황

자료: 한국사료협회

(단위: 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축종	판매형태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산란계	직거래	1,203,357	21.8	2,362,361	35.3	1,321,647	23.4
	대리점 등	52,829	1.0	89,935	1.3	104,618	1.9
	OEM	147,651	2.7	157,002	2.3	147,101	2.6
소 계		1,403,837	25.4	2,609,298	39.0	1,573,366	27.9
육계	직거래	876,253	15.9	902,847	13.5	892,845	15.8
	대리점 등	30,721	0.6	23,303	0.3	43,953	0.8
	OEM	498,294	9.0	541,924	8.1	490,333	8.7
소 계		1,405,268	25.5	1,468,074	22.0	1,427,131	25.3
양돈	직거래	1,090,714	19.8	1,094,663	16.4	1,152,671	20.4
	대리점 등	151,152	2.7	127,042	1.9	99,847	1.8
	OEM	394,481	7.1	283,653	4.2	324,034	5.7
소 계		1,636,347	29.6	1,505,358	22.5	1,576,552	27.9
낙농	직거래	100,822	1.8	92,540	1.4	77,551	1.4
	대리점 등	62,732	1.1	57,119	0.9	47,433	0.8
	OEM	45,578	0.8	36,577	0.5	31,383	0.6
소 계		209,132	3.8	186,236	2.8	156,367	2.8
한우/ 비육	직거래	197,839	3.6	195,201	2.9	168,064	3.0
	대리점 등	213,949	3.9	196,150	2.9	163,522	2.9
	OEM	130,002	2.4	99,374	1.5	131,452	2.3
소 계		541,790	9.8	490,725	7.3	463,038	8.2
기 타		324,540	5.9	423,265	6.3	445,714	7.9
합 계		5,520,914	100.0	6,682,956	100.0	5,642,168	100.0

<표 8> 배합사료의 판매형태별 판매 현황

자료: 한국사료협회

(단위 : 톤, %)

판매형태	2014년		2015년		2016년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직거래	3,468,985	66.8	4,647,612	74.2	3,612,778	69.5
대리점 등	511,383	9.8	493,549	7.9	459,373	8.8
OEM	1,216,006	23.4	1,118,530	17.9	1,124,303	21.6
계	5,196,374	100.0	6,259,691	100.0	5,196,454	100.0

주: 산란계·육계·낙농·한육우 사료 합계 기준(기타 축종 제외)

<표 9 >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자료: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4&tblId=DT\\_114N\\_1B00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4&tblId=DT_114N_1B001)

(단위, 톤)

축종별	2019. 07	2019. 08	2019. 09	2019. 10	2019. 11	2019. 12	2020. 01
합계	1,757,494	1,666,253	1,661,686	1,826,847	1,743,360	1,803,821	1,781,120
양계용	560,535	501,159	474,692	526,350	506,476	523,674	506,197
양돈용	559,298	547,047	577,214	632,536	604,075	621,864	615,217
젖소용	98,893	96,497	96,247	104,015	99,618	102,222	104,873
고기소	405,221	396,617	391,835	429,886	405,501	428,095	426,207
기타	133,547	124,933	121,698	134,060	127,690	127,966	128,626

축종별	2020. 02	2020. 03	2020. 04	2020. 05	2020. 06	2020. 07
합계	1,639,349	1,763,201	1,752,166	1,731,439	1,703,679	1,820,154
양계용	484,896	536,480	533,656	544,484	548,247	568,756
양돈용	558,059	579,415	570,005	554,633	526,641	587,961
젖소용	95,489	102,189	101,281	100,418	98,737	103,567
고기소	383,824	411,707	413,870	404,267	401,525	426,804
기타	117,081	133,411	133,354	127,636	128,529	133,066

-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배합사료 생산의 축종별 구성비는 2018년 기준 양계용 30.0%, 양돈용 33.0%, 낙농용 6.0%, 비육용 23.4%, 기타 7.5%임. 2009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은 1,648만 톤에서 2018년 1,983만 톤으로 증가함. 배합사료 생산 실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계용 배합사료임. 총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9조 1,839억 원이며, 가중평균가격은 463원/kg 임.7)

7) 축산환경자원과, 사료산업 정책방향 (n.p.: 농림축산식품부, 2019.7.8.), 7.  
file:///C:/Users/USER/Downloads/20190715173813\_0.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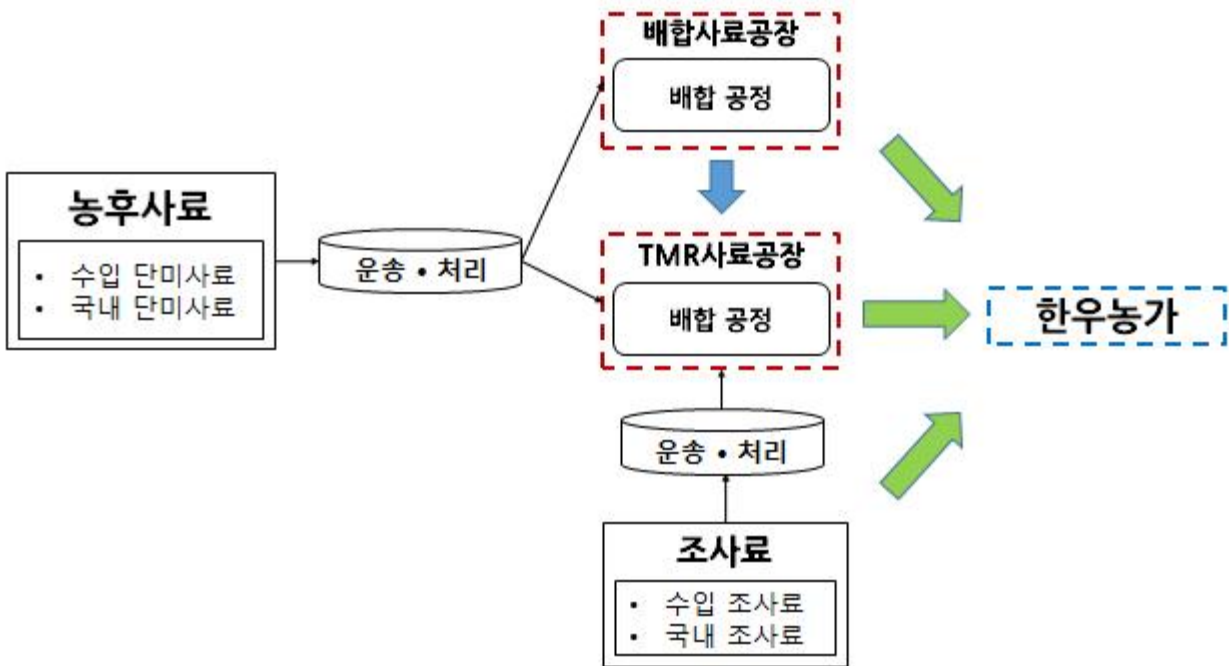


## 나. 단미사료

### 1) 유통

- 단미사료는 법에서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양축가가 자가 배합하여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음. 사료 원료를 의미함.

<그림 5> 한우 농가의 사료 공급 경로



자료: 한우 배합사료 소매가격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원가절감방안,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04.

- 단미사료 등 농후사료, 특히 수입 곡류의 대부분은 배합사료공장을 거쳐 배합사료의 형태로 농가에 직접 공급되거나, TMR 사료공장으로 공급됨. TMR이란 Total Mixed Ration의 약자로, 완전혼합사료임. 소·사슴 등 네 개의 위(胃)를 갖고 있어 되새김질 하는 반추동물은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6 대 4 정도의 비율로 섞어 먹어야 함. 각종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따로 주면 여러 번 작업해야 번거로움이 있음. TMR 사료는 처음엔 급이 편의성 때문에 개발됐으나 요즘은 TMR 사료를 만들면서 효모균·물 등을 적정량 첨가해 완전혼합발효사료인 TMF(Total Mixed Fermentation) 사료로 만들고 있음. 농후사료와 조사료가 배합된 TMR 사료를 축산 농가가 많이 이용함.

### 2) 판매

- 농식품부는 TMR 사료의 주원료인 조사료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조사료 자원의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음. 그동안 지원해오던 동계·하계 사료작물 확대사업을 지속함과 아울러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함. 국내 단미·보조사료 산업은 수출 활성화, 조사료 생산 확대, 농산 부산물의 사

료이용 확대,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단미사료도 양축용·양어용·반려동물용 분야로 구분돼 분야별로 다른 생산·판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동물성 단미사료는 품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양어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어분(Fish meal)은 최근 참치 등 어획량 감소와 원료로 사용되는 어류 부산물 등의 감소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식물성 단미사료는 국내 생산이라도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산 옥수수·콩·보리 등임. 식물성 단미사료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라고 볼 수 있음.
- 광물성 단미사료는 배합사료의 생산 정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산량의 변화가 적은 상태임. 사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미량 광물질과 다량 광물질 함유 사료의 수요량·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배합사료 시장의 정체로 생산량의 큰 변동이 없는 단미사료와는 달리 보조사료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사료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선 보조사료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된 결과임. 보조사료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도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보조사료 생산량은 2009년 5만3,000톤에서 2019년 역대 최대생산량인 13만9,000톤(16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동남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조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출 확대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음.<sup>8)</sup>

<표 10> 단미사료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어분	어즙흡착	육분·육골분	유지	기타	합계
'16년	30,701	61,999	63,221	156,997	39,012	351,930
'17년	25,484	75,217	50,108	150,158	37,926	338,893
'18년	28,006	68,939	52,703	130,988	38,601	319,237
'19년(P)	20,620	62,499	47,496	127,317	40,015	284,613

주: 기타는 혈분·가금도축 부산물·유도단백·동물성 단백질 혼합사료 등임

자료: 한국단미사료협회 2018

8) "<2020 신년특집>단미사료산업 전망 / 반려동물사료 원료 수요 확대...보조사료 수출 가속화," CNS 축산신문, <http://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2162>.

표2. 식물성 단미사료 생산 현황

(단위: 톤)

구분	곡물 부산물	식물성 단백질류	식품가공 부산물	당밀	합계
'16년	174,294	484,984	25,661	49,673	734,612
'17년	182,045	519,192	25,601	45,951	772,789
'18년	173,290	511,575	39,949	48,886	768,700
'19년(P)	181,408	626,285	15,697	51,496	874,887

자료: 한국단미사료협회 2018

표3. 광물성단미사료생산현황

(단위: 톤)

구분	석회석	미량광물질	다량광물질	혼합광물질	합계
'16년	402,720	8,849	421	2,228	414,218
'17년	366,540	9,929	458	2,047	378,974
'18년	414,666	7,575	367	3,321	425,929
'19년(P)	357,556	10,249	637	1,864	370,307

자료: 한국단미사료협회 2018

<표 11> 단미사료 업체별 판매현황(2019)

(단위, 톤)

자료: 단미·보조사료 편람(2020)

사료명	업체명	판 매 량				계	점유율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어분	우진사료공업(주)	732	955	1,202	397	3,286	14.9
	여수2공장	1,286	3,111	4,214	1,191	9,802	44.3
	동남사료공업사	1,327	899	1,218	1,204	4,648	21.0
	(주)길보	506	1,703	1,058	675	3,941	17.8
	(주)경동물산	119	60	82	188	449	2.0
	계(5)	3,971	6,727	7,774	3,655	22,127	100
어즙흡착	우진에스에프(주)	2,914	2,337	2,602	1,987	9,840	13.5
	현대특수자료(주)	3,960	4,885	4,180	4,324	17,349	23.7
	현대수산자료(주)	3,196	3,895	3,428	2,472	12,991	17.8
	(주)코리아에프엔에프	684	594	502	447	2,227	3.0
	(주)경동물산	35	85	178	52	350	0.5
	하나산업(주)	4,598	5,684	4,474	4,944	19,700	26.9
	(주)에이치에스아쿠아피드	3,093	3,185	2,779	1,684	10,721	14.6
계(7)	18,480	20,665	18,143	15,890	73,178	100	
우모분	(주)그린바이텍	1,995	2,392	2,840	2,089	9,316	56.7
	(주)동우팜투데이블	498	535	547	638	2,219	13.5
	(주)마니커천안지점	150	320	236	245	950	5.8
	(주)농협목우촌	160	273	246	232	910	5.5
	한강씨엠(주)	191	231	230	194	846	5.1
	(주)마니커동두천지점	513	596	574	523	2,207	13.4
계(6)	3,507	4,347	4,673	3,921	16,448	100	
육분 (수지박)	(주)동원유지	1,699	1,986	2,031	2,082	7,798	23.8
	태인산업(주)	1,131	1,031	1,016	1,363	4,451	13.9
	(주)디엔코	805	721	792	750	3,068	9.4
	(주)광복유지	680	1,225	862	828	3,595	11.0
	대영유지(주)	646	1,338	934	626	3,544	10.8
	(주)동광농산	333	348	330	483	1,494	4.6
	(주)송실	785	1,172	896	983	3,836	11.7
	(주)대명오앤씨	1,248	1,209	1,143	1,249	4,849	14.8
계(8)	7,327	9,030	8,004	8,364	32,725	100	

사료명	업체명	판 매 량				계	점유율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육공분	(주)홍창엠엔티(진천)	2,819	3,628	3,420	3,359	13,226	67.9
	(주)홍창엠엔티(영천)	1,551	1,731	1,390	1,596	6,268	32.1
	계(2)	4,370	5,359	4,810	4,955	19,494	100
혈분	덕원산업	65	72	278	183	598	100
	계(1)	65	72	278	183	598	100
가금도 축 부산물	(주)그린바이텍	3,061	3,962	4,246	3,792	15,061	59.1
	(주)동우팜투데이블	1,146	1,182	1,265	1,332	4,926	19.3
	(주)농협목우촌	439	495	259	332	1,526	6.0
	(주)마니커천안지점	279	432	376	400	1,488	5.8
	(주)마니커동두천 지점	513	608	692	679	2,493	9.8
	계(5)	5,438	6,680	6,839	6,536	25,493	100
동물성 단백질 혼합사 료	(주)남전물산	219	186	175	190	770	48.2
	(주)마니커동두천지점	160	165	168	182	674	42.1
	(주)에드바이오텍	9	16	8	12	45	2.8
	(주)엠포피드	16	17	18	59	110	6.9
	계(4)	404	384	369	442	1,599	100
골분	-	-	-	-	-	-	-
패분	-	-	-	-	-	-	-
곡물 부산물	(주)삼양사(인천1공장)	13,264	14,316	14,748	14,231	56,559	34.1
	인그리디언코리아(유)	10,678	10,509	10,356	9,958	41,501	25.1
	롯데칠성음료(주) 군산공장	433	392	308	392	1,525	1.0
	(주)미래생명자원	2,544	2,979	2,919	2,607	11,049	6.7
	삼육식품	126	137	114	147	523	0.3
	오비맥주(주)광주공 장	0	7	0	1	8	0.0
	CJ제일제당(주)인천2 공장	10,076	12,651	11,144	11,093	44,965	27.1
	(주)솔톤바이오캡	110	120	119	114	463	0.3
	농업회사법인(주)주호	2,512	1,774	1,747	1,931	7,964	4.8
	DH바이탈피드(주)	45	122	85	144	396	0.2
	(주)마이웰에프앤에프	0	51	338	254	643	0.4
	계11	39,788	43,058	41,878	40,873	165,597	100
옥수수 가공부 산물	(주)삼양사 (인천1공장)	2,919	3,318	3,342	3,088	12,667	55.0
	인그리디언코리아 (유)	2,528	2,721	2,363	2,769	10,381	15.0
	계(2)	5,447	6,039	5,705	5,857	23,048	100

사료명	업체명	판매량				계	점유율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단세포 단백질	(주)대호	4	6	3	7	20	8.9
	경동인피드	26	8	17	18	68	30.1
	한국사료 향미양행	50	0	3	0	53	23.4
	(주)유진바이오	0	5	2	0	7	3.1
	(주)휴온스내츄럴	6	8	9	6	29	12.8
	(주)소마	11	9	7	22	49	21.7
	계(6)	97	36	41	53	226	100
남은 음식물 사료	(주)피마	1,355	938	956	271	3,520	41.2
	(주)푸른환경기술	1,413	1,268	1,124	371	4,175	48.9
	인천환경공단	80	49	287	430	846	9.9
	계(3)	2,848	2,255	2,367	1,072	8,541	100

<표 12> 단미사료 총 판매현황

자료: 한국단미사료협회 2018 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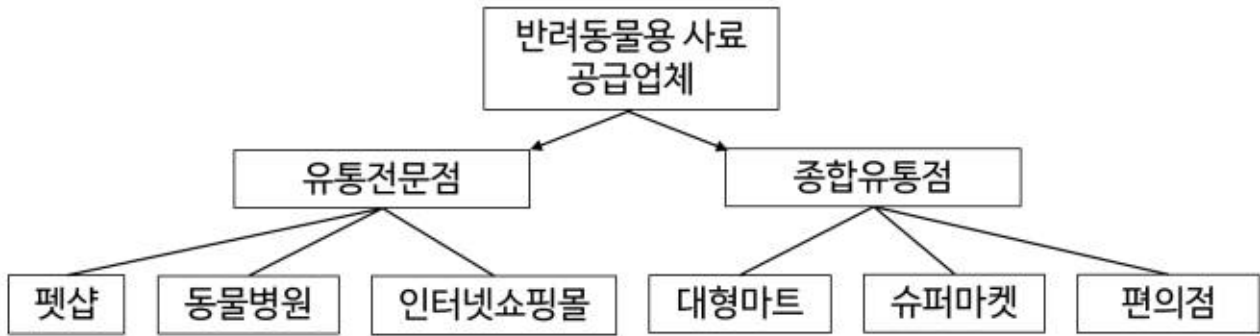
사료명	판매량 합계(단위, 톤)
가금도축 부산물	25,493
곡물 부산물	165,597
남은 음식물 사료	8,541
다량 광물질	362
단세포 단백질	226
당밀	48,758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1,599
두류가공 부산물	4,261
미량 광물질	22,469
석회석	435,719
식물성 박류	575,696
식품가공 부산물	8,529
어분	22,127
어즙흡착	73,178
옥수수 가공부산물	23,048
우모분	16,448
육골분	19,494
육분(수지박)	32,725
제빵 부산물	6,446
혼합 광물질	1,961
총합계	1,492,677

## 다. 반려동물사료

### 1) 유통 경로

<그림 6> 반려동물사료 시장의 유통구조

자료: 농협경제연구소, 2013



-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의 유통채널은 크게 유통전문점과 종합 유통점으로 구분됨. 유통전문점으로는 펫샵·동물병원·전문 인터넷 쇼핑몰이 있음. 종합유통점으로는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이 있음. 최근엔 인터넷 쇼핑몰 등 도·소매 혼합 형태의 유통망도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임.<sup>9)</sup>

9) 국내 반려동물 간식시장 조사 보고서. n.p.: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09. 15.

2) 유통 실태

<표 13> 반려동물사료 판매업 종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구분		예시
유통전문점	펫 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lly's pet shop: 전국 34개 지점의 대형 펫샵</li> <li>• 폴리파크: 전국 33개 지점의 프랜차이즈 대형 펫샵</li> </ul>
	동물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리온 동물병원: 오랜 경력과 세분화된 진료시스템으로 전문성이 돋보이는 큰 규모의 동물병원으로 병원 내 반려동물식품 판매소가 존재하며, 온라인 물도 운영 중에 있음</li> </ul>
	전문 인터넷 쇼핑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몰(이리온몰·강아지왕국 등): 반려동물용 사료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몰</li> <li>• 대형마트 온라인몰(이마트몰·롯데닷컴·홈플러스 등) :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반려동물 카테고리</li> <li>• 오픈마켓 (G마켓·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의 애견제품 카테고리로, 다양한 제품 구성을 보유하고 있음</li> </ul>
종합유통점	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li> </ul>
	슈퍼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 슈퍼마켓 등</li> </ul>
	편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S편의점 등</li> </ul>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 단체)는 2019년 8월 수도권에 사는 반려견 주인 5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용 사료와 간식의 유통실태를 조사함. 조사 결과 반려동물용 사료와 간식을 주로 구매하는 쇼핑 경로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임. 반려동물용 사료의 구매 장소는 인터넷 쇼핑몰이 43.8%로 가장 많음. 대형마트(22.2%)·동물병원(13.0%) 순으로 나타남. 반려동물의 간식을 주로 사는 곳은 응답자의 36.2%가 인터넷 쇼핑몰을 꼽음. 대형마트(25.0%)·애견용품 할인매장(14.8%)이 뒤를 이음.<sup>10)</sup>

○ 반려동물용 사료와 간식과 관련해 반려견 양육인은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반려동물용 사료에 알레르

10) "반려견 사료·간식비 한달 14만원...인터넷서 국산 구매" . (2019-04-07).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513270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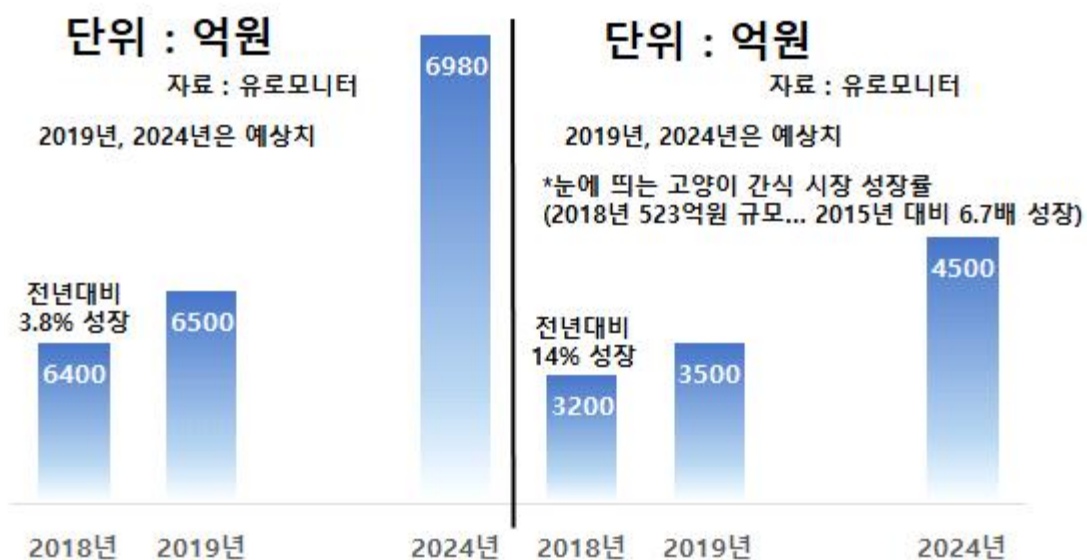
기 성분 표시 확대, 반려동물용 사료나 간식에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성 검사 강화,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원료 등급 기준 마련과 인증기준 설정 등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남. 반려동물용 사료는 현재 유통전문점(펫샵·동물병원·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음. 종합유통점 중에선 대형마트의 반려동물용 사료의 판매 비중이 높음.

-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용 사료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마트에서 직접 들고 오기엔 무겁기 때문임. 반려동물용 간식은 주로 펫샵·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제품과 포장·가격을 보고 구매하고 있음.
- 반려견 사료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 비율은 2016년 38%에 달함. 반려묘 사료는 2016년 기준으로 대형 마트 판매비율이 20%임. 인터넷 쇼핑몰 판매비율은 이보다 높은 39%임.
- 개·고양이 외의 기타 반려동물용 사료는 과거엔 주로 펫샵 등 유통전문점에서 판매됐지만, 최근엔 대형마트 판매가 증가 추세임.
- 국내 유통 반려동물용 사료 중 고가 제품은 대부분 수입 브랜드임.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 등의 점유율이 높은 상태임. 국내 사료업체인 대한사료·대주사료·우성 등도 반려동물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대개 중저가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고급 사양 사료에 대한 시장 수요를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업계가 맞추지 못하고 있음.

### 3) 판매

<그림 7> 국내 반려견 사료와 반려묘 사료 시장 규모(건사료·습식사료·간식 포함)

자료: 유로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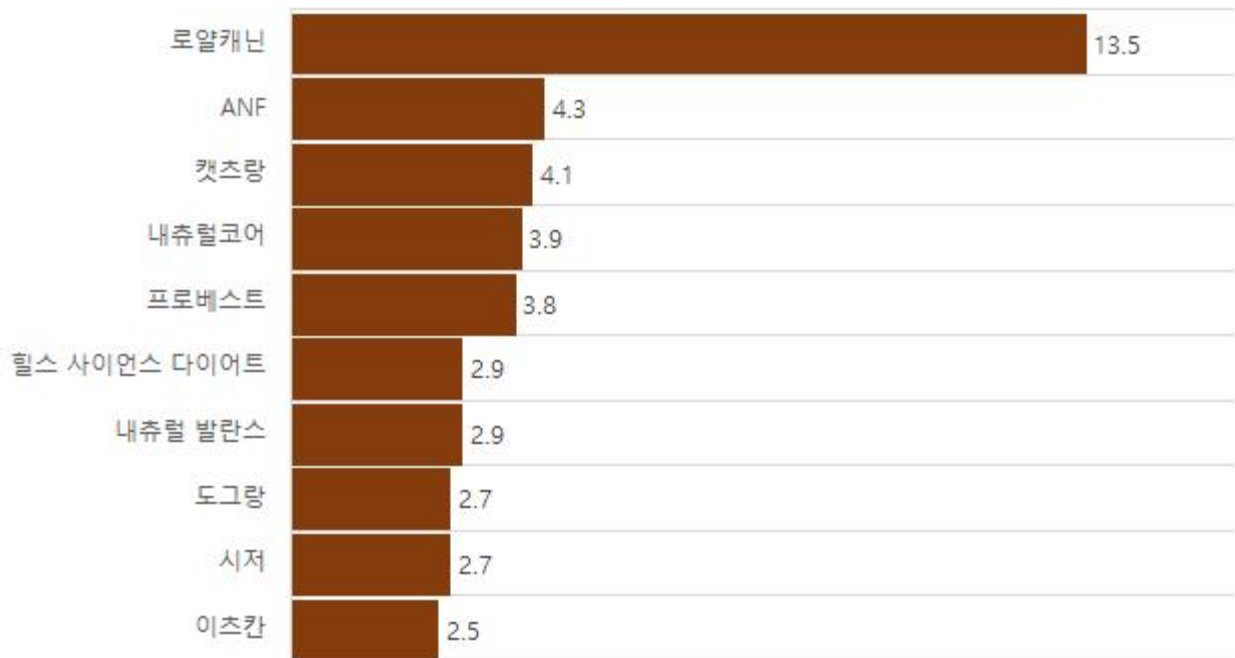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9년·2024년은 예상치

○ 세계적인 시장조사 업체인 유로모니터의 2018년 우리나라 펫케어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시장 중 반려견 사료 시장은 약 6,400억 원, 반려묘 사료 시장은 약 3,200억 원으로 조사됨. 이는 2017년 대비 각각 3.8%·14% 증가한 수치임.<sup>11)</sup>

<그림 8> 반려동물용 사료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단위: %(2017년 기준)



자료: 유로모니터

<표 14 > 국내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추정치

구분 <sup>12)</sup>	2010	2012	2015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10~'19)
반려견	4,615,198	4,397,275	5,126,127	6,620,342	5,072,903	5,984,903	2.9%
반려묘	628,989	1,158,932	1,897,137	2,329,693	1,280,400	2,579,186	17.0%

11) "2018년 국내 펫푸드 시장 약 1조원... 개 6400억·고양이 3200억," 데일리벳, n.d.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12138>.

12) 코리아서치. 2019. 2019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표 15 > 우리나라 펫푸드 소매시장 동향과 전망

단위, 100만 달러, %

구분13)	2014	2018	연평균 증가율 (2014-2018)	2018	2022	연평균 증가율 (2019-2023)
합계	515.4	864.9	13.8	930.3	1,168.9	5.9
반려견 사료	411.4	609.9	10.3	643.5	776.1	4.8
반려묘 사료	97	244.9	26.1	276	378.7	8.2
기타 반려동물용 사료	7	10.1	9.6	10.9	14.1	6.6
소형 포유류와 파충류	6.09	9.14	10.7	9.87	12.94	7
관상어	0.90	0.95	1.6	0.98	1.13	3.6
조류	0.01	0.02	15	0.02	0.02	9.2

<표 16> 주요 국가별 펫푸드 시장 규모(2017)와 연평균 펫푸드 시장 성장률(2013-2017)

단위, 100만 달러, %

구분14)	2013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13-’17)	Share % in 2017	연평균 증가율 (‘18-’22)
미국	26,842	31,084	3.7	36.8	4.4
브라질	3,408	5,194	11.1	6.2	10.6
영국	4,541	4,809	1.4	5.7	2.6
독일	3,785	4,206	2.7	5	2.4
프랑스	3,882	4,085	1.3	4.8	2.8
일본	3,534	3,717	1.3	4.4	1.7
러시아	1,752	2,942	13.8	3.5	7.9
이탈리아	2,703	2,926	2	3.5	3.6
호주	2,289	2,432	1.5	2.9	3.5
멕시코	1,480	2,079	8.9	2.5	8.3
중국	502	1,668	35	2	28.9
캐나다	1,468	1,696	3.7	2	4.4
스페인	1,227	1,340	2.2	1.6	4.2
네덜란드	981	1,073	2.2	1.3	2.4
아르헨티나	403	946	23.8	1.1	17.9
콜롬비아	495	953	17.8	1.1	14.7
칠레	528	917	14.8	1.1	12.4
태국	552	859	11.7	1	11.5
한국	432	796	16.5	0.9	6.6
벨기에	615	697	3.2	0.8	4.6
오스트리아	538	626	3.9	0.7	2.7
루마니아	292	453	11.6	0.5	13
인도	109	240	21.8	0.3	15.3
우크라이나	156	248	12.3	0.3	8.6

13)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14)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표 17> 글로벌 펫푸드·펫케어 상품 시장 매출액과 성장 전망

단위, 100만 달러

구분 <sup>15)</sup>	2013	2017	연평균 증가율 (‘13-’17)	2018	2022	연평균 증가율 (‘18-’22)
합계	81,083	84,416	1.0	92,554	115,891	5.8
반려견 사료	47,205	49,913	1.4	55,193	69,172	5.8
반려묘 사료	28,282	28,960	0.6	31,420	39,437	5.8
기타 반려동물 사료	4,431	3,954	-2.8	4,166	4,643	2.7
조류	1,368	1,179	-3.7	1,234	1,382	2.9
관상어	1,257	1,086	-3.6	1,149	1,278	2.7
소형 포유류와 파충류	1,806	1,689	-1.7	1,783	1,983	2.7
반려동물 헬스케어	4,298	4,147	-0.9	4,424	5,399	5.1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	1,298	1,396	2	1,517	1,883	5.6

<표 18> 산업 및 상품 매입처별 구성비(애완용 동물과 관련용품 소매업)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통계표(단위, %)

구분	합계	본·지점간 이동	생산업자	도매업자	해외 수입	기타
상품 매입처 별 구성비	100	18.3	24.2	52.1	3.5	1.9

<표 19> 산업과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통계(애완용 동물과 관련용품 소매업)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통계표(단위, %)

구분	합계	본·지점간 이동	도매업 자	소매업 자	산업 사용자	일반 소비자	해외수 출	기타
상품 판매처 별 구성비	100	-	0.7	9.9	0.1	89.3	-	-

15)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 라. 양어용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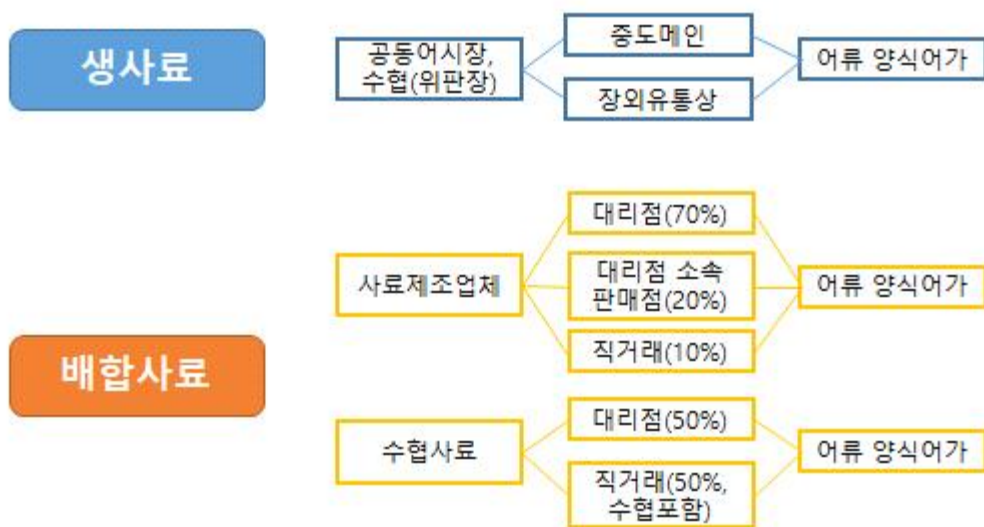
### 1) 유통

- 양어용 배합사료는 생산업체가 많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함. 거래처의 신용도나 취급 물량에 따라 외상기일·가격조건 등 거래조건도 복잡한 벌크나 백을 이용해 운반하는 일반 배합사료와는 달리 대부분 지대제품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포장비·수송료의 부담이 큰 것이 특징임. 업체 간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거래 조건을 변칙 운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의 발생 소지가 많음.<sup>16)</sup>
- 양어용 사료는 다른 공산품과 달리 유통 유효기간이 평균 10~15일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보관·비축이 어려움. 생산업체마다 성분 비율을 달리해 제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업체 간 가격 비교도 어려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편이고 신제품 개발이 빈번한 것이 특징임.
- 양식 어가는 치어 입식에서 출하까지 급여 중인 사료를 중도에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사양기간 중엔 사료의 대체성이 낮은 편임. 다수 양식 어가가 사료 공급업체로부터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 어가는 금융 서비스·사양 관리 등 애프터 서비스를 기대해 사료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함.

### 2) 배합사료 유통경로

<그림 9> 양어용 사료의 유통 경로

자료: 김대영 외, 양식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2



16) 김정대 외, 환경친화형 해산어류 양식업 육성을 위한 배합사료 개발 방향 (2002.02.25), 7-8

- 양어용 사료의 유통 경로는 양돈·양계 등 양축용 사료의 유통 채널과 비슷함. 이는 다수의 양축용 사료업체가 양어용 배합사료를 함께 취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양어용 사료의 유통구조는 일반 수산물과 달리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취함. 생사료는 부산 공동어시장이나 산지 수협 위판장에서 양륙·경매 후 중도매인을 통해 어류 양식 어가에 공급되는 형태가 일반적임. 생사료가 중도매인에게 넘어간 뒤 중간 유통업자를 거치기도 함. 일부 양식 수협에선 생사료를 수입하거나 다른 수협 위판장에서 대량 구매한 생사료를 양식 어가에 공급함. 양어용 배합사료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료제조업체와 수협사료를 통해 유통되고, 대리점 체제 중심으로 공급됨. 일반 사료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양어용 배합사료가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비율은 약 70%, 대리점 소속 판매점을 통한 공급 비율은 약 20%, 직거래를 통한 공급 비율이 약 10%임. 직거래는 대개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량 주문에서 이뤄짐. 수협사료의 공급 비율은 대리점 50%, 산지수협을 포함한 직거래 50% 정도로 알려져 있음. 반습사료(SEP)는 대부분 사료회사와 양식어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sup>17)</sup>

### 3) 보관·판매

- 생사료의 원료는 대개 어린 치어나 미성어임. 생사료를 양식장에서 직접 사료로 사용할 때는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파쇄기에 갈아 양식 어류에 공급하고 있음. 생사료는 양식장 물에 쉽게 풀어져 사료 유실량이 많고 양식장 물의 부영양화를 초래할 수 있음. 생사료 제공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문제임. 생사료의 원료는 어린 치어가 대부분이어서 양어가에서 생사료의 사용은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힘. 생사료에 대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sup>18)</sup>
- 양어용 사료 중 반건조 배합사료(SEP, Soft Extrude Pellet)나 반습사료(Semi-moist pellet)는 수분 함량이 25% 내외임. 반건조 배합사료는 사료 제조 도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냉각처리 후 포장해 냉동 유통시킴. 상대적으로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운반 과정에서 뭉개지기 쉽고, 특히 여름철엔 운반·보관 도중 산패·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저온 보관이 필요함.<sup>19)</sup>
- 양어용 사료론 어분(Fish meal)이 주로 사용됨. 최근 참치 등 어획량 감소와 원료로 사용되는 어류 부산물 등의 감소로 국산 어분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입어분 수입량은 증가할 수 있음. 국내 어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현재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생사료 형태의 어류 부산물 유통의 관리가 강화돼야 함. 현장에선 생사료 단속이 쉽지 않아 향후 농식품부·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공동 관리 감독이 필요함.
- 양어용 사료인 어분은 국내 어분 수입업체가 페루·칠레 등 어분 생산국에서 어분을 수입해 국내 사

17) 김대영 외,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n.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d.), 4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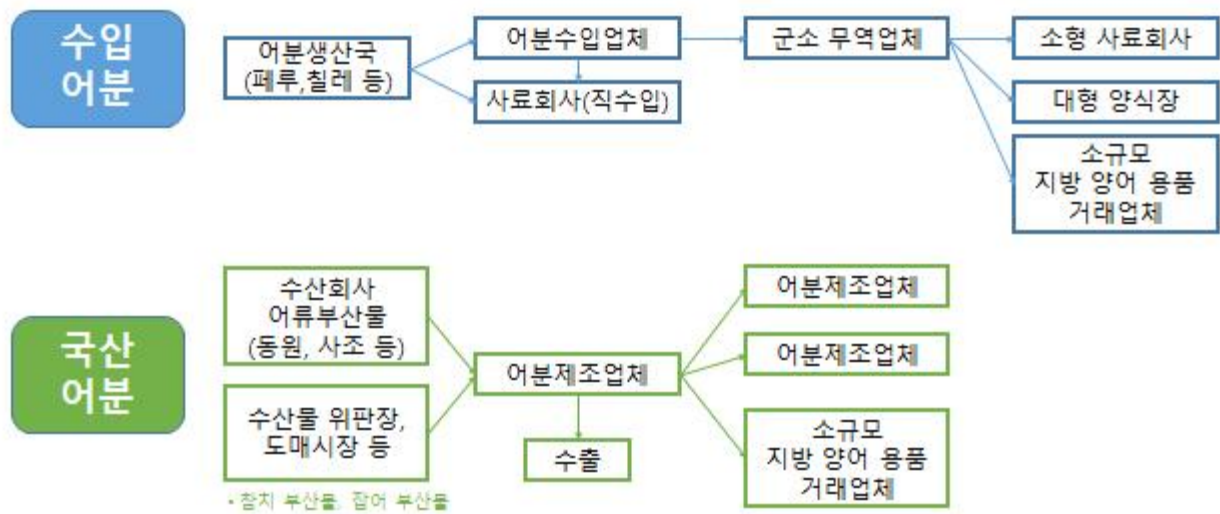
18) ARFSA, <http://www.arfsa.re.kr/index.php?cate=002001&menu=2&sub=1>.

19) 전략양식연구소장, 양식배합사료정보 (n.p.: 국립수산물과학원, n.d.), 4.

료회사나 군소 무역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일부 사료업체에선 현지 중개상 또는 어분업체를 통해 직 수입하고 있음. 군소 무역업체는 소규모 사료업체나 대규모 어류 양식장, 지방 소재 소규모 양어용품 판매점 등에 어분을 판매하고 있음.

- 국산 어분은 주로 참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 동원·사조 등 참치 제조업체에서 참치를 가공한 후 남은 어류 부산물을 국산 어분의 재료로 판매하고 있음.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나 수산물 도매시장·재래시장 등에서 판매·처리되는 잡어·부산물도 국산 어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국내 어분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어분은 국내 사료회사나 양식장 등으로 유통됨. 일부는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함.

<그림 10> 수입 어분과 국산 어분의 유통 경로



자료 : 김대영 외, 양식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n.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12), 27-28.

사료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제8조제9항 관련)

제1호부터 제6호 이외의 사료에 대한 권장 유통기간은 아래와 같다.

- 1) 양축용 배합사료(수분함량 14% 이하) : 6개월
-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수분함량 14% 이하) : 24개월
- 3) 대용유용 배합사료(수분함량 10% 이하) : 12개월
- 4)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 : 3개월

- 5)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수분함량 14% 이하, 양식용 수산동물용 제외) : 24개월
- 6)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수분함량 14% 초과, 양식용 수산동물용 제외) :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다.
- 7) 양식용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수분함량 14% 이하) : 12개월
- 8) 양식용 수산동물용 반건조배합사료(수분함량 25% 이내) : 7일

- 국내에서 생사료로 이용되는 어종은 고등어·전갱이·정어리·청어 등 매우 다양함. 여러 어종 중에서 생사료로 이용되는 것은 대개 크기가 작고, 품질이 매우 낮아 식용으로 이용하기는 힘든 하품(下品)임. 생사료로 이용되는 어종의 생산 실적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어업생산 통계를 통해 집계는 가능하지만 품질(상·중·하) 등급 중 생사료로 쓰이는 하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되지 않음.<sup>20)</sup>
- 배합사료 생산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하고 있음. 국내 배합사료 소비 실적을 보면 양계·양돈·축우 등 양축용 배합사료가 10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 김대영 외,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n.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4.



○ 통계청의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생사료·배합사료를 포함한 전체 양어용 사료 투여량은 59만7,800만 톤임. 2019년 생사료 사용량은 50만4,900톤임. 양어용 사료 중 배합사료 사용량은 약 9만2,900톤에 불과한 상태임. 양어용 사료에선 생사료 사용 비율이 84.45%로, 배합사료 사용 비율(15.54%)보다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어류양식 현장에선 여전히 생사료 사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임.

<표 20> 주요 어종별 양어용 사료 사용량

자료: 통계청 ‘어류양식 동향조사’ 2019 (단위, 100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	2019 (B)
전체어류		5,258	5,105	4,880	5,535	5,490	5,723	5,828	6,064	5,978
종류별	생사료	4,484	4,434	4,251	4,737	4,732	4,910	4,948	5,148	5,049
	배합사료	774	671	608	799	757	813	880	915	929
어종별	넙치류	2,305	2,251	2,253	2,481	2,410	2,511	2,462	2,746	2,656
	조피볼락	1,935	1,671	1,460	1,528	1,641	1,781	1,892	1,775	1,565
	참돔	440	643	661	786	608	602	698	680	803
	숭어류	216	163	133	187	207	193	219	264	346
	돌돔	38	39	41	65	83	85	74	119	134
	감성돔	58	52	56	123	136	144	138	90	106
	농어류	117	123	110	140	148	117	91	75	75
	기타어종	149	169	145	225	255	290	253	316	294

○ 양어용 사료의 시장 규모는 양축용 사료 시장의 0.6%에 불과함. 시장 규모가 작아서 관련 사료 업체 등의 품질 고급화와 R&D 노력이 미흡한 상태임. 현재 국내 전체 어류 양식 어가가 배합사료만으로 양식을 하려면 26만 톤의 배합사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실제 사용량은 11만 톤(수입 사료 5천 톤)으로, 전체 필요량의 42% 수준임.

# V.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 V.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 1. 해외 사례

#### 가. 미국

- 미국은 사료를 식품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음. 사료 안전성 조사는 미국 농무부(USDA)·식품의약청(FDA)·환경보호청(EPA) 등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식품안전성 조사체계는 다원화 체계임.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농무부(USDA)와 식품의약청(FDA)에서 과학에 기초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결과 조치가 쉽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FDA 수의학센터(CVM) 산하 ‘감시와 순응사무소’(OS&G)는 미국 내 주요 사료관리 기관과 연방·주정부 기관과의 협조하에 사료 제조업자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음. FDA는 연방·주정부 규제기관과 보건당국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사료 품질과 안전관리 관련 기관 간 정보 순환과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음.

#### 1) 미국 농무부(USDA)와 환경보호청(EPA)

- 미국 농무부(USDA)는 생산 현장에서 적절한 사료 투입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USDA 산하기관인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축산물 안전 검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물 내 의약품 잔류와 세균 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료 원료 내 농약 최대잔류한계(MRLs)와 허용오차를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EPA의 역할은 식품품질보호법(FQPA) 제정 후 더욱 커지고 있음.

#### 2) 사료검사관협회(AAFCO)

-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자 할 때 참고할만한 미국의 관련 기관으로 미국 내 사료 관련 전문가 집단인 사료검사관협회(AAFCO)가 있음.
- 현재 미국의 배합사료 내 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관리와 규제는 북미 대륙의 각 주·지역·연방 사료 검사관과 사료와 동물 약품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감독관의 협의체인 미국사료검사관협회(AAFCO,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에서 발행한 표준법령(Model Bill)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AAFCO는 자발적 회원 조직임.<sup>21)</sup>

21) 진현정 외, 농산물(사료)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n.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4.12),

- 미국의 AAFCO 표준법과 시행령엔 용어 정의, 사료 등록과 허가, 상표와 지대 표기 방법, 상표와 지대 표기 도용 방지, 유해사료, 금지사항과 행위, 규정과 법규, 사료 검사, GMP, 시행규칙, 사료 용어, 원료 정의, 첨가제 종류, 오염물질 허용 수준, GRAS, 오염 물질별 허용 기준(예, 농약·곰팡이 독소·PCB·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사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축의 종합적 영양관리, 축분 내 배설량 최소화를 위한 규제, 약품관리 등이 담겨 있음.
- AAFCO는 미국산 사료뿐만 아니라 수입사료의 생산·라벨·유통·사용·판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판단과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AAFCO는 동물 사료와 원료의 제조, 라벨과 판매를 위한 표준화된 정의·규정, 법의 제·개정과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FDA가 특정 사료성분의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AAFCO에 제공하면 AAFCO는 회원 투표를 거쳐 AAFCO의 공식 기록물에서 부적합 사료성분을 삭제하고 있음. 연례 미팅에선 AAFCO와 FDA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수용 여부를 회원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함.
- AAFCO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로 구성됨.

<표 21 > AAFCO 위원회

위원회	목적	위원회 소속 단체
지명위원회	임원직을 맡을 자격이 있거나 이사회에서 일할 자격을 갖춘 개인을 선택	
현안 문제와 아웃리치 위원회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정부와 산업 간의 이해와 협력 촉진 AAFCO 회원·산업체·이해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전파	미국 사료산업협회 미국 애완동물제품협회 효소기술협회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전국 렌더협회 펫푸드연구소
교육 위원회	위원회·이사회와 협력해 교육 요구사항 파악 필요에 따라 국가 조직(FDA 등)과의 교육 방식 연결 통로 역할 적절한 교육 방법 발굴 각 위원회가 개발한 교육 자료의 조정 역할	앤더슨 미국사료산업협회 미국 사료산업협회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펫푸드연구소
집행 위원회	AAFCO 회원의 토론·홍보 지원 포럼 개최	미국 사료산업협회 미국 애완동물제품협회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펫푸드연구소
사료와 사료 성분 위원회	FDA·캐나다 식품검사국·식품 검사기관·식품 제조업체·국내외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과학과 위험에 기반한 사료 안전 규정 개발	미국 사료산업협회 미국 애완동물제품협회 국립 동물보충위원회

	인간과 동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수준으로 동물 사료의 화학적·미생물적·물리적 위해요소 최소화	국립 농업부협회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전국 렌더협회 펫푸드연구소 가금류와 계란협회
사료 표시(라벨링)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라벨링 요구사항 검토 사료 라벨링 가이드 개발	미국 사료산업협회 미국 애완동물제품협회 효소기술협회 캠벨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전국 렌더협회 펫푸드연구소 미국 가금류협회
검사와 샘플링 위원회	사료와 사료성분 제조업체, 국내외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효과적인 검사와 샘플링 절차 개발 사료와 사료성분에 대한 균일한 검사 절차 적용 촉진 AAFCO 검사관매뉴얼의 평가·개정·유지 관리	미국 사료산업협회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캠벨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펫푸드연구소
모델 청구서 및 규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AFCO가 상용사료의 생산, 라벨링, 유통 판매 및 비상업용 사료 생산에 관해 공정한 모델 청구서 및 규정을 유지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적시에 건전한 권장사항을 이사회에 제공</li> </ul>	미국 사료산업협회 미국 애완동물제품협회 효소기술협회 국립 농업부협회 캠벨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툼슨 펫푸드연구소 펫푸드연구소
반려동물사료 위원회	펫푸드 소비자 보호 인간과 동물의 건강 보호 질서정연한 상거래 유도 반려동물 사료와 전문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교육·워크샵 반려동물 사료 교육자료 개발 지원	미국 사료산업협회 미국 애완동물제품협회 국립 동물보충위원회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전국 렌더협회 툼슨 펫푸드연구소 펫푸드식품연구소 애완동물복지 얼라이언스 미국 가금류협회
숙련도 검사 프로그램 위원회	분석 검사방법의 사용법과 기기 성능 모니터링 검사 결과 등 정보 제공 검사방법 검증 검사 품질관리	에이블연구소 유로핀스 사이언티픽Inc. 네슬레푸리나 분석연구소 펫푸드연구소 피브로 동물건강공사

전략업무 위원회	금융 업무를 포함한 협회 활동 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추적·이행에 관한 조 언과 지원	미국 사료산업협회 미국 애완동물제품협회 국립 농업부협회 국립 곡물과 사료협회 쿡팻푸드연구소
-------------	---	--

### 3) 수의학센터(CVM)

- 미국 식품의약청(FDA) 산하 수의학센터(CVM,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는 사료 원료·배합사료·약품첨가사료·반려동물용 사료 등의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 CVM은 사료 내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과 모니터링, 사료 원료와 의약품 등 사료 첨가물 승인, 약품첨가사료와 펫푸드 프로그램(medicated feed and pet food programs)을 주관하고 있음. 사료 첨가물에 대한 승인 절차는 사전승인(pre-approval)과 사후승인(post-approval)으로 나눌 수 있음.
- 사전승인은 CVM 내 ‘동물신약평가소’(ONADE, Office of New Animal Drug Evaluation)가 담당하고 있음. ONADE는 새로운 동물 의약품의 승인을 원하는 약품 제조회사나 공급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사후승인은 ‘감시와 순응사무소’(OS&C, Office of Surveillance and Compliance)가 담당하고 있음. OS&C는 FDA 내 다른 기관과 협력해 동물 의약품과 수의학 기구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sup>22)</sup>

22) 홍기성 외, 각국의 동물용 의약품 관리제도 및 조직체계 비교 (n.p.: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n.d.), 98.

## 나. EU(유럽연합)

-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려고 할 때 참고할만한 EU(유럽연합)의 유사 조직으로 **과학패널**이 있음.
- EU의 사료 안전 관련 주요 법령인 일반식품법(2002) 제28조엔 ‘위원회와 패널’이 기재돼 있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2> EU의 과학패널구성

(1)	식품 첨가제·풍미와 가공 보조기구·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 관련 패널
(2)	동물용 사료에 사용하는 첨가제와 사료 제품 또는 물질 관련 패널
(3)	식물 건강·식물 보호 제품과 잔여물 관련 패널
(4)	유전자변형 유기체(GMO) 관련 패널
(5)	다이어트 제품·영양과 알레르기 관련 패널.
(6)	생물학적 위험 관련한 패널
(7)	식품 사슬의 내 오염물질 관련 패널
(8)	동물 건강과 복지 관련 패널

- EU에서 과학 패널의 수와 명칭은 패널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과학적 발전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함(일반식품법 제58조 제2항).

<표 23> 과학위원회 운영과 협력절차 내부규칙 항목

(1)	위원이 과학위원회 또는 과학 패널에서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횟수
(2)	각 과학 패널의 구성원 수
(3)	과학위원회와 과학 패널에 대한 참여비 등 비용 제공 절차
(4)	과학위원회와 과학 패널에 과학적인 의견과 관련된 과제와 요청의 배정 방식
(5)	과학위원회와 과학 패널 내 구체적인 작업 그룹의 조직과 구성, 외부 전문가의 작업 그룹 참여 절차와 가능성
(6)	참관인의 과학위원회와 과학 패널 회의 참석 절차와 가능성
(7)	공청회 조직 절차와 가능성

### 1) FEEDAP

- FEEDAP(출처: EFSA <http://www.efsa.europa.eu/en/panels/feedap>)은 사료 제품과 사료 첨가제 관련 전문가 패널임.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또는 사용될 수 있는 첨가제나 원료 물질의 안전성·효능에 대

해 과학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sup>23)</sup> FEEDAP은 유럽 전역의 과학자로 구성되고, 전문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임명됨. 동물 영양·동물 생리학·생산·소화 과정·사료 생산 기술·사료 배합 기술·영양 요구 사항·항생제 내성과 단위 동물·반추 동물·가금류 영양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함. 독성학 분야에선 아만성과 만성 독성(반복 용량 연구), 유전 독성과 돌연변이 유발성, 발달과 생식 독성, 발암성과 직업 독성학(occupational toxicology) 전문가가 참여함. 약물동태학·약리역학·대사 연구 분야에선 물질의 흡수·분포·대사·배설(ADME), 노출 평가(상위 수준·최대 잔류 수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미생물학과 항생제 내성 분야엔 미생물 기반 사료 첨가제 평가 전문가가 참여함. 환경 위험 평가 분야엔 사료 첨가제 사용이 육상과 수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참여함.

## 2) 식품과 사료에 대한 긴급 경고 시스템(RASFF)

- EU는 1979년 ‘EU 식품과 사료에 대한 긴급 경고 시스템’(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을 구축함. RASFF는 EU의 28개 회원국이 효율적으로 사료와 식품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24시간 내내 긴급 공지를 보낼 수 있는 체계임. RASFF를 통해 식품과 사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가 EU 회원국 사이에서 신속하게 교류되고 있음.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RASFF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RASFF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료 등 특정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함.

## 3) 독일

- 독일은 사료 안전성을 국가 다년식품안전계획(MNCP)에 포함해 다루고 있음. 식품과 사료 안전 담당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세심하게 구축돼 있는 것이 독일의 특징임. 현장에서의 시료 채취와 검사 등은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Lower Land Level에서 이뤄지고 있음. 독일은 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일차적으로 귀속시키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독일은 연방 식품농업부(BMEL)·연방 소비자 보호와 식품안전청(BVL)·연방 위험평가연구소(BfR)·주 정부가 함께 다년간의 위험 관리에 기반한 ‘국가 사료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중 BVL은 식품안전에 관한 모니터링 지원, 검사 결과 분석,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독일에서 담당 기관에 의한 사료 검사는 사료의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고 있음. 사료 생산자, 저장·운송·유통업자, 판매자, 수의과 병원, 수입 통관소 등에서 검사가 진행됨. 검사 대상 제품은 사료 원료(단미사료)·사료 첨가물과 약품·배합사료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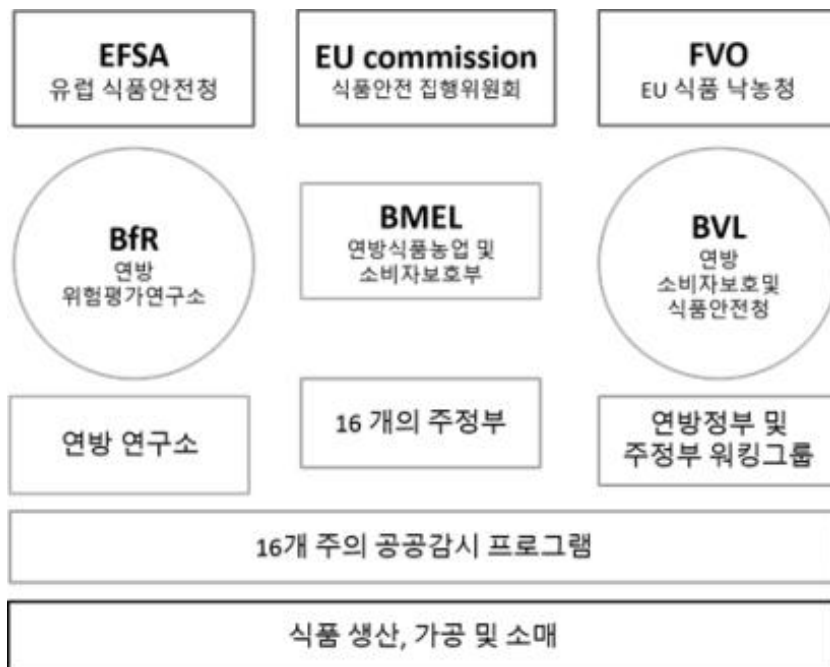
23)efsa.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첨가제 및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패널, <https://www.efsa.europa.eu/en/panels/feedap>



- BVL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위해 독일 내 등록된 사료제조업자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사료 검사 결과는 BVL이 수집하고 분석함. 이를 종합해 매년 국가 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차년도 위험관리계획에 반영됨. 수입 사료에 대해선 연방 재정부(BMF)의 위탁을 받아 BVL 감독관이 통관 장소를 지정하고 있음.
- 사료 첨가물에 대해선 BVL의 주도하에 BfR과 FLI(Friedrich Loeffler Institute)가 함께 협력해 사료 첨가물에 대한 승인·개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새로운 사료 첨가물이 평가 결과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제공하고 있음.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성을 지키기 위해 BVL은 모든 사료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
- 국내에도 EU의 RASFF 시스템이나 독일의 BVL 같은 긴급대응 담당기관의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독일처럼 식품과 사료 안전관리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유기적이면서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 독일의 식품 안전 네트워크

자료: BMEL, food safe strategy 2013.



## 다. 일본

- 농식품부가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할 때 참고할만한 일본의 유사기관으로 농업자재심의회가 있음. 이 재심의회는 농림수산성이 사료안전법에 근거해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가축 건강과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자재심의회에선 각 분야 전문가인 심의회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료 중 유해물질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음.
- 일본은 사료 관리에서 농림수산성(MAFF)과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은 지자체나 민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수입사료 관리는 거의 민간에 맡겨진 상태임.
- 일본 사료안전 관리는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가 주로 담당하고 있음. 축수산안전관리과는 농업자재심의위원회와 식품안전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음.
- 일본의 사료 품질과 안전관리 제도는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도입됨. 이는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35호, 1953년)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일본에선 2004년에 후생노동성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식품 중 농약·동물용 의약품·식품 첨가물의 잔류기준치(MRL)를 설정함. 사료에 대해선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식품 잔류기준치(MRL)를 충족하지 못한 축·수산물이 생산·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 내 농약에 관한 MRL을 추가로 설정함. 일본 농림수산성은 사료 공정과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FAMIC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하는 등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고 있음.

### 1) 식품안전위원회<sup>24)</sup>

- 일본에서 사료 관련 법률 개정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공동 소관 업무임. 사료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함. 이는 일본 정부가 사료를 사람이 먹는 식품의 전(前) 단계로 간주하기 때문임.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기준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됨. 위원 임기가 정부의 정권교체 여부와 관련 없이 보장되고 있음.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법령 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정에 대한 반대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보장되고, 법령 개정을 할 때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2) 농림수산성 소속 사료안전농업자재심의회(의사결정기구)

- 일본 농림수산성은 사료 내 유해물질의 기준을 설정할 때 농업자재심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24) 진현정 외, 농산물(사료)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n.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4.12),

농업자재심의회 위원은 대학·연구기관·생산자·소비자 등으로 구성됨.

<표 24> 일본 농업자재심의회 사료분과회 위원 명부 중 소속(이름 제외) / 2020.7.9. 기준

사료분과회 위원 명부 <sup>25)</sup>	
소속	세부 소속
국립대학 법인 오카야마 대학 대학원	환경생명과학연구과 객원교수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지원센터신기술개발부
국립대학법인 동경대학 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교수
국립 의약품 식품위생 연구소안전성생물시험연구센터	독성부 부장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식품첨가물부 부장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축산연구부문 사료작물 연구영역 사료작물 계 농 유닛주식회사 난치쿠팜	대표이사
와세다 대학	이공 학술원 강사
국립대학법인 도쿄대학 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교수
마사카즈 오쓰마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연구과장
국립대학법인 교토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 교수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안전정책추진실 담당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	동물위생연구부문 병태연구영역 생화학 유닛장

**농업자재심의회령(2002년 정령 제298호)<sup>26)</sup>**

내각은 농림수산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98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정령을 제정한다.  
 제1조(조직) 농업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 30인 이내로 조직한다.  
 2 심의회에서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3 심의회에서 전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위원 등의 임명) 위원 및 임시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임명한다.

25) 農業資材審議會飼料分科會委員名簿,  
<https://www.maff.go.jp/j/council/sizai/siryou/49/attach/pdf/index-2.pdf>

26) 種苗法・農業資材審議會關係法令集, [https://www.maff.go.jp/j/council/sizai/syubyou/14/pdf/ref\\_data2.pdf](https://www.maff.go.jp/j/council/sizai/syubyou/14/pdf/ref_data2.pdf)

2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3 임시위원은 해당 특별사항에 관한 조사심의회가 종료된 경우 해임된다.

4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 내용에 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해임된다.

5 위원, 임시위원 및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회장) 심의회에 회장을 두고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회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3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미리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부회) 분과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를 둘 수 있다.

2 부회에 속해야 할 위원, 임시위원 및 전문위원은 분과 회장이 지명한다.

3 부회에 부회장을 두고 해당 부회에 속한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4 부회장은 해당 부회 사무를 관장한다.

5 부회장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회에 속한 위원 중 부회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6 분과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의 의결을 분과회의 의결로 삼을 수 있다.

제7조(의사) 심의회는 위원 및 의사와 관계있는 임시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2 심의회는 의사는 위원 및 의사와 관계있는 임시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2항의 규정은 분과회 및 부회의 의사에 준용한다.

제8조(사무) 심의회는 사무는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한다.

제9조(잡칙) 본 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의사 절차와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심의회에 자문해 정한다.

## 라. 중국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칭)가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할 때 참고할만한 중국의 유사 조직으로 **전국사료평심위원회(全國飼料評審委員會)**가 있음.
- 중국의 전국사료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입된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평가, 수입 사료와 수입 사료첨가제의 평가, 사용 승인된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재평가를 담당하는 기술 조직임. 전국사료평심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은 중국 식품안전법 제9조임. 중국 식품안전법 제 9조엔 “국무원의 농업 행정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새로운 사료와 사료 첨가제의 시료와 심의 신청 자료를 전국사료평심위원회(National Feed Evaluation Council)에 제출해 새로운 사료와 사료 첨가제의 안전성·유효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전국사료평심위원회는 육종·동물 영양과 대사 사료 가공·생명공학·화학공업·품질 표준과 검사기준·환경 보호·독성학·약리학·위생과 식품안전 위험평가·정책 법규 등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는 새로운 사료와 사료 첨가제의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9명 이상의 위원회 소속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심사가 이뤄짐. 필요시엔 1~2명의 평심위원회 위원 대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 참가 위원은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함.
- 중국의 전국사료평심위원회는 심의·평가 후 평가 의견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심사와 서명을 받도록 규정돼 있음. 위원 간 의견이 다르면 이를 분명히 기록해야 함.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게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됨. 위원회 검토 자료의 기밀이 유지돼야 하며, 위원회 참여 회피 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 전국사료평심위원회는 새로운 사료·사료 첨가제의 시료와 신청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검토 결과를 국무원 농업 행정부에 제출해야 함. 평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국무원 농업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중국 국무원 농업행 정부는 전국사료평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사료와 사료 첨가제에 대한 신제품 허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발급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중국의 제3기 전국사료평심위원회는 1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됨. 전국사료평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제 n기 전국사료평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평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음. 평심위원회 후보자로 추천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함.<sup>27)</sup>

27) 農業部成立第三屆全國飼料評審委員會, [https://www.sohu.com/a/58788422\\_378814](https://www.sohu.com/a/58788422_378814)

<표 25> 전국사료평심위원회 자격

<p>1. 전국사료평심위원회 위원의 전공 분야 범위</p>	<p>육종·사료 가공·동물 영양·독성학·약리학·대사학·위생학·화학공학 합성·바이오 기술·품질 표준과 검사 기술·환경 보호·식품안전 위험평가 등 전문 분야의 기술 전문가.</p>
<p>2. 위원의 조건<sup>28)</sup></p>	<p>높은 학업 성취도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 분야 연구·교육에 참여한 사람</p> <p>해당 분야 국내·외 과학기술 발전 동향에 정통한 사람</p> <p>상급 전문직 직위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60세를 넘지 않는 사람(고급 전문가나 특수 분야 전문가에 대해선 연령 제한 완화 가능)</p> <p>원칙을 지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책임감이 강하며, 전국사료평심위원 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가진 사람</p> <p>사료 관련 생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p>

28) 전국 사료 심사위원회 후보자 추천에 관한 농무부 총무실 공지,  
[http://www.xmsyj.moa.gov.cn/zcjd/201411/t20141102\\_4123594.htm](http://www.xmsyj.moa.gov.cn/zcjd/201411/t20141102_4123594.htm)

## 2. 한국

### 가. 유사 위원회 참고

○ 농식품부에서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의 설치 방향을 정할 때 행정기관위원회법 등 6개 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유사 위원회의 구성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1) 행정기관위원회법<sup>29)</sup>

○ 사료안전관리위원회 등 정부 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위원회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수 있음.

####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up>29)</sup>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8. 11.>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



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고려 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참고함.

### 식품위생법<sup>30)</sup>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2.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 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연구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농식품부가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을 설정할 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참고함.

#### 축산물위생관리법<sup>31)</sup>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 제1항 또는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9. 4. 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4. 30.>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0. 5. 2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 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0. 2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4)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 농식품부가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방향을 설정할 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구성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sup>32)</sup>

#####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4.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⑤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심의회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회를 둔다.
  - ⑦ 심의회는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회를 둘 수 있다.
  - 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 ⑨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의 국제 동향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 4. 18.>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2. 18.>

[시행일 : 2020. 8. 19.] 제4조 제8호

1. 표준규격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 농식품부가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을 설정할 때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참고할 수 있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농약관리법엔 설립 근거가 없으나 시행령에 설치를 규정한 것이 특징임. 해당 위원회의 장을 농촌진흥청 차장이 맡는 등 앞에서 언급한 다른 위원회와는 구성에서 차별성을 보임.

농약관리법 시행령<sup>33)</sup>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0. 13. 2012. 1. 25.>
-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 1. 2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0. 13.>

1. 농약 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 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6. 30. 2010. 10. 13.>
-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 6. 30. 2003. 6. 25.,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 2010. 10. 13.,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농약 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 이내
  3. 농약 등의 제조업자·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 ③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약관리법 시행령

6)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농식품부가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방향을 설정할 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참고할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sup>34)</sup>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15.>
  -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 1. 15.>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 1. 15.>
  - 1.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 15.>
- 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5.>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4. 5. 21.]

#### 제28조(단체 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1.]

○ 현행 사료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사료 관련 법령에도 사료검사·단체 설립·사료안전관리인 등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음.

####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4. 열량·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5. 미생물·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6. 유기산·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방법 및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제28조(단체 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1.]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생명과학, 식품공학·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료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조시설을 관리
2. 사료의 제조, 사용 및 보존방법 등이 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사료공정(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3. 사료의 성분 등이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분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4. 용기나 포장에의 표시사항이 법 제13조 제1항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사료의 표시사항과 그 표시방법(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5.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6.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종업원 교육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표 26 >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전문가	의 건
축산과학원/ 지상윤 연구원	①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위원회의 분류기준이 명확해야 함. ② 전문위원회 간 효율적인 업무 조율이 필요함.
수산과학원/ 이봉주 연구원	① 최근 설립된 양어용 사료 관련 협회(한국양어사료협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 ② 사료안전관리위원회에 사료 전문가 외 정책부서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해야 함. ③ 다채로운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	① 생산제인 양축용 사료와는 다르게 소비제인 반려동물용 사료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요함. ②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③ 유명무실한 사료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함.
한국사료협회/ 홍성수 부장	①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명확하게 정해야 함.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정책 마련이나 기준 설정을 할 때 반영돼야 함.
한국단미사료협회/ 차근환 부장	① 사료안전관리위원회에 국산 사료(농관원·각 시도)와 수입 사료(농협·단미사료협회·한국사료협회)를 검사하는 기관과 이해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② 현행 사료관리법에 정의된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 사료를 기반으로 수입 사료와 국내산 사료로 나눠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③ 현행 수입 사료검사 기준인 표준사료 분석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

<표 27>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

전문가	의견
이화여자대학교 / 오상석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부가 조직한 위원회는 실질적인 성과보다 대개 형식적인 논의에서 끝나고 있음.</li> <li>②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고,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음.</li> <li>③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 식약처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처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li> <li>④ 사료의 종류별·유형별로 심의 내용과 전문가 풀이 다르기 때문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사료 종류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li> </ul>
강원대학교 / 송영환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는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접근 방법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와 달라야 함.</li> <li>② 사료안전관리위원회는 상설 기구와 담당 부서를 뒤야 하지만 인원·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li> <li>③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위원회별 균형을 고려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음.</li> </ul>
서울대학교 / 홍준형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사료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li> <li>② 위원회 명칭에 ‘심의’ 포함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li> <li>③ 위원회 명칭에 ‘심의’를 포함하면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li> <li>④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사료관리법보다 하위법령(시행령 등)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사료관리법에 위원회 설립의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돼 있어야 함.</li> </ul>

## 다. 사료 관련 협회의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한 의견

<표 28>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세부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각 사료 관련 협회의 의견

사료 관련 협회명	의견
한국사료협회	사료 표시위원회·사료원료 인정위원회·사료 내 유해물질 허용 심의위원회 등
한국단미사료협회	축산산업발전 소위원회·수산산업발전 소위원회·반려산업발전 소위원회
한국펫사료협회	① 공통 운영 : 안전성과 위생 위원회·원료와 첨가물(보조사료) 위원회·사료관리 제도 위원회 ② 사료의 종류별 구분(축산용·수산용·반려동물용 사료) 운영 - 표시사항위원회·광고와 마케팅 위원회·영양 위원회
한국양어사료협회	① 수산사료 산업육성위원회 ②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위원회 ③ 양식환경 관리를 위한 양식환경관리위원회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법률정리위원회

<표 29 >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세부 전문위원회 위원수에 대한 각 사료 관련 협회의 의견

사료 관련 협회명	의견
한국사료협회	정부와 지자체·사료산업 단체·전문기관(국책 연구원 등)·소비자단체가 포함된 4~5명 수준
한국단미사료협회	① 축산산업발전 소위원회: 5명(농식품부·농관원·축과원·사협·단미협) ② 수산산업발전 소위원회: 5명(농식품부·해수부·수과원·사협·단미협) ③ 애완산업발전 소위원회: 5명(농식품부·축과원·사협·단미협·팻사료협)
한국팻사료협회	① 각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공동 위원회 10명 내외, 축종별 위원회는 5명 내외로 함. ② 농식품부 등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 학계, 산업 관련 단체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함.
한국양어사료협회	① 전문위원회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정책 진행을 위한 의견 통합이 늦어질 수 있음. ② 전문위원회 별 3명으로 구성해 전문적 의견 수렴과 빠른 정책 진행 필요함.

#### 라.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한 종합 제안

<표 30 >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 명칭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의 찬·반 의견 차이

사료 관련 협회명	의견
한국사료협회	① 사료 품질·안전관리 심의위원회 ② 단순 자문 기능을 뛰어넘어 위원회를 통한 법적 판단(유권해석)이 가능하도록 명칭에 '심의'가 포함된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기대함.
한국단미사료협회	① '사료안전관리 위원회'이란 가칭이 적당하고, 이견 없음.
한국팻사료협회	① 사료 품질·안전 관리위원회 ②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하므로 명칭에 '품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양어사료협회	① 수산사료 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료 안전관리 지원 위원회'

<표 31> 사료안전관리위원회 내 세부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위해요소별·유통 단계별·대상 축종별)에 대한 각 사료 관련 협회의 의견

사료 관련 협회명	의견
한국사료협회	① 특별한 의견 없음. ② 사료안전관리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사료 표시위원회·사료원료 인정위원회·사료 내 유해물질 허용 심의위원회를 둠.
한국단미사료협회	대상 축종별로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함.
한국펫사료협회	공통 전문위원회와 사료 대상별 전문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함.
한국양어사료협회	수산동물의 양식을 위한 사료산업 발전과 수산업 육성을 위해 유통단계별·축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함.



### 3. 종합 검토 의견

- 행정기관위원회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설치 법령을 기초로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식품위생법에 포함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가장 공통점이 많은 위원회로 여겨짐. 미국·EU(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선 식품(food)과 사료(feed)를 같은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사료의 경우 ‘휴먼 그레이트’(human grade) 등 식품 수준의 안전성과 영양을 충족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대상이 사료·축산물 등 축산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할 때 벤치마킹 쉬운 조직으로 판단됨.

-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사료관리법에 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식품위생심의위원회·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도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에 대해선 사료 관련 협회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했음.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사료 안전관리위원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사료협회와 한국펫사료협회는 ‘품질’이란 용어를 추가한 각각 사료 품질·안전관리심의위원회와 사료 품질·안전관리위원회란 위원회 명칭을 제안함. 특히 한국사료협회는 위원회 명칭에 ‘심의’란 용어를 넣어 법적 판단(유권 해석)이 가능한 실질적인 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다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위원회에서 ‘심의’란 용어가 명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사료의 품질을 뛰어넘어 사료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료안전관리위원회란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임.

-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세부 분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선 사료 관련 협회 간 의견이 엇갈렸음.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사료의 대상별로 발전 소위원회 3곳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총괄 조직인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발전 소위원회’를 분과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양축용·수산용·반려동물용 등 사료의 대상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한국펫사료협회)도 제기됨. 사료의 대상별로 사용

목적과 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전문가 집단도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축·수산·반려동물 사료안전관리위원회 등 세 개의 세부 전문위원회로 두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임. 다만, 사료 불법화를 가정할 때 양어용 사료의 안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농식품부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 사료관리안전위원회는 ‘안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사료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질별로 세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음. 한국사료협회가 제안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사료 내 위해물질(동물용 의약품·방사능·중금속·유해 미생물·유해 화학물질 등)·사료 원료 안전·사료 표시 등을 다루는 전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함. 중국의 전국사료평심위원회처럼 신 사료·사료 첨가제 안전성·유효성 검증 전문위원회, 환경 영향 진단 전문위원회를 세부 전문위원회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사료안전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분과위원회별 참여 위원 수는 10명 이하 제안함. 분과위원회별 위원수가 10명을 넘어가면 신속한 전문 의견 청취와 위원회 소집, 검토와 정책 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다만, 분야별로 임명된 위원 외에 외부 관련 전문가 1~3명이 위원회의 주제에 따라 한정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국의 전국사료평심위원회는 9명 이상의 위원회 소속 위원이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음. 필요시엔 1~2명의 평심위원회 위원 대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으며, 내부와 외부 위원 모두 심사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보장받고 있음.
-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전문가의 전공은 육종·동물 영양과 대사 사료 가공·생명공학·화학공업·품질 표준과 검사기준·환경 보호·독성학·약리학·위생과 식품안전 위험평가·정책 법규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힐 필요가 있음.
- 사료안전관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론 등은 유튜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전문가가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심의·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전문가의 심의·평가 의견은 모두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함. 소비자 단체·사료 관련 단체(업체 포함) 등의 인원을 전체의 각각 1/3 이상으로 규정해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협의하고 윈윈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킴.

## 식품위생법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결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 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연구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 2제1항 또는 제33조의 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9. 4. 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4. 30.>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

정 2019. 4. 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0. 5. 2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 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0. 2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전 세계적으로 식품 분야에서 '3 ty'가 강조되고 있음. '3 ty'는 Food Safety(안전성)·Food Quality(품질)·Food Security(안보)임. 국내 소비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소비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반려동물 양육인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사료의 안전관리는 축산물 등 축산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돼 인체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최근 정부는 국내 축산업의 글로벌 규격화를 위해 사료관리 법규를 강화하고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힌 것도 한 사례임. 사료관리법관련 6개 고시는 안전 관리 강화 방안과 규제 개선 건의 등을 반영해 개정됨.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사료 안전성 관리가 강화됨. 잔류농약·성분 검사·HACCP 등이 강화 대상임.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이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대상을 조정함. 이는 잔류농약 검사 시간과 비용이 최대 50%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사료 검정의뢰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해 사료 검정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평가체계도 바꿔 사료공장 HACCP 실시 상황의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현행 '경결함'·'중결함' 평가체계를 배점제로 점수화해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함. 사료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함.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9종) 허용 기준을 마련함. 단미사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유충 등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물’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현행 수출사료 영문증명서식(11종)의 발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만으로 지정된 것을 시·도 등 발급기관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대부분의 원료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산 사료 수출도 성장하는 추세여서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국산 사료는 최근 다년간 수출국과 제품의 다변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외국 바이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된 제품을 선호하고 요구하고 있음. 국내 사료안전관리제도에 국제 수출규격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국내 사료산업이 시장개방을 통해 계속 발전하려면 산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HACCP에 의존하고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료는 가축의 성장과 생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므로 사료의 품질과 안전은 매우 중요함. 사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인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료 내 중금속·곰팡이 독소·잔류농약·방사능·기타 위해인자의 허용기준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정부도 사료관리법과 사료공정서·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등의 법령과 제도를 통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료사료는 생산·저장·운반·가공·배합 등 사료의 모든 제조과정에서 위해인자가 유입될 수 있음.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상 원료사료가 위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위해인자에 오염된 사료를 가축이 섭취하면 증체량·사료섭취량·사료효율의 감소와 대사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며, 외분비체계와 내분비체계와 면역시스템이 약화되고, 심하면 폐사에 이름(Andretta 등, 2011; Jiang 등, 2011; Lee, 2011).
- 축산 생산비의 50~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 사료는 위해요인에 따라 농약·가축용 의약품 등이 가축 체내에 잔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료 관리 법규를 개정해 위생 상태가 불량한 사료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가고 있음.
- 최근 국내외에서 사료의 원인 물질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료 안전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오염사건(2008), 미국에서의 살모넬라 오염사료 리콜사태(2010), 벨기에산(1999)·칠레산(2008)의 수입 돼지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 검출, 항생제 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 볏짚의 잔류농약 검출, 수입 사료의 곰팡이독소 오염, 면실 등 사료용 LMO의 환경 방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후 방사능에 오염된 어분 원료의 수입 등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 관련 사고임. 벨기에의 다이옥신(Dioxin) 파동을 계기로 EU는 역내 사료와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바꿈. 미국은 사료 내 멜라민(Melamine) 오염사고 후 새로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개정해 펫사료(pet food)를 포함한 사료와 식품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사료에 포함될 수 있는 위해물질은 다이옥신·변형 프리온(광우병으로 통하는 BSE 병원체)·잔류농약·

멜라민·곰팡이독소·중금속·가축용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과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캠필로박터·병원성 대장균 등) 등 매우 다양함. 사료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사료와 사료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UN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선 우수동물 사양관리 실행규범과 GMP 매뉴얼을 제정해 세계 각국에 예방적 안전 관리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선진국은 사료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조기 경보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음.

- 서구 선진국은 주식(主食)이 축산식품이어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업무임. 안전한 축산식품은 건강한 가축에 안전한 사료를 급여해 생산된 축산물에서 얻을 수 있음. 사료 안전사고는 식품사고로 이어져 사후에 대처하면 이미 확산됐거나 소비돼 수습이 매우 어려움. 안전하지 않은 사료는 가축 등 동물에 직접적인 건강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사람의 식품 안전에도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U·미국 등 선진국에선 사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와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방사성 물질·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사료 오염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식품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료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국내 소비자는 식품(축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식품사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시점임. 국내에서도 사료와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사고나 이슈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임. 사료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평가·심의할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함.
-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부 위원회 중 최상위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농식품부·식약처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의 주요 식품안전 정책을 심의함.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음.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분과 위원회로 기획제도전문위원회·긴급대응전문위원회·화학물질전문위원회·미생물전문위원회·신식품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해성 평가기구인 반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정부 내 종합정책조정기구로 설계됨. 일본의 식품안전위원(7인)은 전원이 중·참 양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지만 국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1명 이내로 구성됨.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돼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객관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신뢰성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로 마련된 시책의 실시상황을 감시하며,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식품안전과 관련한 관계자 상호 간의 정보와 의견교환의 기획과 실시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음. 주요 식품안전관련 법령의 개폐 시 각 관계 대신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기재된 법은 식품안전기본법(제 7조)임.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식품산업진흥법·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 위생관리법·학교급식법·사료관리법 등 식품안전법령 등(2조 5항)에 속한 개별법의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관계부처 등에서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유는 광우병·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우려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자와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고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가공·조리식품은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목적(제1조)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하는 것임. 사료관리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의 ‘식품안전법령 등’에 포함됨. 식품안전기본법은 사료관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농식품부에서 사료 안전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식품안전기본법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①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 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식품안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농식품부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할 때 식품안전기본법에 기재된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따르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25., 2011. 7. 21., 2011. 11. 22., 2012. 6. 1.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20. 8. 11.>

1. "식품"이란 모든 식품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 다. 삭제 <2011. 7. 21.>
  -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업의 생산자재
  - 차.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 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식품안전법령 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6. "위해성평가"란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추적조사"란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21. 2. 19.] 제2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 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식품안전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및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2.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 및 조사·분석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분석·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 8. 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3. 3. 23.>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결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8. 4.>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 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1. 6. 7., 2011. 8. 4.>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연구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2. 19.]

제3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7. 12. 12.>]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39조의2에서 이동 <2017. 12. 12.>]

제40조(위원의 직무) ① 삭제 <2011. 12. 19.>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1. 12. 19.]

제41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44조(연구위원 등) ①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19.>

② 법 제58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9. 2013. 3. 23.>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규격의 제·개정안 발굴 및 제안
2. 식품 등의 국제 기준·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 그 밖에 식품 등의 국제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사항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4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46조(수당과 여비)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1호(2019. 11.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담당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부서의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안건 심의 시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

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그 밖에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3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3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영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특정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기피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영 제39조의2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심의가 어렵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 방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안건이 전문분야의 검토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이거나 식품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 회의”

2. 안건이 전문분야에서 검토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예정 7일 전까



지 위원장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심의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 동의”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
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

제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 제도 분과위원회
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
3. 잔류물질 분과위원회
4. 미생물 분과위원회
5.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6. 위해평가 분과위원회
7. 방사능 분과위원회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생 제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위생제도 분과위원회 :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방사선조사, 유전자재조합 등 신소재 식품의 안전관리, 새로운 식품 원료 안전관리, 식품 등의 표시, 허위과대광고, 불량식품 근절 정보 및 단속 계획 및 타 분과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안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 :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등 유해오염물질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
3. 잔류물질 분과위원회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부정유해물질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다만,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미생물 분과위원회 :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기준 규격, 항생제 내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포함) 기준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

6. 위해평가 분과위원회 : 위해평가 원칙, 위해평가의 적정성, 이물, 인체노출허용량 설정(제9조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에서 조사·심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의 일시금지, 회수, 폐기 조치

7. 방사능 분과위원회 : 방사능 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등)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심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예정 7일 전까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심의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 조사·심의는 제8조 제2항에 따르며 결과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심의의 효력) ① 위원장이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심의토록 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사·심의한 경우

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의 심의결과서를 지체 없이 회의 소집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본문에 따른 회의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5조(관계인) 영 제42조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위원) 영 제44조 및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한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영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제15조에 의하여 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기타직 보수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제3호의 연구비·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 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5. 위원·연구위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6. 제1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여비·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3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방안

심의위원 위촉 방안	식품위생법·양성평등기본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법적 요건 충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참여 의지가 높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법적 구성요건과 정책 여건
	식품위생법: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3 이상, 식품 영업 종사자와 동업자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3 이상
	양성평등기본법(2018.3.시행) 특정 성별 위원 비율 60% 미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비수도자 34.7% 이상
	전문 분야별로 7개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위생제도분과, 유해오염물질분과, 잔류물질분과, 미생물분과, 식품첨가물분과, 위해평가분과, 방사능분과  분과별로 1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당연직은 중복 구성)

<p>심의위원 위촉 세부기준</p>	<p>전문성: 식품·영양과 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7년 이상 경력자</p>
	<p>관련 단체(학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 중 학력·경력과 최근 연구 실적 등을 감안해 각 분과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 선발</p> <p>1. 식품위생, 식품영양, 식품공학, 독성학, 공중보건학, 화학, 미생물학, 농학, 수산학, 예방의학, 생명공학, 법학 등 관련 전공자</p> <p>2.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최근 연구나 업무실적이 많은 사람</p> <p>3. 관련 기관이 추천</p>
	<p>한 위원 중 중복 추천된 위원 우선 선발</p>
	<p>참여 의지</p>
	<p>추천위원 중 심의위원회 회의 참여 실적이 높은 기존위원 우선 선발</p>
	<p>심의위원회 참석율 저조(70% 미만) 심의위원 제한</p>

<표 3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업무

전문 분과	주요 심의사항
위생제도	식품 및 영양 표시 기준, 허위·과대광고 범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관리 등
	방사선조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후관리 방안,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
	법령·제도 전반, 기준·규격 제·개정 등 타 분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유해오염물질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신종 유해 물질 기준 규격 등
잔류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허용기준 설정 등
미생물	미생물, 식중독균 기준 규격, 항생제 내성 평가 관리 등
식품첨가물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 제·개정 및 모니터링,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규격 등
위해평가	위해평가 원칙, 독성 및 위해 평가, 미생물 위해평가,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의 일시금지 조치 심의
방사능분과	방사능 관련 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각종 위해물질이 함유된 불량 사료로 인한 축산식품(축산물) 안전사고 위험 증가, 불량 양축용 사료로 인한 가축의 생산성(사료효율)과 성장 저하, 불량 반려동물용 사료로 인한 반려동물의 성장과 건강 이상 등 사료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양축 농가·반려동물 양육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료 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평가·심의할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립은 농식품부의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됨. 관련 업계나 단체에선 사료 안전뿐 아니라 품질·지원과 육성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의 신설도 희망하고 있지만 품질이나 사료산업 지원·육정보다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사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임.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신설의 필요성과 명분은 이미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료 안전 관련 식품안전사고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료안전관리위원회는 사료 관련 모법인 사료관리법에 설치 근거를 명시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정부 내 위원회 가운데 사료안전관리위원회와 가장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식품안전심의위원회와 축산물안전심의위원회도 각각 모법인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식품위생법엔 식품안전심의위원회와 관련해 별도의 장(9장 57~58조)이 명기돼 있음. 모법에 식품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식품위생법 시행령(39~47조)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돼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엔 식품안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 2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12조’에선 위원의 정원·자격·임기 등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운영세칙(위원회 규정)을 아예 폐지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개정 2018. 3. 13.>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 제1항 또는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9. 4. 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4. 30.>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0. 5. 2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19. 10. 22.>

②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2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목개정 2019. 10. 22.]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2020. 3. 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심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

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8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삭제 <2019. 10. 22.>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 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0. 2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 농식품부가 축산식품과 반려동물·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대처나 사료 안전 관련 현안을 다루는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료관리법 제10조(사료관리인)의 '사료관리인'을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대체하고 제10조(사료관리인)은 순서를 뒤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 사료관리법에 제10조(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 조항만 추가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운영 세칙에서 다루는 방안을 제안함. 식품안전심의위원회에 관련해 식품위생법에선 두 개 조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사료안전관리위원회도 사료관리법 제10조(사료관리위원회의 설치)와 11조(사료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사료관리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과 운영 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판단됨.
-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세부 분과(전문) 위원회는 되도록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핵심은 사료안전 관리와 소비자 보호임. 사료 품질관리보다는 사료 안전에 중점을 뒀야 하므로 세부 분과 위원회는 사료안전 관리 분야와 소비자 민원 발생 가능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료관리법 제 11조의 사료공정, 13조의 사료 표시, 제 14조·제 4장의 위해요소 및 사료검사로 볼 수 있음. 사료내 유해물질전문(분과)위원회·사료원료안전전문(분과)위원회·사료표시안전전문(분과)위원회 등 우선 세 분야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함. 사료첨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료첨가제 안전성·유효성 전문(분과)위원회를 별도 설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역할·의사결정 체계와 권한 등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의 조사·평가·심의 결과에 따른 권한이 사료관리법이나 사료관리법 시행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거나 관련 이해당사자가 적극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등은 운영회 운영 세칙보다는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위원회 심의·평가 결과 반영에 한계가 있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위생 관련 현안에 대한 조사·심의가 주된 역할이지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위원회는 여기에 평가를 추가해 사료 안전 관련 조사·심의·평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규모는 현재 이 분야 전문가 인력 풀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를 유지할 것을 제안함.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수가 100명 이내로 돼 있지만 사료안전관리위원회는 50명 이내로 줄일 것을 제안함. 20명 이내 등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규모를 이보다 훨씬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처럼 사료 안전 관계 공무원, 사료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팻사료협회·한국양어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면 3~4개 분야로 제안된 사료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이 필요함. 다만 연구위원의 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20명 이내보다 크게 적은 5명 이내로 제안함.
-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 위원회 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분과 위원회 수(7개)보다 적은 3~4개를 제안함. 분과 위원회를 사료공정 분과위원회·사료표시 분과위원회·사료 위해요소 및 사료검사 분과위원회 등 3개로 구성하는 1안과, 사료내 유해물질 분과위원회·사료원료 분과위원회·사료표시 분과위원회·사료첨가제 안전성·유효성 검정 분과위원회 등 3개로 구성하는 2안을 제시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운영 세칙 등을 참고해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관장하기 위한 사료관리법과 시행령·운영 세칙안은 다음과 같음.

<표 34> 사료관리법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추가하는 안

<p>사료관리법</p> <p>제○장 사료안전관리위원회</p> <p>제○조(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b>평가</b>·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료 내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 허용에 관한 사항</li> <li>2. 사료 원료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li> <li>3. 사료 표시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사료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li> </ol> <p>제58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료 안전 관계 공무원</li> <li>2. 사료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li>4.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팻사료협회·한국양어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li>5. 사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관리위원회에 사료 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p>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연구
  2. 국제사료규격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사료의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35>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안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조(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조제○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조사·평가·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조의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조제○항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조의 ○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위원의 직무)

-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조(분과위원회)

- ① 관리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조(연구위원 등)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5명 이내(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조제○항 제○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규격의 제·개정안 발굴 및 제안
2. 사료 등의 국제 기준·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 그 밖에 사료 등의 국제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리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사항

③ 연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사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조(간사)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조(수당과 여비) ① 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표 36> 사료관리법 운영세칙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추가하는 안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호

제○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제○조,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담당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부서의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안건 심의 시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

나. 제○조제○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그 밖에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조의 ○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조의 ○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영 제○조의 ○ 제○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특정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기피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영 제○조의 ○ 제○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당 안전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심의가 어렵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인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조사·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 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전을 검토하고 심의·평가방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안전이 전문분야의 검토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이거나 사료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 회의”

2. 안전이 전문분야에서 검토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회의”

제○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서에서는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전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예정 7일 전까지 위원장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전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심의한다.

1. 안전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동의”

2. 안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3. 안전을 심의한 결과 안전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

4. 안전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

제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공정 분과위원회

2. 사료표시 분과위원회

3. 사료 내 위해요소 및 사료검사 분과위원회

4. 사료첨가제 안전성·유효성 검증 분과위원회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식품위생심의위원회 20명 이하)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료 내 위해요소 및 사료검사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사료공정 분과위원회 : 원료 사료 관리, 사료 제조 공정상의 안전 기준, 사료 유통·판매·보관 시의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사료표시 분과위원회 : 사료 등의 표시, 허위 과대광고 등에 관한 사항

3. 사료 내 위해요소 및 사료검사 분과위원회 : 사료 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부정 유해물질 기준 설정, 사료내 방사능 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료첨가제 안전성·유효성 검증 분과위원회 : 사료첨가제의 기준 설정,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8.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

제○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등)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심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조(분과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부서에서는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평가 안건과 심의·평가 일시 및 심의·평가 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예정 7일 전까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평가 안건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심의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 조사·심의는 제○조 제○항에 따르며 결과 서식은 별지 제○호 서식과 같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심의·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 서식은 별지 제○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평가 안건과 함께 별지 제○호 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

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조(조사·심의·평가의 효력) ① 위원장이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심의·평가토록 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평가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심의·평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 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사·심의한 경우
- 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제○조 제○항에 따른 회의의 심의·평가 결과서를 지체 없이 회의 소집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항에 본문에 따른 회의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조(관계인) 영 제○조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조(연구위원) 영 제○조 및 제○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의한다.

제○조(수당 등 지급) 영 제○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제○조에 의하여 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행지침」 중 기타직 보수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제3호의 연구비·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5. 위원·연구위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6. 제○조 제○항부터 제○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여비·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37> 사료관리법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추가 주요 내용

#### 사료관리법

제 10조(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1. 동물용 의약품·방사능·중금속·유해 미생물·유해 화학물질 등 사료 내 유해·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료 원료 안전에 관한 사항
3. 사료 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료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

#### 제11조(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사료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사료 안전 관계 공무원
2. 사료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사료 제조·수입·판매 관련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사료산업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팻사료협회·한국양어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사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사료안전관리위원회에 사료 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연구
  -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 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 3. 외국의 사료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38>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추가 주요 내용

사료안전관리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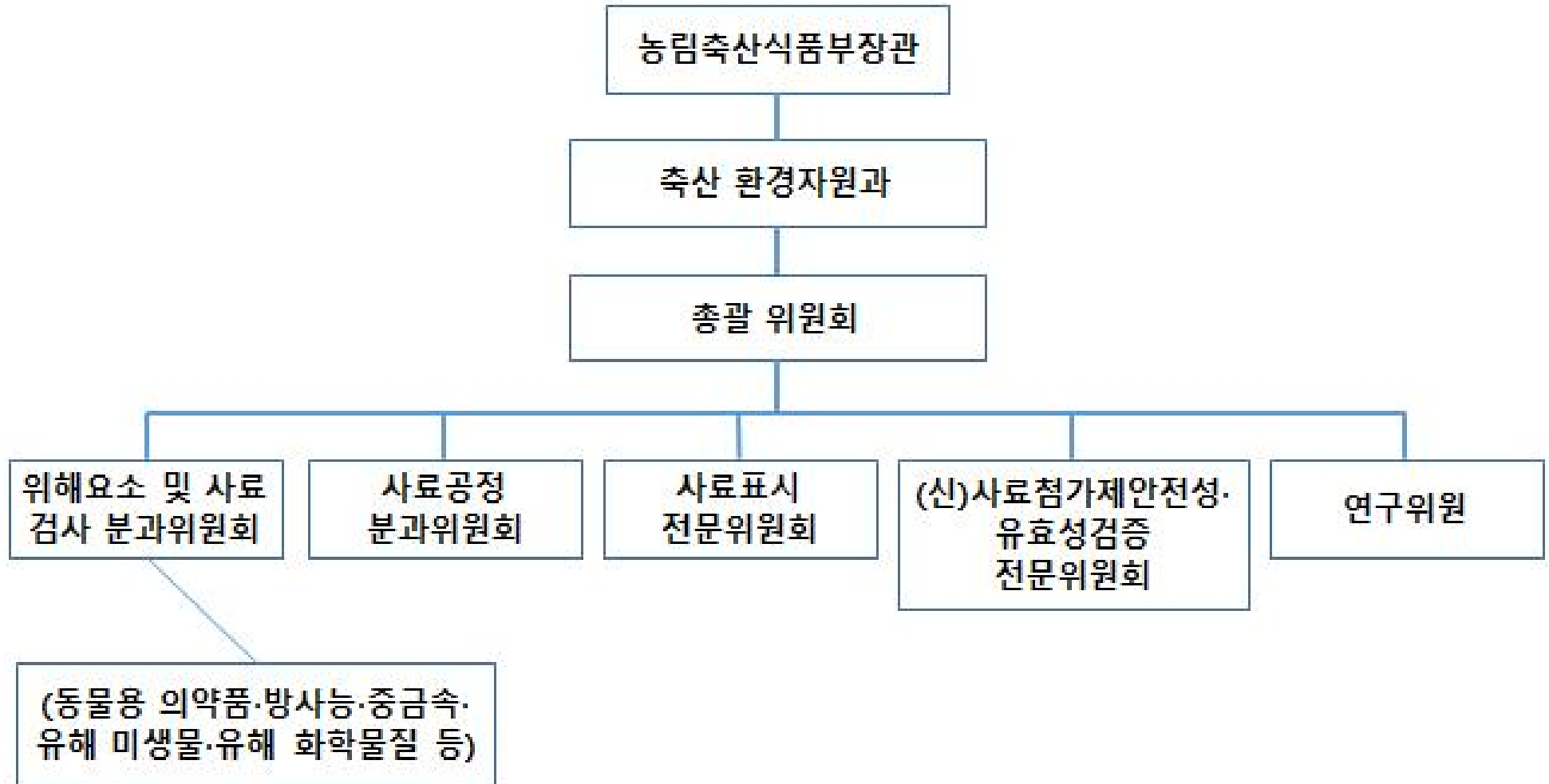
(연구위원)

- ① 법 제3조의2 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과 사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료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그림 12> 가칭 사료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표



## VI. 유통·보관업과 판매업 업종 신설 필요성

## VI. 유통·보관업과 판매업 업종 신설 필요성

### 1. 해외 사례

#### 가. 미국

- 농식품부가 유통·보관업과 판매업 업종 신설을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미국의 관련 규정으로 식품예방관리(Preventive Control Rule for Human Food)가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사이트 (<https://www.foodcerti.or.kr/fsma/mainRule>)에서 확인할 수 있음. 미국에서 식품안전계획은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식품 예방관리 전문가)가 수립하게 돼 있음.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PCQI의 주 역할임. PCQI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관리임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 활동과 적절한 시정조치를 시행해야 함. 이런 활동을 서면으로 유지하고, 3년마다 재분석해야 함. PCQI는 FDA에서 개발한 교육(FSPCA)을 이수했거나, 이와 동등한 위험기반 예방관리 개발과 적용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식품안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직무경험을 통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전문가 중에서 선발함. PCQI는 식품안전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수립된 계획 검증·기록 검토·식품안전계획 재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sup>35)</sup>
- 식품과 사료 안전을 위해 미국의 식품과 사료 제조시설에선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와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식품과 사료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할 때 현대적이고 예방적인 위해요소 기반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개발됨.
- 미국에서 반려동물 사료 유통·판매 업종은 세세분류 단위에서 ‘펫(pet)과 펫용품점’에 해당하며, 기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 반려동물용 사료 유통·판매 관련 업종은 기타 소매 잡화점 이하의 ‘반려동물과 관련 용품 소매업’으로 분류됨. ‘펫과 펫용품점’은 미국에서 반려동물·반려동물용 사료·반려동물용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정의되고 있음.

35)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수출지원센터,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동향 (n.p.: 한국식품연구원, 2018.3), 8.



<표 39> 미국 산업분류(NAICS) 반려동물 관련 업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4-45] 소매업	[453] 소매잡화점	[4539] 기타 소매 잡화점	[45391] 반려동물과 관련 용품 소매업	453910 반려동물과 관련 용품 소매업 (Pet and Pet Supplies Stores)
[81] 기타 서비스(공 공 행정부문 제 외)	[812] 개인과 세 탁서비스	[8129] 기타 개인 서비스	[81291]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수의 서비스 제외)	[812910]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수의 서비스 제외)

자료 :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1) cGMP

- 미국에서 cGMP는 사료나 식품제조업체 직원의 질병과 청결관리, 작업장과 작업장비의 위생적 관리, 창고관리와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 방지, 부정식품 처리 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sup>36)</sup> 교육·훈련 등을 의무화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교차 접촉 관련 관리 내용이 담겨 있음.

2)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

-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는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용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됨.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는 195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1,000개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용품 제조·수입 판매업자와 소매업체 등을 대표하는 단체임.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펫산업 시장조사, 입법과 규제에 대한 대응, 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홍보 활동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3) HARPC

- 미국은 미국 내·외 식품시설에 대해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를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 등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실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HARPC와 HACCP의 차이점은 HACCP은 CCP(Critical Control Point)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반면 HARPC는 공정상 예방관리 뿐만 아니라,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위생예방 관리·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위해요소를 총괄 관리하고 있음.<sup>37)</sup>
- 농식품부가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을 사료관리법에 포함하려면 CFR21(미국연방규정집 21편) 제117조 95항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식품 부산물의 보유와 유통’ 내용도 참고할 수 있음.

36) 윤덕훈 외,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매뉴얼 (n.p.: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05), 17.

37) <https://www.foodcerti.or.kr/fsma/mainRule>

미국연방규정집(CFR 21)

- a) 507조 12항에서 식별된 바와 같이, 식품 가공업자의 추가적인 제조 또는 가공 없이 동물 사료로 유통되는 식품 부산물은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a-1) 동물 사료용 식품 부산물의 유지·운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장비의 유통 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청결하게 제조되어야 한다.
- a-2) 동물 사료용 식품 부산물은 쓰레기 등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a-3) 보관 도중 동물 사료용 식품 부산물을 정확하게 구분해 뒤야 한다.
- b) 동물 사료용 식품 부산물의 라벨에 일반명 또는 통상명을 기재해야 한다.
- c) 동물 사료용 식품 부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용 컨테이너(예, 드럼·통)와 벌크 차량은 동물 사료용 인간 식품 부산물을 오염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EU(유럽연합)

- 농식품부가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 업종의 신설을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EU의 관련 규정으로 일반식품법 규칙이 있음.
- 내용은 다음 사이트(<http://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6685> 120p~)에서 확인할 수 있음.<sup>38)</sup>

### 1) 이력추적(Traceability)

- 동물에서 인간에게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 식품과 사료 내 허용 한도를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의 검출 등은 유럽에서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EU 소비자의 사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EU에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식품 사업자 또는 당국이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채택입하고 있음. 이력추적제는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유용한 도구이자, 현재 EU 식품안전 정책의 기초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이력추적제는 EU의 일반식품법 규칙에 명기돼 있음.
- 일반식품법 규칙에선 이력추적(traceability)을 생산·제조·유통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소비되는 식품·사료·식용 동물과 물질을 추적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이력추적제는 EU 내에서 소비자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과 사료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임. EU 회원국 정부나 식품업체가 리스크 발견 즉시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서 매우 중요함. 이력추적제는 문제된 식품이나 사료를 회수하고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매 중단 등 식품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수입업자는 이력추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국가의 어떤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음.
- 회원국 간 식품과 사료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EU 내부시장에서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EU 회원국이 일반식품법 규칙상 공통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EU의 일반식품법 규칙은 2002년에 발효됐으며, 모든 식품과 사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력추적 수행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 내용임. 여기서 모든 식품과 사료 사업자인 푸드 체인(식품사슬)의 전(全) 단계, 즉 1차 생산(식용 동·식물)부터 식품과 사료의 제조·가공·유통까지의 모든 관련 종사자를 가리킴. 식품이나 사료의 물리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는 사람(예, 중개인)이나 자선단체도 포함될 수 있음.
- EU 내에서 모든 식품과 사료 사업자는 각자 적합한 이력추적시스템 운영을 통해 취급하는 제품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명확하게 인지한 뒤 관계 당국에 입·출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함. 제품의 특성이나 배송날짜 뿐만 아니라, 입·출고가 발생할 때마다 공급자와 소비자

38) 이주형 외,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상황 연구 (n.p.: 식품안전정보원, 2018.12)

의 명칭과 소재지도 문서로 만들어야 함. 제품의 용량이나 수량·배치 넘버(batch number)·가공 전후 여부 등 제품 상세설명 정보도 보관해야 함. 식품 푸드체인엔 1차 생산이나 수입부터 최종 판매까지 많은 단계가 있음. 각 단계마다, 식품과 사료 사업자, EU 회원국 관계 당국과 EU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 사업자 책임(Operators' responsibilities)

- EU는 사료 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EU 내 사료 사업자는 수입·생산·가공·제조·유통한 사료가 사료 안전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면 문제 되는 사료를 시장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즉각 시행하고, 이를 담당 당국에 알려야 함. 사료 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미달하는 사료의 배치(batch)·로트(lot)에 대해 자세한 검사를 실시한 뒤 안전하다고 판정된 것 외의 사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거해 폐기해야 함. 사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료 회수 사유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함.
- 사료의 포장·라벨링, 사료의 안전성 또는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료의 소매 또는 유통업자는 사료 안전 요구사항에 미달하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해 폐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사료 소매나 유통업자는 문제된 사료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생산자·가공업자·제조자·당국이 취한 수거 조치에 적극 협력해 사료 안전을 높이는 데 함께 참여해야 함.

## 3) 사료의 시판과 사용에 관한 법률(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feed, R.767/2009)

- EU의 '사료의 시판과 사용에 관한 법률'은 사료 원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사료를 유형에 따라 복합사료·완전배합사료·보조사료·특수 목적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사료 원료(feed materials)란 식물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신선한 제품으로, 동물의 영양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임. 복합사료(Compound feed)는 동물에 급여하기 위해 최소 2가지 이상의 사료 원료가 혼합된 사료임. 완전배합사료(Complete feed)는 동물에게 주식으로 급여해도 충분할 정도의 구성을 갖춘 사료임. 보조사료(Complementary feed)는 특정 물질의 함량이 높지만, 그 구성으로 인해 동물이 주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다른 사료와 함께 급여돼야 하는 사료임.

## 다. 중국

- 농식품부가 사료유통·보관업과 사료판매업 업종 신설을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중국의 관련 법규론 사료품질안전관리규범(2014) 제5장이 있음.

### 중국 사료품질안전관리법규

#### 제5장 제품 보관과 운송

제34조 기업은 반드시 제품창고 관리시스템을 설립해 입출고 기록을 기입하고 보존해야 한다.

- (1) 제품 창고 관리시스템은 창고 계획·적치 방식·적층 위치 확인·창고 재고·환경요건·병해충 방제·창고안전·입출고 기록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 (2) 입출고 기록은 제품명·규격·등급·생산 일자·입출고 수량과 날짜·재고 수량·보관인 이름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3) 서로 다른 제품 사이에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4) 부적합 제품·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35조 기업은 제품을 적재하기 전에 운송 차량의 안전·위생 상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6조 기업이 화물차를 사용해 제품을 운송할 때는 반드시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차량에 제품 라벨과 품질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제품을 적재할 때는 반드시 화물 탱크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상품 판매 대장을 기입하고 보존해야 한다. 판매 대장엔 반드시 제품의 명칭·수량·생산일·생산비·품질검사 정보·구매자 이름과 연락처·판매 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 대장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라. 일본

### 1) 반려동물 사료 도·소매업 구분

- 일본에서 반려동물용 사료 유통업은 대분류에서 ‘도소매업’, 중분류에서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는 소매업’, 소분류에서 ‘그 외 기타 소매업’, 세분류에서 ‘펫 스토어’(pet store)로 분류돼 있음.

<표 40> 일본 표준산업분류에서 반려동물용 사료 유통업의 업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 도소매업	[60]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는 소매업	[609] 그 외 기타 소매업	[6096] 펫 스토어

자료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 2) 반려동물사료 관련 통계

- 반려동물용 사료는 가계의 일상용품의 하나로 분류돼 가정용품 판매점(Home improvement stores)과 드럭스토어(drugstore)의 판매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만 별도로 구분해 조사하진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려동물관련용품’의 범주에서 조사하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는 가정용품 판매점의 판매제품 중 ‘반려동물·반려동물용품’, 드럭스토어의 판매제품에선 ‘가정용품, 일상용품, 반려동물용품’에 포함돼 있음.

## 2. 한국

○ 농식품부가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판매업 업종 신설을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국내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과 수산물 유통법 등이 있음.

○ 수산물 유통법에 포함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산물 유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에 포함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4.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6. 제21조 제6호목의 식품냉동·냉장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8. 2009. 11. 26., 2010. 11. 19., 2012. 7. 19., 2013. 3. 23., 2013. 10. 16.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2.>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 41> 하치장 리스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련시설 리스트 (2019.10)

구분	시도	시군구	개소수	번호	업체명	하치장명	영업상태
1	서울	강남구	1	1	제일사료	제일사료(주)서울지점	사무실
2	부산	사상구	1	1	고려산업	부산공장	사료공장
3	대구	달서구	2	1	케이씨피드	대구사무소	사무실
4	대구	달서구		2	고려산업	대구공장	사료공장
5	인천	중구	4	1	제일사료	제일사료(주)인천공장	사료공장
6	인천	동구		2	대주산업	인천공장	사료공장
7	인천	중구		3	대한사료	본사(인천공장)	사료공장
8	인천	중구		4	대한제당	인천영업소	사료공장
9	광주	서구	4	1	고려산업	광주영업소	정상
10	광주	광산구		2	대한제당	광주영업소	정상
11	광주	광산구		3	에이티면역	광주하치장	정상
12	광주	남구		4	광주축협사료	광주하치장	정상
13	대전	대덕구	2	1	제일사료	제일사료주식회사	사료공장
14	대전	유성구		2	제일사료	제일사료(주)하림중앙연	사무실

						구소	
15	울산	남구	1	1	대한제당	울산영업소	사무실
16	경기	이천	29	1	선진	이천공장	사료공장
17	경기	포천		2	선진	포천센터	정상
18	경기	포천		3	CJ제일제당	포천센터	폐쇄
19	경기	안성		4	CJ제일제당	안성센터	정상
20	경기	안성		5	동원팜스	안성하치장	정상
21	경기	포천		6	팜스토리	포천물류센터	정상
22	경기	여주		7	서울사료	여주하치장	정상
23	경기	포천		8	한일사료	포천하치장	정상
24	경기	포천		9	제일사료	제일사료(주)포천물류	정상
25	경기	양주		10	제일사료	제일사료(주)양주물류	정상
26	경기	이천		11	제일사료	제일사료(주)덕평물류	정상
27	경기	포천		12	이지바이오	포천하치장	정상
28	경기	양주		13	대한사료	경인영업소	정상
29	경기	안성		14	대한사료	안성영업소	정상
30	경기	양주		15	대한제당	양주영업소	정상
31	경기	이천		16	대한제당	장호원영업소	정상
32	경기	양주		17	에이티면역	동두천하치장	정상
33	경기	포천		18	피그넷코리아/피그 넷엔에스	포천하치장	정상
34	경기	포천		19	카길애그리퓨리나	포천 직매장	정상
35	경기	김포		20	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공장 김포 하치장	폐쇄
36	경기	파주		21	사조동아원	파주물류센터	사무실
37	경기	파주		22	사조동아원	파주하치장	정상
38	경기	포천		23	우성사료	(주)우성사료 서울영업소	사무실
39	경기	김포		24	우성사료	(주)우성사료 김포영업소	정상
40	경기	포천		25	우성사료	서울하치장	정상
41	경기	김포		26	우성사료	김포하치장	정상
42	경기	포천		27	팜스코	포천	정상
43	경기	시흥		28	미래부연합사료	시흥하치장	정상
44	경기	파주		29	미래부연합사료	파주하치장	정상
45	강원	원주	9	1	CJ제일제당	원주센터	정상
46	강원	원주		2	카길애그리퓨리나	원주 직매장	판매장
47	강원	원주		3	우성사료	(주)우성사료 경원영업소	정상
48	강원	원주		4	우성사료	경원하치장	중복
49	강원	횡성		5	미래부연합사료	횡성하치장	정상
50	강원	춘천		6	미래부연합사료	춘천하치장	정상
51	강원	양양		7	미래부연합사료	주문진하치장	정상
52	강원	춘천		8	양주축협	춘천하치장	정상
53	강원	춘천		9	안산연합사료	하치장	정상
54	충북	청주	3	1	카길애그리퓨리나	뉴트리나 청주사업소 하치장	정상
55	충북	증평		2	안양연합사료	증부하치장	정상
56	충북	청원		3	서울축협사료	내수하치장	정상
57	충남	예산	35	1	선진	덕산센터	정상
58	충남	홍성		2	CJ제일제당	홍성센터	정상

59	충남	홍성		3	동원팜스	홍성하치장	정상
60	충남	홍성		4	팜스토리	홍성물류센터	정상
61	충남	홍성		5	서울사료	홍성하치장	중복
62	충남	홍성		6	홍성사료	홍성하치장	중복
63	충남	홍성		7	제일사료	제일사료(주)홍성물류	정상
64	충남	예산		8	이지팜스	홍성센터	미운영
65	충남	홍성		9	이지바이오	홍성(구항)하치장	중복
66	충남	홍성		10	이지바이오	홍성(금마)하치장	정상
67	충남	홍성		11	대주산업	홍성하치장	정상
68	충남	서천		12	대주산업	장항공장	사료공장
69	충남	천안		13	대한사료	천안공장	정상
70	충남	홍성		14	대한사료	홍성영업소	정상
71	충남	홍성		15	대한제당	홍성영업소	정상
72	충남	홍성		16	에이티면역	홍성하치장	정상
73	충남	홍성		17	피그넷코리아/피그 넷엔에스	홍성하치장	정상
74	충남	홍성		18	카길애그리퓨리나	홍성 직매장	정상
75	충남	홍성		19	우성사료	(주)우성사료 홍성영업소	정상
76	충남	홍성		20	우성사료	홍성하치장	중복
77	충남	예산		21	팜스코	충청	정상
78	충남	서산		22	안양연합사료	서산하치장	정상
79	충남	보령		23	보령축협 배합사료공장	천북판매소	정상
80	충남	아산		24	미래부연합사료	아산하치장	정상
81	충남	부여		25	미래부연합사료	부여물류센터	정상
82	충남	보령		26	디에스피드	충남서부 물류센터	정상
83	충남	홍성		27	홍성축협	서부사료판매장(대리점 )	판매장
84	충남	홍성		28	홍성축협	결성판매장(결성대리점 )	판매장
85	충남	홍성		29	홍성축협	광천사료판매장(대리점 )	판매장
86	충남	홍성		30	홍성축협	금마배합사료판매장(대 리점)	판매장
87	충남	홍성		31	홍성축협	홍동사료판매장(대리점 )	판매장
88	충남	홍성		32	홍성축협	장곡사료판매장(대리점 )	판매장
89	충남	홍성		33	홍성축협	홍북배합사료판매장	판매장
90	충남	홍성		34	홍성축협	은하사료판매장(대리점 )	판매장
91	충남	부여		35	서울축협사료	부여하치장	정상
92	전북	군산	20	1	선진	군산공장	사료공장
93	전북	군산		2	참프레 군산공장	대성케미컬	폐업
94	전북	군산		3	참프레 군산공장	대운환경	폐업
95	전북	군산		4	참프레 군산공장	도담종합사료	판매장
96	전북	익산		5	참프레 군산공장	오산사료 판매소	판매장
97	전북	익산		6	참프레 군산공장	화성사료	판매장

98	전북	익산		7	참프레 군산공장	화성사료(김완수)	폐업
99	전북	전주		8	참프레 군산공장	화성사료 전주대리점	판매장
100	전북	익산		9	제일사료	제일사료(주)익산공장	사료공장
101	전북	전주		10	이지팜스	전주센터	정상
102	전북	정읍		11	이지바이오	정읍하치장	사료공장
103	전북	김제		12	이지바이오	김제하치장	사료공장
104	전북	전주		13	대한사료	전주공장	사료공장
105	전북	김제		14	대한제당	김제영업소	정상
106	전북	김제		15	에이티면역	김제하치장	정상
107	전북	김제		16	피그넷코리아/피그 넷엔에스	김제하치장	중복
108	전북	부안		17	카길애그리퓨리나	퓨리나 전북 서부 특약점 하치장	판매장
109	전북	정읍		18	카길애그리퓨리나	뉴트리나 정읍사업소 하치장	정상
110	전북	김제		19	사조동아원	김제물류센터	정상
111	전북	남원		20	팜스코	남원	정상
112	전남	나주	19	1	선진	나주센터	정상
113	전남	나주		2	CJ제일제당	나주센터	정상
114	전남	나주		3	동원팜스	나주하치장	정상
115	전남	나주		4	친하제일, 카길애그리퓨리나	나주하치장	정상
116	전남	나주		5	현대사료	전남하치장	정상
117	전남	장성		6	제일사료	제일사료(주)장성물류	정상
118	전남	함평		7	사조바이오피드	사조동아원물류센터	사료공장
119	전남	나주		8	이지팜스	나주센터	정상
120	전남	나주		9	이지바이오	나주하치장	중복
121	전남	나주		10	대주산업	나주하치장	정상
122	전남	나주		11	대한사료	광주영업소	정상
123	전남	나주		12	에이티면역	나주하치장	정상
124	전남	나주		13	피그넷코리아/피그 넷엔에스	조이피그	정상
125	전남	장흥		14	카길애그리퓨리나	장흥 직매장	판매장
126	전남	영광		15	카길애그리퓨리나	뉴트리나 함평사업소 하치장	정상
127	전남	함평		16	사조동아원	함평물류센터	사료공장
128	전남	나주		17	우성사료	나주하치장	정상
129	전남	나주		18	팜스코	나주	정상
130	전남	순천		19	광주축협사료	순천물류	정상
131	경북	안동	26	1	선진	안동센터	정상
132	경북	영천		2	선진	영천센터	정상
133	경북	경산		3	CJ제일제당	경산센터	정상
134	경북	안동		4	CJ제일제당	안동센터	정상
135	경북	경주		5	팜스토리	경주물류센터	정상
136	경북	영주		6	팜스토리	영주물류센터	정상
137	경북	경산		7	제일사료	제일사료(주)경산물류	정상
138	경북	상주		8	제일사료	제일사료(주)상주물류	정상
139	경북	김천		9	케이씨피드	김천사무소	미운영
140	경북	고령		10	이지팜스	고령센터	정상
141	경북	경산		11	이지바이오	경산하치장	미운영

142	경북	경주		12	이지바이오	경주하치장	중복
143	경북	경주		13	고려산업	경주영업소	정상
144	경북	영주		14	고려산업	영주영업소	정상
145	경북	경산		15	대한사료	대구영업소	정상
146	경북	군위		16	대한제당	군위영업소	정상
147	경북	칠곡		17	피그넷코리아/피그넷엔에스	칠곡하치장	미운영
148	경북	칠곡		18	카길애그리퓨리나	칠곡 직매장	정상
149	경북	영주		19	카길애그리퓨리나	뉴트리나 영주사업소 하치장	정상
150	경북	안동		20	카길애그리퓨리나	뉴트리나 안동사업소 하치장	정상
151	경북	군위		21	카길애그리퓨리나	칠곡 직매장 군위 하치장	정상
152	경북	칠곡		22	한답	(주)한답 왜관물류센터	폐업
153	경북	안동		23	우성사료	안동하치장	정상
154	경북	영천		24	팜스코	영천	미운영
155	경북	상주		25	서부사료	상주하치장(계약)	정상
156	경북	상주		26	양주축협	상주하치장	정상
157	경남	함안	18	1	선진	함안센터	정상
158	경남	창녕		2	CJ제일제당	창녕센터	정상
159	경남	진주		3	동원팜스	진주하치장	정상
160	경남	사천		4	팜스토리	서경물류센터	정상
161	경남	함안		5	제일사료	제일사료(주)함안공장	사료공장
162	경남	거창		6	케이씨피드	거창사무소	미운영
163	경남	함안		7	케이씨피드	함안사무소	미운영
164	경남	창녕		8	고려산업	창녕공장	사료공장
165	경남	함안		9	고려산업	서부영업소	정상
166	경남	창원		10	대한사료	창원공장	사료공장
167	경남	진주		11	대한제당(무지개사료)	진주영업소	정상
168	경남	진주		12	에이티면역	진주하치장	정상
169	경남	사천		13	카길애그리퓨리나	뉴트리나 사천사업소 하치장	정상
170	경남	진주		14	우성사료	경남하치장	정상
171	경남	진주		15	서부사료	진주하치장(계약)	정상
172	경남	합천		16	합천축협 배합사료공장	하치장	정상
173	경남	함안		17	안산연합사료	하치장	정상
174	경남	합천		18	부경양돈	서부하치장	정상
175	제주	제주	7	1	CJ제일제당	제주센터	정상
176	제주	제주		2	팜스토리	제주물류센터	정상
177	제주	제주		3	현대사료	제주하치장	정상
178	제주	제주		4	고려산업	제주영업소	정상
179	제주	제주		5	피그넷코리아/피그넷엔에스	제주하치장	정상
180	제주	제주		6	카길애그리퓨리나	제주 직매장	판매장
181	제주	제주		7	카길애그리퓨리나	제주 직매장 상대리 하치장	정상
	합계		181				

## 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표 42>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보관업과 유통·보관업 신설 관련 의견

사료 관련 협회명	찬/반	의견
한국사료협회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외의 유통·보관업자는 사료 물류 시설(하치장·물류센터 등)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킴. 현재 대부분의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수입한 사료를 단순 보관하고 있음. 사료 물류시설은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관리 범주 안에 있는 시설임.</li> <li>② 가축 방역 차원에서 유통·보관시설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료관리법에 유통·보관업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li> </ul>
한국단미사료협회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료제조업자·사료수입업자가 유통·보관을 거의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유통·보관업 업종 신설 사유가 부족한 상태임.</li> </ul>
한국펫사료협회	찬 유통업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려동물용 사료는 일반 소비재이고 식품과 같이 위생·위해관리가 제조·수입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품임.</li> <li>② 위해관리의 중요 요소인 이력 추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업 등록에 반려동물 사료유통업을 신설해 최소한의 제품 추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li> <li>③ 보관업 신설은 반대함. 반려동물용 사료의 보관은 보세창고 보관, 자체 물류창고 보관, 제3자 물류창고 보관, 임대창고 보관 등 규모·형태·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 실행 파악이 쉽지 않음.</li> <li>④ 보관업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광의적임.</li> </ul>
한국양어사료협회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양어용 사료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선 사료의 유통·보관업에 대한 관리·지원이 필요함.</li> <li>② 현재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폭리를 취하거나 보관 관리상 사고와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li> <li>③ 유통·보관업 신설 등 인위적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보다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li> </ul>

<표 43> 사료 판매업 신설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의 찬·반 의견 차이

사료 관련 협회명	찬/반	의견
한국사료협회	찬	① 현행 사료관리법상 관리(등록과 처벌) 대상인 제조업자·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② 지금까지 판매업자의 법 위반 시 제조·수입업자에게 책임이 대신 부과됐으나 사료관리법에 판매업이 신설되면 안전사고 책임의 명확화 부분의 개선이 가능해짐. ③ 다만, 그동안 사료 판매업자의 위반이 문제가 된 부문은 대부분 반려동물용 사료임. 사료관리법 분법(分法) 시 양축용 판매업자(사료 대리점 등)의 관리가 등록관리까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문임. ④ 사료 대리점은 대부분 직영 또는 사료공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사료 판매의 65~70%를 사료공장(제조업자)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⑤ 판매업 등록 시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됨.
한국단미사료협회	일부 찬성	① 마트·동물병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경우 판매업 신설이 필요함.
한국펫사료협회	반	① 반려동물용 사료는 소비재로, 현재 모든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업체 숫자가 10만 곳을 상회함. ② 판매업을 신설해 등록 관리하면 국내 모든 도·소매 업체가 등록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③ 유통기한과 제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사료관리법에 이미 규정돼 있음. ④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과 품질 관리 규정이 필요하면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면 됨.
한국양어사료협회	찬	① 인체 또는 동물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부패 또는 양어용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사료 원료를 이용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선 사료 판매업 신설이 필요함.

## 나.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 설치 방향

### 1) 사료관리법의 연혁

#### 가) 1963년 제정 사료관리법

-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조절, 가격의 안정과 품질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63년8월14일 법률 제1393호로 제정, 1963년11월13일 발효됨.
- 이후 농림부장관은 수급조절용으로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절용 사료를 양축용 이외로 매도하지 못하게 함.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절용 사료 등의 매도방법을 정하거나 매도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료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배합사료공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도록 함. 농림부장관은 배합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해 종류별로 사료성분량의 최소와 최대의 한도를 정해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사료의 제조업자는 그 종류별의 사료성분량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게 함.
- 사료의 제조업자는 제조된 배합사료에 등록된 성분량 보증표를 붙이도록 하고 그 성분량 보증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 나) 1974년 일부 개정 사료관리법

- 사료 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료매매업자의 폭리 장지를 위한 사료의 매점·매석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기피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배합사료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원료와 그 부산물과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매도방법과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판매를 목적으로 배합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시설을 갖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다) 1981년 전부개정 사료관리법

-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료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양산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사료의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성 확보와 품질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료대책위원회를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사료품질관리위원회로 변경 설치함. 농수산부 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과 품질개선을 위해 사료의 종류를 지정하여 공정규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사료의 정의에 현행 가축용 사료 이외에 양어용 기타 동물용을 추가·규정하며, 사료에 보조사료를 추가함. 사료판매업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라) 1985년 일부 개정 사료관리법

- 수입 사료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게 하고 사료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의 품질을 검사하도록 하여, 사료 전반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됨.
- 사료를 수입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분등록을 하도록 함. 사료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성분검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타인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마) 1996년 일부개정 사료관리법

- 사료제조업(배합사료·보조사료)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료판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경제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기존 농림수산부장관이 사료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사료에 대해 그 판매방법과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그중 판매가격 지정제도를 폐지함.

#### 바) 1999년 일부 개정 사료관리법

- 사료조절단체의 지정과 수입사료 등의 판매방법 지정제도 등을 폐지함. 보조사료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사) 2001년 전부 개정 사료관리법

- 제조·수입과 판매가 금지되는 사료에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 기준 이상 잔류하는 사료 등을 추가하고, 인체·동물의 질병 원인이 우려되는 동물 부산물 등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등의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보다 안전한 사료가 공급되도록 함.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 중에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의 첨가와 혼합제한 제도를 도입함.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사료의 제조와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별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정한 경우엔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사료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2005년1월1일부터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사료공장 중점관리기준 고시')을 시행해 사료공장에 대한 HACCP 인증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농림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첨가·혼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보

급해야 한다고 추가 개정함. 2002년1월19일 사료공정서를 제정·고시했으며, 2014년4월29일 사료규격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로 개정함.

아) 2009년 전부 개정 사료관리법

-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이 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의 사료제조업 등록 요건을 완화함.

자) 2018년 일부 개정 사료관리법

-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했음을 표시하도록 함.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2) 국내 유사 법령

### 가)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 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6. 제21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7. 제21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 11. 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① 법 제3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 11. 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이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 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7조 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 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 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 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 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 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 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18. 12. 11.>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2018. 12. 11.>

[전문개정 2010. 5. 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 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제12조의7 제2항 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삭제 <2016. 1. 22.>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제12조의7 제2항 제4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슈퍼마켓 등 점포 경영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4)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업(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슈퍼마켓 등 점포 경영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업(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종합 검토 의견

#### 가. 유통업·보관업·판매업 관련 법령

##### 1)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의 정의

- 현행 사료관리법에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을 추가하기 위해선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의 정의가 내려져야 함. 법적 정의를 내릴 때 참고할만한 법령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임. 식품위생법엔 식품 유통·보관업과 식품 판매업에 대한 정의 등 별도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음. 다만 제2조에서 ‘영업’과 ‘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3조에선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료 판매업에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을 활용해 사료 판매업자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엔 각종 영업이 정의돼 있음. 식품운반업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됨.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 이는 사료제조업체가 양축용 사료를 생산한 뒤 이를 축산 농가 등에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음. 식품소분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됨. 이를 사료소분업으로 바꾸면 현재 양축용 사료의 유통 경로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품판매업 중에선 유통전문판매업이 사료판매업을 신설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음. 식품위생법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돼 있음. 이는 사료유통업이나 사료판매업과는 차이가 있어 식품위생법상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그대로 사료판매업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음. 사료관리법에 사료 유통·보관법이나 사료 판매업을 신설할 때 활용할만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 냉장·냉동업은 모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으로 규정돼 있음.

-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의 정의와 규제 등을 사료관리법에 담고자 할 때 더 유용한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규정된 축산물보관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운반업 등의 정의를 활용할 수 있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등록 대상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으로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규정하고 있음. 신고에 관한 권한을 가진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사료관리법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조에 해당하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 축산물보관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엔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금지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런 입법유형은 수범자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해당 법령에서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의 효과로 제한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됨. 이런 허가는 전형적인 허가보다 수범자에게 광범위한 영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의 허가(이른바 부진정 원칙허용 허가제도)로 이해됨.<sup>39)</sup>

####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2015. 2. 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1.]

39) 한국법제연구원,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도출을 위한 연구, 2012. 7., 제93번.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6. 2. 3.>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 15.> [전문개정 2014. 5. 21.]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 2. 3.>

②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9. 1. 15.>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19. 1. 15.>

⑧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5. 5. 18. 2018. 6. 12., 2019. 1. 1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8. 2012. 6. 29., 2012. 7. 10., 2014. 11. 11., 2017. 1. 31.>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2. 삭제 <2016. 1. 22.>

###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으로 나뉘어 규제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법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건강기능식품법 제5조, 제6조).

라)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② 삭제 <1999. 3. 31.>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8. 12. 31.>



- 비료관리법은 생산·판매, 무상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2) 사료관리법의 업종 신설과 그에 따른 규제 필요성

### 가) 시설

- 사료관리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1년3월24일 전부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선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함. 사료판매업에 대해선 신고 의무를 규정함.
- 그 이후, 1994년12월31일 일부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서 사료제조업(배합사료와 보조사료)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료판매업에 대해 신고제를 폐지함. 1999년3월31일 일부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선 제조업의 등록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변경함. 2008년3월21일 전부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선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의 사료제조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없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현행 사료관리법에선 제조업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조업에 대한 허가, 사료판매업에 대한 신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사료관리법의 신설 대상으로 고려되는 업종은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으로, 사료관리법 연혁 상한 번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이거나 과거 폐지된 제도를 부활하는 업종임. 세 업종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신설 업종에 대한 행정규제로 얻는 법률상·경제적 이익과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사료의 보관·유통·판매 행위 제약의 정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형량해야 할 것임.
- 사료의 유형(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에 따라 제조와 보관·유통의 실태가 상이하므로, 각 사료 유형을 기준으로 유통·보관업과 판매업의 신설 필요성 여부를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 행정에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업종 신설과 그에 따른 행정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완화된 규제 형식을 취할 필요도 있음. 업종 신설과 그에 따른 행정규제 필요성뿐 아니라 규제 수단의 선택도 함께 검토해야 함.

### 나) 각 사료 유형에 따른 업종 신설

① 양축용 사료

- 양축용 배합사료의 경우 축산 농가는 주로 사료업체와 직거래(65.6%)를 하거나 대리점(16.0%)을 통해 사료를 구매하고 있음.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 또는 일부 도·소매점을 통한 거래도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OEM(주문) 사료 구입을 통한 유통도 이뤄지고 있음. 단미사료의 경우 농후사료는 대부분 배합사료 공장을 거쳐 배합사료의 형태로 농가에 직접 공급되거나, TMR(Total Mixed Ration, 완전혼합사료) 사료공장으로 공급돼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됨.
- 양축용 사료의 제조와 유통과정에 비춰, 사료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사료를 보관했다가 이를 판매하는 구조(직거래·대리점·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로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료 보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관리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고 특별히 ‘사료보관업’을 신설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양축용 사료는 대부분 직거래 또는 대리점 방식을 통해 사료제조업체와 축산 농가가 직접 거래하고 있음. 양축용 사료 판매는 대개 사료공장의 제조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사료판매업’을 신설할 필요성은 없음. 사료판매업을 신설하면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과중하게 돼 현실적인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봄.<sup>40)</sup>
- 그러나 사료는 제조 과정에서뿐 아니라 보관, 유통·판매되는 과정에서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음. 사료하치장(사료 차량)에서의 가축 질병 감염, 보관·판매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료 오염의 위험이 있음. 사료 유통·보관업 또는 사료 판매업에 대한 규정과 행정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나 준수사항 등 법령상 의무를 규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과 관련해선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사료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각 사료 유형별 시설기준). 사료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가품질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을 시설을 갖추고 사료공정에 적합한지,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사료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에 고려해 봤을 때, 사료제조업자는 주로 사료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제조 과정에서의 사료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율을 받게 됨.
-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항에선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별로 제조시설과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제정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사료공장’은 사료관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정의하는 등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관리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임. 사료공장 외 사료의 유통·보관, 판매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도 ‘사료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출 의무(제17조 제1항 제3호)를 규정하고 있음. 사료의 제조(사료공장)에서뿐 아니라 사료의 유통·보관과 판매 과정에서도 사료의 오염, 가축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 유통·보관업 또는 사료 판매업에 대한 규정과

40) 한국사료협회,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 의견

- 행정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관련 방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
- 양축용 사료가 주로 직거래 또는 대리점 형태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 이후 유통·보관, 판매 과정에서 잘못된 보관이 원인이 돼 곰팡이 등 세균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등 안전 사고가 생기고, 이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런 문제는 제조업에 대한 등록 요건과 의무 규정만으로 통제할 수 없음. 사료에서 오염이 발생한 경우 어느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추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생산·판매단계에 따라 ‘사료제조업’·‘사료유통·보관업’·‘사료판매업’으로 나눠 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료하차장(사료 차량)에서의 사료하자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사료보관업을 신설을 검토하되 대부분의 직매장이 사료제조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사료보관업 신설 대신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일본에서도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에서 사료보관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판매 사업장 또는 보관 시설에 관한 신고를 할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신고 사본을 당해 제조 사업장 또는 판매 사업장 또는 보관 시설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의 축산 담당 부서에 보낼 것”만 명시하고 있음. 이는 사료 보관시설에 대한 신고·운영의 주체로 사료보관업자 아닌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를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함. 우리나라 사료관리법과 다른 점은 사료 판매업자를 사료 보관시설에 대한 신고·운영 주체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 일본에선 사료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사료 제조업자에게 사료 보관시설에서 ‘분쇄기를 이용한 분쇄’·‘가열’·‘사료첨가제의 소분’ 등을 하는 경우 이런 제조 행위를 담당 도도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사료 보관시설에서 수행하는 행위가 제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면 도도부현·독립 행정법인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농림 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에 상의하도록 하고 있음. 보관 시설에서 이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혼입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일본의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엔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료의 사용 또는 당해 사료첨가제를 포함한 사료의 사용으로 인해 유해 축산물이 생산되거나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해 축산물의 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필요한 한도에서 농림수산성 장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판매업체에 대하여 당해 사료 또는 당해 사료첨가제의 폐기 또는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 같은 법 제 55조엔 “농림수산성 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또는 사료나 사료첨가제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로부터 그 업무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는 등 사료 운송업자와 창고업자(보관업자)에 대한 규율도 하고 있음.
  - 같은 법 제 56조엔 “농림수산성 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또는 사료나 사료 첨가제 운송업자, 운송 취급업자 또는 창고업자의 사업장, 창고, 선박 차량 기타 사료나 사료 첨가제의 제조, 수입, 판매, 운송 또는 보관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해 사료나 사료 첨가제, 이런 원료 또는 재료 또는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또는 이들 재료를 시험을 위해 필요한 최소량을 무상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 도도부현의 지사는 판매업자의 사업장 창고 기타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의 판매 업무와 관계된 장소에 출입해 업무장부를 요구하고, 서류 등을 검사하며,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사료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만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음.
- 일본의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도 반려동물용 사료 보관업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11조엔 “농림수산업 장관 또는 환경성 장관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 또는 반려동물용 사료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음. 같은 법 12조엔 반려동물용 사료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의 사업장, 창고, 선박, 차량 기타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운송 또는 보관 업무에 관계 장소에 출입해 원재료, 업무장부, 관계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반려동물 사료 또는 그 원재료를 수거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가격을 내야 함.
- EU의 일반식품법의 ‘식품 및 사료 법 원칙에 관한 규정’(Regulation 178/2002)엔 사료의 생산, 제조, 가공, 저장, 운송 또는 유통을 담당하는 모든 사업을 ‘사료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엔 사료의 모든 생산, 가공 또는 저장이 포함됨. ‘사료 위생 요건을 규정하는 규정’(Regulation 183/2005)엔 당국의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한 ‘사료사업’을 명기함. EU에서 ‘사료 사업’(feed business)에 포함되는 업종은 사료제조업체, 사료수입업체(농부로부터 직접 사료 원료를 구매하는 상인 포함), 식료 공급망(feed chain) 사료원료를 판매하는 식품 제조업체, 사료를 배달하거나 선적하는 운송업체, 축산 농가 등임. ‘사료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당국의 승인 또는 등록이 면제되는 업종은 사료를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사람(persons producing or storing feed), 자가소비를 위해 가축에게 사료를 주는 것, 식량 생산을 위해 사육되지 않는 동물에게 사료를 주는 것, 생산자가 지역 농장에 ‘소량’의 일차 제품을 지역 수준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 반려동물용 사료의 소매(the retailing of pet food) 등임. EU에서도 사료 보관업을 ‘사료사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 일본과 EU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사료제조업자가 운영 중인 직매장을 별도의 사료보관업으로 규정하고 등록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변경하고 사료제조업·사료수입업자·사료판매업자(신설되는 경우)의 보관장소나 보관업무에 대한 의무 조항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양축용 사료의 경우 주로 직거래·대리점의 형태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해 사료유통업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판매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② 반려동물용 사료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는 크게 반려동물용 사료의 목적과 유통구조에 있어 기존 양축용 사료와 차이가 있음.
- 사료는 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반려동물용 사료는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에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소비자의 반려동물용 사료 재료에

대한 관심과 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게 형성돼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는 유통전문점(펫샵·동물병원·전문 인터넷 쇼핑몰)과 종합유통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을 거쳐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일반 소비재(마케팅)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 반려동물용 사료 유통·보관업과 관련해 살펴보면 반려동물용 사료의 보관은 보세창고 보관·자체 물류창고 보관·제3자 물류창고 보관·임대창고 보관 등과 같이 규모·형태와 방식이 다양해 실행 파악이 어려움. 이런 이유로 ‘보관’이란 용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음.<sup>41)</sup>
- 반려동물용 사료판매업과 관련해 반려동물의 사료는 매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판매업체의 수에 있어서도 10만 곳을 상회하므로 반려동물용 사료 판매업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 도·소매업체가 반려동물용 사료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음.<sup>42)</sup>
- 반려동물용 사료는 사람이 먹는 식품과 유사한 수준의 위생과 품질 수준을 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보관과 판매 과정에서 사료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습식사료의 경우 변질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냉장 시설을 갖추는 등 안전한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있지만, 사료의 특성에 맞는 유통·보관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음. 반려동물용 사료는 소비재의 특성이 강해 판매 상품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표시사항) 제공이 중요함.
- 반려동물용 사료의 경우 ‘사료유통업’과 ‘사료판매업’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반려동물용 사료는 사료하치장 보관과 무관하고 유통전문점과 종합유통점을 통한 유통단계에서 보관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료유통업의 신설과 규제로 사료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③ 수산동물용 사료

- 수산동물용 사료는 직거래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료 구매가 이뤄져 양축용 사료와 유통 경로가 유사함. 다만 양축용 사료보다 대리점 거래 방식의 비율(대리점 70%, 대리점 소속 판매점 20%)이 높다고 알려짐.
- 전국적으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버린 내장 등 생선 폐기물이 사료로 공급되는 사례가 많음. 가공되지 않은 생선 폐기물 사료(이하 ‘생사료’)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사료관리법에 의한 관련 규정은 부재해 사료관리법에 근거한 규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생사료는 수생동물의 질병 감염과 수질 오염원이 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양어용 사료에 있어 생사료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sup>43)</sup>
- 수산동물용 사료의 경우에도 직거래·대리점 형태로 유통되는데 제조 이후 유통·보관, 판매 과정에서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축용 사료와 유사하게 생산·판매단계에 따라 ‘사료제조업’·‘사료유통·보관업’·‘사료판매업’으로 나눠 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동물용 사료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사료로 인한 수생동물의 질병 감염과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수산동물용 ‘사료판매업’을 신설하고 수산동물용 사료제조업과 사료판매

41) 한국펫사료협회,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 의견.

42) 한국펫사료협회,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 의견.

43) 연합뉴스, 폐기물 사료로 키운 물고기 유통...소비자 식탁 비상, 2013. 3. 27.

업에 있어 수산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생사료 규제 등)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규제의 정도

#### 가) 허가·등록과 신고

##### ① 허가

- 강학상(講學上,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학자가 정의하는 이론상)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제해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함.<sup>44)</sup> 강학상 허가의 예로 영업허가·건축허가·어업허가·주류판매업 허가 등이 있음. 이에 대해 허가는 인간이 본래 가진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명령적 행위설,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창설해 준다고 보는 형성적 행위설, 양면성설(병존설)이 있음. 판례는 전통적인 명령적 행위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이나, 허가에 의해 법적 지위가 창설된다는 적극적 관점에서 형성적 행위의 성격도 갖는다(이때도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주는 특허와 구별됨).고 보는 것이 다수 학자의 견해임.
- 허가의 대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인의 권리는 헌법에 부여돼 있으나, 사인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지 않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sup>45)</sup>
- 강학상 허가는 실정법상으론 면허·인가·승인·등록 등 각종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 강학상 성질을 규명해야 함.

##### ② 등록<sup>46)</sup>

- ‘등록’은 실정법상 용어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어떤 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정해 일반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sup>47)</sup> 등록은 특정인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모든 사람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특정인의 신청 수리와 관련해 재량을 행사할 수 없고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 다만 등록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은 영업활동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부과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음.
- 특정인이 어떤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기관은 허가과 등록의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44) 박균성, 행정법 강의, 2011, 제236면; 정하중, 행정법 개론, 2017, 제194면.

45) 한국법제연구원,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도출을 위한 연구, 2012. 7.

46) 최병선, 경제적 규제완화 추진방식의 평가 - 인·허가 등록 및 신고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11-12면.

47) 최병선, 경제적 규제완화 추진방식의 평가 - 인·허가 등록 및 신고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수 있음. 허가의 경우 특징이 행하는 사업이 일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이 허가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등록의 경우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자라면 그의 사업 활동을 통해 일정한 공익 목적이 행정기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달성될 수 있다고 봄.

- 통상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첫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사업자의 영업활동 가운데 소비자 이익을 해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는 영업활동이 있으면 그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등록해 두게 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음. 둘째,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등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물론 사업자를 통한 소득세 원천징수 등 조세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임. 셋째, 다른 정책 목적의 추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등록은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개별 행정법상 등록이란 용어는 ‘장부에의 기록’과 무관한 경우가 더 많음. 개별 행정법에선 등록이란 용어를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등록의 형태를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식품위생법상의 등록과 같이 영업 규제와 관련된 등록, 둘째,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과 같이 물건 특히 준 부동산의 등록, 셋째,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등록과 같이 일반적인 자격과 관련된 등록, 넷째,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상의 등록과 같이 특수한 자격과 관련된 등록, 다섯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잡지 등록과 같이 일반 사회활동과 관련된 등록 등 5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음.<sup>48)</sup>
- 영업 관련 법률 중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골채취법·관광진흥법·낙시 관리 및 육성법(낙시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수산업법·전기통신사업법·폐기물관리법·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등 10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은 등록을 요구하는 영업을 규율하고 있음.

<표 44> 등록을 요구하는 영업

	대상법률	대상영업
1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법 제37조, 령 제26조의2)
2	게임산업법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법 중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법 제26조 제2항, 제3항 본문)
3	골채취법	골채취업 전부(법 제14조 제1항)
4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법 제4조)
5	낙시관리법	사유수면에서의 낙시터업(법 제16조)
6	도시가스사업법	천연가스수출입업(법 제10조의2 제1항)

48) 류광해, 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7	수산업법	어획물 운반업(법 제57조 제1항)
8	전기통신사업법	별정통신사업,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법 제21조, 제22조 제2항)
9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 제조업(법 제25조의 2)
10	체육시설법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③ 신고

-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sup>49)</sup> 자체 완성적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등). 행정 요건적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신고를 의미함(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수산업법 제47조에 의한 어업신고 등).
- 행정 요건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실질적 요건의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임. 실무상으론 허가제와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 ④ 규제의 정도

- 국내 입법 현실을 보면,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강학상 행정행위 이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용어로 규정돼 있지 않음.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가·인가·특허 등 행정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때 강학상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적용 법조항과 해당 법령의 전체적 체계를 종합해 행정행위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음.
- 허가과 등록은 모두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 어떤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그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적인 '진입규제(進入規制)'에 해당함.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는 등록을 통한 진입규제보다 규제의 정도에 있어 강하다고 할 수 있음.<sup>50)</sup> 따라서 규제완화 정책을 추구할 때에는 허가제보다 등록제를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등록제의 선택이 완화된 규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등록요건만으로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를 충분히 선별할 수 있어야 하되,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이 충분히 완화돼야 함. 완화된 규제 방식을 채택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49) 정하중, 행정법 개론, 2017, 제101면.

50) 최병선, 경제적 규제완화 추진방식의 평가 - 인·허가 등록 및 신고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12면.



- 완화된 규제 방식으로서 신고제를 고려할 수 있음. 강화상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제해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서 허가와의 구별됨.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심사하는데 있어 재량권의 행사 여부 및 정도,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추후 처분성, 처분의 위법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됨.

#### ⑤ 업종에 따른 규제 방식

-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에 관한 각 업종 시설을 전제로, 이에 대한 규제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허가·등록·신고)를 정해야 함. 신설 업종에 대한 영업규제의 방식으로 허가제 또는 완화된 규제 방식으로서 등록제·신고제를 고려할 수 있음.
-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제해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 다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본래 가진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일 뿐 아니라 허가에 의해 법적 지위가 창설되는 형성적 행위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는 강한 정도의 규제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등록은 강화상 허가와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허가와의 달리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자라면 그의 사업활동을 통해 일정한 공익 목적이 행정기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므로 허가보다 완화된 규제형식에 해당함. 등록요건만으로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를 충분히 선별할 수 있어야 하되,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이 충분히 완화되어야 함.
- 강화상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제해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서 허가와의 구별됨.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심사하는 데 있어 재량권의 행사 여부 및 정도,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추후 처분성, 처분의 위법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됨.
- 사료안전법과 유사한 국내 법령으로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법·비료관리법 등이 있음. 건강기능식품법의 경우 특수한 식품(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에 관한 것이므로 진입규제가 필요해 제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음. 비료관리법은 사료제조업에 대한 등록규정을 두고 있음. 비료는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데 비해 사료는 동물과 인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수 없음. 이에 국내 법령 중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법의 규제 대상·입법 목적 등에 있어 사료관리법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포함)은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현행 사료관리법에선 사료제조업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료판매업은 1981년 전부개정 사료관리법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음.
- 미국 FDA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인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근거해 제품 안전성, 생산 시설의 위생, 제품 라벨의 표시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식품안전현대화법(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과 동물용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반려동물 생산시설의 cGMP, 원료 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 수준을 규제하고 있음.<sup>51)52)</sup> 미국 농무부(USDA)의 경우 다양한 반려동물용 사료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용 사료 제조 시설의 등록,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그 대상에 반려동물용 사료도 포함하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가 신청하면 우수제조기준(GMP)에 맞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는지 확인한 후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이 프로그램 추진의 실무부처인 농무부 산하 농업마케팅서비스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은 FDA의 수의약품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와 협력하고 있음.<sup>53)</sup> 양축용 사료는 USDA가 규제하나, 반려동물용 사료와 식품은 FDA와 각 주 농업부가 규제하고 있음.<sup>54)55)</sup>
- 미국은 식품에 대해 식품 제조·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에 관한 등록(registration)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up>56)57)</sup> 미국 연방 차원에서 식품영업자에 적용되는 인허가 유형은 크게 모든 소비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시설 등록제와 특정 영업형태(산성식품과 저산성통조림식품 제조 또는 방사선 조사처리업)에 적용되는 등록제(registration) 또는 영업허가제(license)가 있음.<sup>58)</sup> 양축용·반려동물용 사료는 미국에서 식품에 준해 규제가 적용되므로, 사료의 제조·가공·포장 또는 보관시설을 등록해야 함.
- CFR 21(미국연방규정집 21편) 제117조 95항의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식품 부산물의 보유와 유통’에선 ‘동물 사료용 식품 부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 컨테이너(예, 드럼·통)와 벌크 차량은 동물 사료용 인간 식품 부산물을 오염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59)</sup>
- EU(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 규정 No 852/2004 제6조를 따르고 있음. 모든 식품영업자는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단계의 각 사업 시설에 대해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당국에 등록(registration)을 해야 함. 일부 식품영업에 대해선 허가(approval)가 요구됨. 유럽 규정 No 882/2004 제31조(식품과 사료의

51)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

52)

<https://www.fda.gov/food/conversations-experts-food-topics/what-expect-next-compliance-dates-fsma-preventive-controls-animal-foods-rule>

53) <https://www.ams.usda.gov/services/auditing/feed-verification>

54) 한국법제연구원,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2017., p.58, 59

55)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food-feeds/pet-food>

56)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 식품 영업 인허가 제도, 2018. 9. p.29

57)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50d&num=0&edition=prelim>

58)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 식품 영업 인허가 제도, 2018. 9. p.30

59)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17.95>

영업시설에 관한 등록·허가)는 시설의 ‘등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up>60)61)</sup>

- EU에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식품 사업자 또는 당국이 회수하기 위한 이력추적(traceability) 개념을 일반식품법 규칙에 도입하고 있음. 일반식품법 규칙에선 이력추적을 생산·제조·유통의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되는 모든 식품·사료·식용 동물과 물질을 추적하는 행위로 정의함. 모든 식품과 사료 사업자인 푸드체인(식품사슬)의 전 단계, 즉 1차 생산(식용 동·식물)부터 식품과 사료의 제조·가공·유통 관련 종사자를 가리킴.
- 독일의 동물사료에 관한 법률은 ‘식품, 생활용품과 사료법’(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임.<sup>62)</sup> 이 법은 EU의 식품에 관한 일반법규인 유럽 규정 No 178/2002호를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임. 식품 안전이 문제 되는 상황별·단계별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종합법적 성격을 가짐. 독일에서 식품안전 관리 감독은 LFGB에 따라 연방식품농업부(BMEL)에 일원화돼 있음.<sup>63)</sup> LFGB 제3장엔 동물사료의 유통과 관련한 금지사항(제17조), 보험(제17a조), 건강관련 광고금지(제20조), 기타 금지와 제한(제21조), 건강보호를 위한 전권 위임(제22조), 그 외 건강보호를 위한 전권 위임(제23조), 동물 건강보호와 동물 생산촉진을 위한 전권위임(제23a조), 요구사항의 보장(제24조), 행정관청의 협력(제25조) 등이 규정돼 있음.<sup>64)</sup>
- 미국·EU·독일에선 식품·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면서, 일반적인 식품·사료 관련 시설을 등록(registration)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생산 단계를 기준으로 식품과 사료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유통시설 등 전 단계에 걸쳐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해외 선진국에선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보관업이나 판매업 등에 대해 등록제를 택해 규율하고 있음.
- 사료제조업의 경우 진입 자체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 활동을 통해 일정한 공익 목적이 행정기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므로 등록사항으로 규정할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사료에 대해 식품과 유사한 수준의 규율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식품제조업과 동일하게 ‘등록’ 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것이 타당함.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업·집유업은 살아있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가축으로부터 산물을 얻는 특성이 있고 식품제조업보다 공중위생과 보건상 관리 필요성이 높아 허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임.
- 양축용·수산동물용·반려동물용 사료에서 사료유통·보관업, 사료판매업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나, ①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의 보관·유통과 판매의 경우 주로 사료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사료를 보관했다가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유통·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② 반려동물용 사료의 경우 사료의 유통·보관과 판매의 규모·형태·방식이 매우 다양해 이력 관리 수준의 규제가 유효·적절하

60)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 식품 영업 인허가 제도, 2018. 9. p.38-40

6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4R0882>

62) <https://www.gesetze-im-internet.de/lfgb/>

6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2017. 8., p.7

64) 한국법제연구원,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2017., p.83

다는 점, ③ 사료를 식품에 준하는 규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식품위생법상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포함)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런 점에 비춰, 사료유통·보관업과 사료판매업을 사료관리법에 추가하더라도 ‘신고’ 대상 업종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45> 사료 유통·보관업과 사료 판매업 신설에 대한 검토 후 제안

사료 유형	사료 유통·보관업	사료 판매업	기타
양축용	사료 유통은 불필요, 사료 보관업은 필요	사료 판매업 필요	
반려동물용 사료	보관업은 불필요, 사료유통업 필요	사료 판매업 필요	반려동물 사료 유통업, 반려동물 사료 판매업 별도 정의와 규율
수산동물용 사료	필요	필요	

## VII. 사료 표시제도 개선 방안

## VII. 사료 표시제도 개선 방안

### 1. 해외 사례

- 미국에서 사료 제품은 제품명·실제 중량·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사용한 원료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 돼 있음. 일부 주(州)에선 자체 규정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미국사료감시원협회(AAFCO,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규정을 근거로 라벨링을 하고 있음.

<표 46> AAFCO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

제품명	95% 법칙 : 재료명을 노출시키는 제품명일 경우(예, Beef for dogs), 그 성분은 물과 조미료(Condiments)를 제외한 총중량의 95% 이상을 함유해야 함. 그 외의 경우는 성분 함량에 따라 ① 25~95% ②3% 이하 ③향(flavor)으로 각각 구분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순중량	순중량을 기재함.
제조사 혹은 유통사 주소	도로명·도시·주·우편번호를 기재함. 제조된 곳의 주소(City directory)나 전화번호부(Telephone directory)에 등록돼 있으면 도로명까지 기재할 필요 없음. 다수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문의처 번호를 기입하고 있음.
원재료 목록	재료명은 중량 순으로 기입하며, 중량엔 재료 자체에 들어 있는 수분을 포함함.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이거나 식품첨가물 규정을 통과한 재료여야 함.
성분 분석표 (Guaranteed Analysis)	최소 조(Crude)단백질과 조지방, 최대 조섬유·수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여기서 '조'(Crude)란 조사료의 물리적 개선에 관여하는 물질을 가리킴. 예로, 건식과 습식 사료에서 수분 함량의 차이로 인해 성분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임.
영양적합성 문구 (Nutritional Adequacy Statement) (필요 시)	'Complete'·'Balanced'·'100% Nutritious' 등의 문구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음. AAFCO는 영양성분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반려동물용 스낵·간식·보충 사료(Supplement)는 영양적합성 문구를 생략할 수 있음
섭취 방법 (Feeding directions) (필요 시)	'Feed _ cups per _ pound of body weight daily'와 같은 문구를 기재함. 영양적합성 문구가 기재된 제품은 반드시 섭취방법을 함께 표기해야 함.
칼로리	사료 무게당 칼로리(kcal)로 표기함. 제조사는 'per cup'·'per can'을 기준으로 칼로리를 표기해야 함. 칼로리 표시는 1식을 기준으로 기재함.
기타 라벨문구 (Other label claims)	premium·Super premium·Gourmet·Nature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음.

자료 : FDA

- 21CFR 501에선 사료 제품의 용도, 순 중량, 제조업자 정보, 원료 정보 등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료 안전을 관리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반려동물용 사료의 성규규격 등에 관한 성령, 愛玩動物用飼料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일본은 시판 중인 사료에 대해 제품명·원료명·유통기한·제조업체 또는 판매자 상호와 주소·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 愛玩動物用飼料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표 47> 일본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

항목	비고
제품명	반려견용·반려묘용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
유통기한	영양가와 맛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 표시
원료명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원료 표시 착색료·보존제 등 첨가물은 사용목적과 첨가물명을 모두 표기
제조국가	제품을 확연히 바꾸는 제조공정이 마지막으로 완료된 국가명 표기
제조사·수입업자 등의 주소	사업자의 업종·명칭·주소

자료 :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 유럽의 사료 표시(라벨링)의 일반적 요구조건으로 사료의 종류·제조업자 정보·배치(batch) 번호·순중량·사료 첨가제 사항·구성 성분 등이 있음.

<표 48> EU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일반적 요구조건)

사료의 종류	사료 원료·완전배합사료·보조사료 등을 말함. 반려동물용 사료 중 완전배합사료와 보조사료는 보통 복합사료로 통칭됨.
제조업자 정보	사업자명과 주소 등
제품의 배치(batch) 번호	-
순중량	고체는 질량으로 표기함. 액체는 질량 또는 부피로 표기함.
사료 첨가제 사항	R.767/2009 부속서 VI 및 VII 참고
구성 성분	아래 표에 제시

주: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R.767/2009)

<표 49> EU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구성성분 표기)

사료의 종류	구성성분	대상 종
완전 배합사료	조단백질	고양이·개와 모피동물
	조섬유	고양이·개와 모피동물
	조지방	고양이·개와 모피동물
	조회분	고양이·개와 모피동물
미네랄 보조사료	칼슘	모든 종
	나트륨	모든 종
	인	모든 종
기타 보조사료	조단백질	고양이·개와 모피동물
	조섬유	고양이·개와 모피동물
	조지방	고양이·개와 모피동물
	조회분	고양이·개와 모피동물

주: 사료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법률(R.767/2009)



## 2. 사료 표시의 주요 내용

<표 50> 한국의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규정

표시면	항목	비고
주 표시면	① 성분등록번호	-
	② 사료의 명칭과 형태	‘성장단계+동물명(혹은 동물종류)’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전체 성장단계에 모두 사용하는 사료 제품에 대해선 ‘성장단계’의 생략이 가능함.
	③ 등록성분량	백분율(%)로 표시하며 최저량 ‘이상’, 최대량 ‘이하’를 표시함.
	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	모든 원료의 명칭을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함. 함량이 2% 미만인 원료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음.
	⑤ 사료의 용도	‘애완동물용’·‘성장단계+동물명’ 등으로 표기함.
	⑥ 실제 중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개수로 표시함.
	⑦ 제조연월일·유통기간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시함.
기타 표시면	① 주의사항	-
	②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과 소재지임.
	③ 재포장 내용(생략가능)	재포장할 경우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함.

자료 :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 양축용·양어용 사료는 물론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간식 제품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농림축산식품부령 제 362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사료 제품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표시 기준이 있음. 냉동사료 중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사료는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냉동사료’, 가열해 급여하는 사료는 ‘가열하여 급여하는 냉동사료’로 구분 표시해야 함. 해당 사료의 냉동 보관방법과 조리 시 해동 방법도 기재해야 함. 레토르트 사료는 ‘레토르트 사료’라고 표시해야 함.<sup>65)</sup>
- 사용한 원료의 명칭 표시는 사료 제조 시 사용한 모든 원료의 명칭을 기재해야 함.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함. 사료 제조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첨가하는 단미사료(광물성 사료에 한함)·보조사료·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함. 단미·보조사료 주성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필요에 따라 사용량의 폭 인정)는 ‘보존용’이라고 용도(첨가 목적)를 표시해야 함.<sup>66)</sup>
-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는 금지하고 있음. 무 보존제(또는 무보존료)·보존제 무첨가(또는 보존료 무첨가)·무 착색제(또는 무 색소) 등의 표시는 금지함. 단, 보존제·착색제를 직접 첨가하지 않고,

6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66)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안전실태조사 (n.p.: 한국소비자원 , 2019.6.), 10.

원재료로부터 이행된 보존제·착색제도 존재하지 않는 사료 제품에 한해 무 표시를 허용하고 있음.

- 일부 주의사항도 기재하게 돼 있음. 냉동 유통되는 사료이면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제조업자가 냉동된 사료를 해동해 출고한 제품이면 ‘이 사료는 냉동된 사료를 해동한 사료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함. 수분 함량이 14%를 초과하는 배합사료와 수분 함량이 12%를 초과하는 단미·조사료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사료 제품이면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sup>67)</sup>

### 사료관리법

#### 사료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것

「사료관리법」 제13조 제1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2019. 10. 24. 발령·시행) 제10조 및 별표 15)

1. 사료의 성분 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의약품 첨가 내용(배합사료의 경우만 해당)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 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7) ) 「사료관리법」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3호)

- 사료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사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표시사항이 없는 사료를 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표시하면 등록취소,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사료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포장지 표시 사항 조사와 성분 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2017년 사료관리법상 표시 위반 사례를 보면 사료업체의 실수나 고의적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음. 원료 명칭이나 형태·제조연월일·주회사·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누락이나 오기, 암·고혈압·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 조단백질·조회분 등 성분 함량 부족이나 초과 등 성분 등록과 다른 표시가 주로 적발됨.

#### 사료관리법 상 사료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 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료관리법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4.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경우
6.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0.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11.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12.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13.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15조 제2항에 따른 물질·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5.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16.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경우
17. 제20조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 2. 표시 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되는 사료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 사료에 혼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첨가 사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동물용 의약품을 첨가하지 않았으면 표시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가축용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첨가한 사료에 대해선 첨가한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 의약품 첨가사료”라고 표시해야 함. 휴약기간(休藥期間)이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사료에 사용했다면 휴약기간을 명시해야 함.

## 사료 용기나 포장에서의 표시방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

####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 가. 표시사항

#####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 나. 표시방법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은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로 표시하며, 휴약기간(休藥期間)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 시한다.

○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개별포장(내포장)이 있으면 개별포장에 반드시 사료의 명칭·등록성분량·중량·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 사료 표시는 주표시면 면적이 아주 작은 경우(30cm<sup>2</sup> 이하) 등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함. 내포장한 사료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포장별로 최소한의 사료 관련 정보(사료의 명칭 등)만을 표시할 수 있음.<sup>68)</sup>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 2. 표시방법

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sup>2</sup>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사료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사료의 명칭, 등록성분량, 중량,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수입사료에 대한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전에 부착해야 함.

68)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2. 표시방법

차. 수입사료에 대한 표시방법

- 1)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료명, 수입연월일(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간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병든 동물용 사료에 대한 별도의 표시사항 규정이 있음. 질환 동물용 사료 등 특수용도사료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질병 동물용 사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가 가능한 표현으로 아픈 동물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과 아픈 동물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 등이 있음.
- 사료엔 성분등록사항·원료명칭·주의사항·유통기간·중량 등을 표시해야 함.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표시사항과 그 표시방법(표시기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6조 및 [별표 8]을 따라야 함. 사료공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표시 마크를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금하고 있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4.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외국어로 표시·광고한 것을 포함한다)

하. 허위 및 과장 표시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 1)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동물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3) 동물의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사료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가) 특수용도사료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령동물의 영양보급, 아픈 동물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나)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 6) 사료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가) 해당 사료가 어린동물, 아픈동물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
  - 나) 해당 사료가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노령기 등 동물의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료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 7) 해당 제품의 사료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

#####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 가. 표시사항

-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3) 등록성분량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 6) 주의사항
- 7) 사료의 용도
-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11) 재포장 내용
-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생략>

사료관리법제3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 사료는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해 광고할 수 없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함.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료의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음. 재포장 사료엔 재포장 사유·날짜·중량, 재포장한 사람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함. 보증 성분의 함량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해야 함.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나. 표시방법

10)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날짜·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고, 보증 성분의 함량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 수출 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 중 해외로 판매·공급하는 사료를 가리킴. '자유판매증명서 등'이란 수출 사료의 자유판매증명·제조증명·제품등록증명·분석증명·위생증명·원산지증명·BSE비사용증명·검역증명 등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리킴. 자유판매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공급·관리되고 있는 사료임.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발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범위는 수출사료에 한한다.

제4조(발급기관)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증명서에 한한다)
4.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5. 사료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사료 관련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5조(발급신청) ① 자유판매증명서 등(검역증명서 제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반려동물용 사료(간식 포함)를 취급하는 중간 판매업체는 제품의 성분 분석표를 보관할 필요가 없음. 사료의 등록성분은 제품의 포장재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중간 판매업자는 표시사항이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등을 관리하면 됨. 판매자는 제품이 부패·변질 등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등을 하면 안 됨.

- 사료를 톤백이나 벌크 형태로 판매·공급해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함. 톤백 형태로 판매·공급할 때는 톤백에 표시사항을 라벨이나 꼬리표를 사용해 표시하면 됨. 벌크 차량·탱크로리로 판매·공급할 때는 차량 내부에 표시사항을 비치하고 있다가 구입자에게 전달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2. 표시방법**

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消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벌크사료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으며, 톤백포장, 드럼통, 병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 등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사료 표시 개선 방안**

**가. 유통기한 등 일자 표시**

- 통조림 형태로 된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음. 이를 위반해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면 영업의 일부 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짐. 통조림 사료는 캔에 넣고 탈기·밀봉·가열살균해 상당 기간 내용물이 사료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만든 제품을 가리킴. 캔의 종류(알루미늄·철 등)에 따라 표시 사항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0조(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2) 및 제2호가목11)의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 나.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예시 : 제조일로부터 3월까지) 및 기한(예시 : 2015.12.31까지)을 말한다.
- 다.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사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 2. 표시방법

다.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료가 아닌 식품에서도 미국·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세계적으로 일자 표시제도를 단순화하면서 유통기한보다는 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있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 라벨링의 일자 표시에서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이를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식품의 일자 표시 제도에서 유통기한이 전면 폐지되기에 앞서 사료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선행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의 순서에도 맞다고 판단됨. 식품에서 일자 표시제도 변경 즉, 유통기한에서 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편익에 해당하는 지불의사 추정(Willingness to Pay, WTP)은 현재의 유통기한보다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간 보다 소비기한으로 제도를 바꿀 때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sup>69)</sup>(군산대 이경진 교수팀,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7).
-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통기한’ 용어 자체는 식품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기한으로 정의할 수 있는 종료기한(expiration date)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음.
- 일자표시제도는 식품의 제조시점(제조일자), 판매 또는 소비의 가능기한(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적정 품질유지의 기한 등을 시간적 차원에서 명시한 것임. 식품과 사료 표시사항 중에서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의 하나임.
- 현재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국가별 상황에 맞춰 제품 특성에 맞는 기한 표시(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최소 보존기한 등)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표 51> 식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일자 표시제도

제조일(제조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 식품의 제조·가공과정이 완료된 일자  
유통기한(판매기한, sell by date) :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한국 등)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 best before date) : 표시된 적정 보관·저장방법을 따른다면 식품의 맛·색감·영양 등 식품의 품질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기한(미국·호주·일본), 최소보존일(date of min. durability)라고도 함.  
소비기한(use by date) : 해당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미국·EU·일본·호주 등)  
종료기한(expiration date) :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최종 기한일

자료: 한국소비자원, 2009년

- 식품은 제조 후 변질되기까지 여러 단계로 구분해 품질과 관련된 상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음(한국소비자원, 2009).

69) 군산대학교 이경진 교수팀,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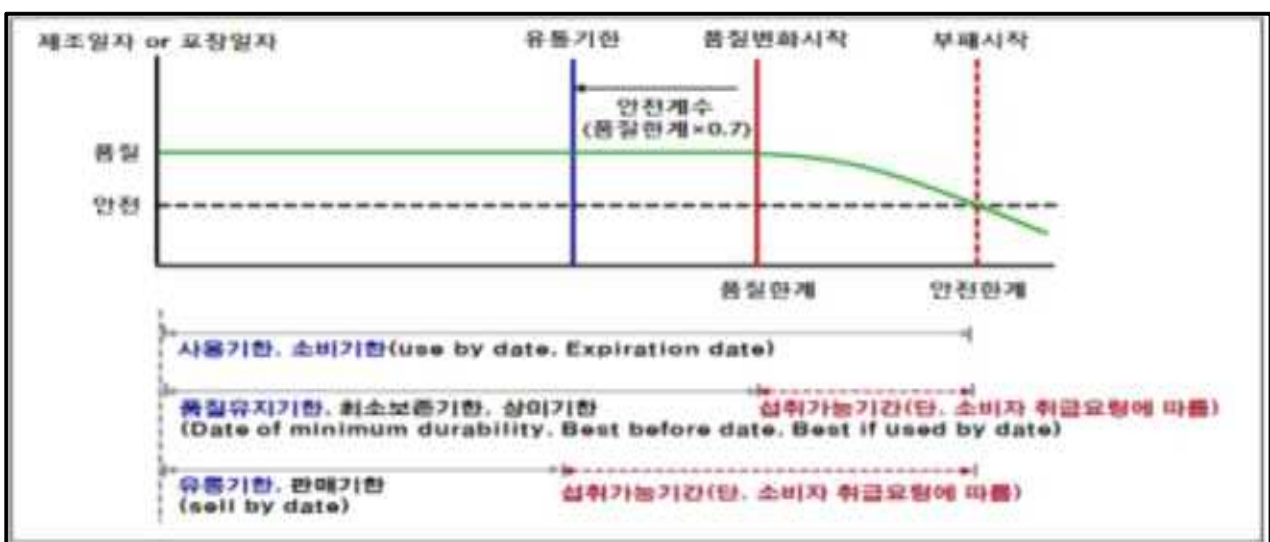
<그림 13>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자료: 한국소비자원, 2009년

- 1985년 도입된 국내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유통과정 중 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명확하고 통일되게 관리하고, 소비자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의 순기능을 담당함. 정확한 정보전달 미흡 등으로 제품 품질과 관계없이 유통기한 날짜가 근접한 많은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임.<sup>70)</sup>
- 현재 국내 식품업체는 제조연월일(Date of Manufacture)·유통기한(Sell by Date)·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을 제품에 기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공식품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음.<sup>71)</sup>
- 국내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고시 제2016-85호)에 따라 세균수 등의 위생지표·산가 등 품질 지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후 여유기간(안전계수, 통상적으로 0.7)을 두고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음.

<그림 14> 식품의 유통기한과 섭취가능기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

7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n.p.: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6.29), 6  
 53)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내 식품업계에선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시하면 소비자 스스로가 식품의 안전수준을 판단해 섭취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식품 변질 문제가 발생하면 불량식품 제조업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는 것을 우려해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앞당겨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식품 변질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에서 유통기한 경과 여부가 제조·유통업체와 소비자의 책임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반품 손실, 소각·매립 등 폐기 비용 등 추가 부담이 증가하고,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sup>72)</sup>
- 소비(섭취) 가능한 식품이지만 유통기한이 가까워져 식품제조업체에 반품된 결과 폐기된 손실 비용은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됨. 가정 내에서 폐기된 식품손실비용은 약 4,000억 원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폐기비용은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실정임.
- 2011년 8월 기획재정부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선 유통기한이 식품 섭취와 법적 책임을 가르는 절대 기준으로 오해돼 불필요한 식품 낭비를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물가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기한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짐.
- 지구 온난화와 세계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품의 손실·낭비의 최소화,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과 소비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과학적·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식으론 판매기일을 나타내는 유통기한(Sell by date), 품질유지기한 또는 상미기간(Date of minimum durability 또는 Best before), 소비기한(Use by date) 등이 있음.
- 전 세계에서 유통기한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미국·일본·EU·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제도를 두고 있음.

---

72)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 52> 세계 각국의 식품기한 제도

국가	식품기한 제도	비고
한국	유통기한(Sell by date)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품질유지기한 : 김치·잼류 등 (2007년부터 도입)
미국	소비기한(Use by date) 유통기한(Sell by date) 최상품질기한(Best if used by date)	자율 결정 (단, 이유식 소비기한, 식육 포장일자)
일본	소비기한(Use by date) 상미기한(Best by date, 품질유지기한)	부패 쉬운 식품 : 소비기한 나머지 : 상미기한
EU (유럽연합)	소비기한(Use by date)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 품질유지기한)	부패 쉬운 식품 : 소비기한 나머지 : 최소보존일
호주	소비기한(Use by date)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 품질유지기한)	저장성 7일 미만 : 포장일 또는 소비기한 나머지 : 포장일 또는 소비기한 또는 최소보존일 (자율 결정)
CODEX(국제 식품규격위원회)	유통기한(Sell by date)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Use by date) = 권장 최종 소비일 (Recommended last consumption date, Expiration date)	별도 규정 없음.

자료: 한국식품기술사협회, 2011년

## 나.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휴먼 그레이트’(사람이 먹는 원료를 사용한 사료)의 사료도 출시되고 있음. ‘휴먼 그레이트 사료’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일종의 광고 문구임. 미국사료감시원협회(AAFCO) 홈페이지엔 사람이 먹지 않는 원료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음. 미국에선 뼈와 뼈에 붙은 고기를 갈아 만든 육골분, 고기 부산물 가루인 육분, 식품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 사람이 먹지 않는 재료가 첨가되면 ‘휴먼 그레이트’라고 표시·광고할 수 없음(한겨레신문 2018.9.11). 사람이 먹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위생적이거나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혼동을 부를 수 있어 해당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보통 반려동물 배합사료엔 40~60개 원료가 들어감.
- ‘휴먼 그레이트’ 사료는 제품 가격도 일반 사료의 거의 두 배에 달함. 한국펫사료협회가 2017년 8월,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국 성인 남녀(개 838명, 고양이 33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연평균 개·고양이 사료 구입 횟수는 약 7회이고, 한 사람이 22만~23만원의 사료 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음. 국산 사료를 먹인다는 응답은 개 46.8%, 고양이 39.6%였음. 수입 사료를 먹인다는 응답은 개 42%, 고양이 47.5%로 애묘인이 애견인보다 수입 사료를 더 많이 먹이는 것으로 나타남(개 11.2%, 고양이 12.9%가 원산지 모른다고 답함). 수입 사료를 먹이는 첫 번째 이유는 품질이 좋다는 것임.<sup>73)</sup>
- 한국펫사료협회가 2017년 반려인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 사료를 대형마트에서 산 적 있다는 응답이 53.5%(중복응답)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 사료를 구매한 비율이 57.9%로 가장 높음. 동물병원과 약국은 22.2%임.
- 사료관리법엔 사료 용기나 포장에 원료·성분 등 사료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음.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사료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 국제기구인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 CODEX STAN 1-1985, 3.1, 3.2’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CODEX는 잠재적으로 오인을 부를 수 있는 표시로, 불완전한 비교급이나 최상급 표현을 포함하는 의미 없는 표시(meaningless claims), 건강에 좋은(Wholesome)·건강한(Healthful)·건전한(sound) 등 좋은 위생 관행에 관한 표시(claims as to good hygienic practice)를 예시함. 천연의(natural)·순수(pure)·생(fresh)·홈메이드(home made)·유기농(organically grown)·생물학적으로 자란(biologically grown) 등과 같은 용어는, 해당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국가적인 관행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21 U.S.C. §343(a)에서 기만이나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가 금지된다는 일반 규제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는 9 C.F.R §317.8 (False or misleading labeling or practices generally: specific prohibitions and requirements for labels and containers)에서 소비자 오인의 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73) 2017.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한국펫사료협회

미국 21 U.S.C. §343 [잘못 표시된 식품]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식품이 잘못 표시됐다고 간주함.

(a) 기만 혹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주는 라벨, 만약

(1) 그러한 표시가 어느 특정한 것에 대해 기만 혹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주는 경우, 또는

(2) 이 법의 §350이 적용되는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의 광고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기만 혹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주는 경우 또는 해당 표시가 이 법 §350 (b)(2)를 위반하는 경우

21 C.F.R §101.18. Misbranding of food에서 다음과 같이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21 C.F.R §101.18 식품의 잘못된 표기

(a) 다른 식품 또는 의약품·장치 또는 화장품에 관해 기만하거나 혹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주는 표현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식품을 잘못 표기했다고 간주함.

(b) 두 개 이상의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한두 가지의 원료 이름만을 포함하고 모든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경우, 비록 라벨의 다른 부분에서 모든 원료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할지라도 오인·혼동을 줄 수 있음.

(c) 식품이나 식품 원료의 지리적 원산지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못 표기된 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1) 지리적 원산지에 대한 진실된 표현

(2)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 또는 제품명이 기만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지리적인 단어가 전체나 부분을 차지하는 상표나 제품명은 다음의 경우 기만적으로 잘못 표시됐다고 간주되지 않음. 만약

(i) 해당 상표 또는 제품명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의해 매우 오랫동안 배타적으로 사용돼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해당 상표 또는 제품명이 특정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상품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경우, 또는

(ii) 너무 임의적이거나 공상적이어서 소비자가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낸다고 일반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3) 제품명의 일부분이 연방 법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4) 시장에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기보다는 식품의 특정 등급·종류·유형 또는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상표 또는 제품명의 경우 FDA는 산업체를 위한 Food Labeling Guide<sup>74)</sup> 에서 소비자 오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유럽연합(EU)에선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No1169/2011’이 2011년 12월 13일부터 발효되고, 2014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됨. 제6조·제7조·제26조 제2항·제36조 제2항에서 소비자 오인을 부를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Regulation EU No.1169/2011

Article 6 일반적인 조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거나 또는 대량 식품판매업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은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하는 식품 표시를 해야 함.

Article 7 공정한 정보 관행 (Fair information requirement)

1. 식품 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특히
  - (a) 식품의 특성에 관해, 특히 본질·정체성·특성·조성·양·내구성·원산지·제조와 생산 방법;
  - (b) 해당 식품이 갖고 있지 않은 식품 효과나 특성에 관해 표시함으로써
  - (c) 사실은 모든 유사 식품이 다 갖고 있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이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특히 특정 원료나 영양소의 존재나 부재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의해)
  - (d) 실제론 해당 제품에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가 다른 구성성분이나 원료로 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식품이나 원료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겉에 보이는 묘사나 사진으로 표현함으로써
2. 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정확하고 명확하며 쉬워야 함.
3.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Natural Mineral Water와 특정영양목적 식품에 적용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에서 해당 식품이 사람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거나 그런 특성을 언급해서는 안 됨.

- 영국에서 식품을 관리하는 주요 법률 Food Safety Act 1990임. 이 법률 제15조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표현을 금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식품 표시가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2014년 4월 29일 국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에서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함.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불법·위해 축산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 또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표시를 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 오인·혼동에 관한 표시는 아직 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소비자 오인·혼동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소비자의

74) A Food Labeling Guide: Guidance for Industry. January 2014.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UCM265446.pdf>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의 오인·혼동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과 사료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sup>75)</sup>

- 명백하게 진실인 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음. 거짓인 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도함. 진실이지만 오인하기 쉽게 하는 표시도 그 표시가 불명확한 추론을 하게 하므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부를 수 있음.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표시된 문장과 표현뿐만 아니라, 해당 표시가 건강상 위해와 식품(사료)의 영양적·기능적 특성 등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오인하게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결정할 수 있음.<sup>76)</sup>

##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 관련 법률

### (a)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시·광고의 총괄 주무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에 사무를 총괄하고자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모아 제정한 법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임.<sup>77)</sup> 이 법률은 시장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관건이 되어 감에 따라 허위·기만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바로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sup>78)</sup>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

75) 정해량,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개선 방안 연구 (n.p.: 식품의약품안전처 n.d.), 6.

76) 정해량,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개선 방안 연구. 13.

77) 오준근, “표시·광고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경희법학』 제42권 제1호, 2007, 192면 ; 이현규, 앞의 논문, 385면

78)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참고로 동법 제정 이전에는 구 공정거래법 제15조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상품의 질 또는 양을 속이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그리고 199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였다. 이후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 상품의 복잡·다양화로 인한 광고기법의 발달에 대응할 필요에 따라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위한 단일 법률인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사후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규제수단을 대폭 도입하고 있다.(정원준,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2014, 385-386면.)

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사료 제품의 포장지에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부를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사료관리법이 규제하고 있음.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사료 표시에 적용됨. 사료 표시에 대한 개별법과 기본법에 의한 규제가 모두 성립함.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료관리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가 모두 가능하므로, 제재가 중복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음. 중복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이중처벌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대법원의 입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제재는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으며,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로 기능할 수 있음.<sup>79)</sup>
- 가능한 한 중복제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양 법률 사이의 합당한 관계 확립이 필요함.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사료관리법 사이의 관계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 표시·광고에 대해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사료관리법 중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본 방향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려동물 사료의 소비자 대부분이 애견·애묘인 등 일반인이고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과 질이 거의 동등한

79) 조성국 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2, 47면 ; 오준근, 앞의 논문, 204면.

사료를 구매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휴먼 그레이드’ 표시에 대한 표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휴먼 그레이드’ 외에도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 중엔 사람용 식품에 준하는 ‘천연’ 등 고급을 뜻하는 표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엔 ‘천연’의 기준 설정돼 있지만 미국 FDA는 현재 ‘천연’(natural)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배합사료는 가공과정을 거치므로 ‘천연’이란 표시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미국 농무부 산하 FSIS는 ‘Food Standards and Labeling Policy Book’<sup>80)</sup>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향료·착색료·화학 보존료·기타 인공 또는 합성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과 그 원료가 최소한의 가공을 거쳤다면 육류나 가공류 제품 표시에 ‘natural’ 표시를 허용하고 있음.
- real·genuine·pure 등의 단어나 표현도 ‘natural’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면 자체 기준 외에 ‘natural’의 표시 기준에도 부응해야 함.
- ‘천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임. ‘자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뤄진 것”을 의미함.<sup>81)</sup> 이는 영어로 ‘nature’에 해당함.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선 ‘천연’에 대한 기준만 설정돼 있어, 유사한 의미인 ‘자연’·‘nature’ 등의 표시도 가능하지는 불분명한 상태임. 현재의 ‘천연’ 기준을 ‘자연’·‘nature’ 등 표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엔 ‘천연’의 기준 설정돼 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 어떤 공정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함. 어떤 공정이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체적 세부 규정의 설정이 필요함. 영국·캐나다 가이드라인에선 ‘천연’이란 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내 기준에선 원재료가 천연의 기준에 합당해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 원재료가 천연의 기준에 부합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천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천연’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선’·생(生)·‘후레쉬’(fresh) 등 유사 용어나 단어 조합 등을 활용해 표시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는 ‘신선’·‘생’·‘후레쉬’ 등의 표시를 사용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쉬움 특히 ‘fresh’ 표시는 최근에 수확·제조됐음을 의미하는 데 포장된 날짜 또는 해당 제품이 신선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음. ‘신선’·‘생’·‘후레쉬’ 등의 표시를 규제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신선’·‘생’·‘후레쉬’ 등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야 표시 위반 제품을 규제할 수 있음.
- ‘리얼’·‘진짜’·‘참’·‘眞’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제 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는 이런 표시를 한 제품이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쉬움. ‘리얼’·‘진짜’·‘참’·‘眞’ 등의 표시를 제품명이나 문구로 사용한 경우와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를 표현하는 경우로 나눠 구체적으로 다르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리얼’·‘진짜’·‘참’·‘眞’ 등의 표시는 해당 제품이 다른 유사 제품보다 품질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해당 제품이 유사제품과 충분히 구별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리얼’·‘진짜’·‘참’·‘眞’ 등의 표시는 모사식품·대체식품이나 원재료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100%’·‘pure’·‘순(純)’ 등의 표시가 어떤 경우에 금지되는 지에 대해 현행 표시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80) Natural Claims. Food Standards and Labeling Policy Book. Food Safety and Inspection Agency.  
[http://www.fsis.usda.gov/OPPDE/larc/Policies/Labeling\\_Policy\\_Book\\_082005\\_3.pdf](http://www.fsis.usda.gov/OPPDE/larc/Policies/Labeling_Policy_Book_082005_3.pdf)

8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현행 표시 규제만으론 '100%' 표시가 수식어로 사용돼 이중적 의미를 가진 제품에 대해 규제하기 어려움.

- '100%','pure','순(純)' 등의 표시는 단미사료와 배합 사료로 구별해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수제','손','hand-made' 등의 표시가 돼 있다면 어떤 제조 공정이 직접 손으로 이뤄졌는지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음. 현재는 사료는 물론 식품에서도 이에 관한 기준이 없음. '수제','손','hand-made' 등의 표시를 했다면 어떤 공정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 직접 처리됐는지 표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이 다량 첨가된 제품엔 '수제','손','hand-made' 등의 표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다. GMO 표시

- 사료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표시해야 함(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0] 참조). 유기사료엔 유전자변형농산물(GMO)가 혼입되지 않아야 함.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 이내로 GMO가 함유된 사료라면 표시와 혼입 허용치 규제에서 제외됨.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0]

#### 유기배합사료의 공정 및 일반기준

##### 1. 제조시설 기준

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1]의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유기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가 일반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다른 경우에는 원료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 유기배합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 제품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 제품 생산 후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2. 유기배합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 사항은 [별표 2] 배합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 사항을 따른다.

##### 3. 유기배합사료의 일반기준

가. 유기배합사료의 원료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기배합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단미사료는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기배합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보조사료는 제5조에 따른 보조사료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유기배합사료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잔류농약 :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의 1/10 이하

2) 중금속 및 곰팡이 독소 :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

3)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 불검출

4) GMO농산물 혼입율 : 불검출(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제외)

다.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제품 운반 후 세척(Flushing)관리 되는 경우 동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승인된 유전자변형체를 사용한 사료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 “유전자변형 또 “유전자 변형된 ○○”으로 표시해야 함. 다만,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료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반려동물사료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사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도 준수해야 할 표시기준이 있음.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하게 돼 있음. 이런 표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면 사료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 관련)**

**3.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 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 농수축산물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음. G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GMO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17년 11월 대표 발의함. 이 법안은 GMO 사용 여부를 사료의 포장재나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GMO 농산물은 국내에 연간 1,000만t이 수입되며, 이 중 800만t이 사료용으로 소비되고 있음. GMO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EU(유럽연합)에선 GM 농산물로 만든 식품은 물론 사료까지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GMO 사료를 먹여 기른 가축의 고기·고기가공품, 우유·유가공품 등엔 GMO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음. EU가 축산·낙농·양계 제품에 GMO 표시 면제를 한 것은 EU산 치즈·돼지고기· 닭고기에 GMO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먹지 않아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임. EU는 약 1,200만 톤의 GMO 옥수수과 약 2,200만 톤의 GMO 콩깻묵을 수입해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있음. 가격이 저렴한 GMO를 수입해서 가축을 기른 뒤 고기·우유나 그 가공품에는 GMO 표시를 면제해

자국에서 소비하고 남는 것은 외국에 수출하고 있음. 이 전략은 EU 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축산·낙농·양계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는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음.

-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물론 사료에도 표시하고 GMO 사료를 먹여 생산한 축산·낙농·양계 생산물에도 모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가 식용으로 수입하는 GMO 옥수수과 콩은 연간 210만 톤 정도이지만, 사료용 GMO 옥수수와 콩의 수입량은 5배인 1,000만 톤 가까이 됨. GMO 완전표시를 하려면 사료와 그 생산물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음.<sup>82)</sup>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축용 배합사료의 양은 연간 1,900만 톤 정도임. 우리나라는 자체 사료작물의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 배합사료 생산량 약 1,900만 톤(2015년 기준) 중에서 GMO는 옥수수 800여 만 톤, 콩깻묵 200여 만톤(수입 120여 만 톤과 국내 식용유 생산하고 남는 것 80여 만 톤)으로 총 1,000만 톤 정도임. 우리나라 배합사료의 55.5%(1,000만 톤/1,900만 톤)가 GMO인 셈임.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면 GMO 사료를 먹여 생산한 축산·낙농·양계 가공품의 GMO 표시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음. 국산 소고기·돼지고기·우유·요구르트·계란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현재 국내에선 축·수산물에 GMO 사료를 먹여 기른 것인지를 알 수 없음. EU처럼 양축·양어 과정에서 GMO 사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몇 년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태임. GMO 완전 표시제가 채택되면 사료에 대한 GMO 표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료 GMO 표시 방안을 상황별로 여럿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

---

82) "식량·사료 수입국서 'GMO 완전 표시제' 소가 웃을 일," 식품음료신문, n.d



## 라. 원재료 비율(%) 표시

-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 제조업체가 사료에 들어가는 원료 비율(%)이나 중량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소비자가 사료 포장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주원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 사료에 사용한 원료를 표시할 때 사료관리법에 따라 많이 들어간 원료 순서대로 기재하도록 돼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 소비자에게 육류가 많이 함유된 사료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일부 사료업체는 원료 함유 비율을 임의로 바꿔서 표시하기도 함.
- ‘곡류’가 40%, 육류가 30%일 때 이를 쌀(14%)·옥수수(15%)·완두콩(11%)으로 세분화하면 각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됨. 원료 표기 순서가 바뀌면서 육류를 곡류보다 앞에 기재할 수 있게 됨. 이는 다수의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소비자가 고기가 많이 들어 있으면 좋은 사료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주원료가 곡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상술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소량 사용한 사료 원료는 원료 사용 비율 순서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 농식품부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과 규격’엔 ‘중량 비율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 좋은 원료를 소량 사용한 뒤 해당 원료명을 중량 비율 2% 미만 사료 중 최대한 앞으로 끌어내 기재할 수 있음. 뒤쪽에 나오는 원료는 순서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은 원료를 최대한 앞에 기재하는 사료업체도 있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선 주원료의 배합 비율(%)은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하나 사료 생산과 소비실태 등을 감안해 신중 검토가 필요함.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등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료 표시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과도한 제한보다는 산업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 현재는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를 읽은 반려동물용 사료 소비자가 사료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확인할 수는 없음. 사료관리법엔 사료에 사용한 원료를 모두 기재하게 돼 있지만, 일부 업계에선 미네랄 등 미량 성분은 일일이 적지 않거나 뭉뚱그려 표기하고 있기 때문임.
- 사료 각 원료의 % 수치(비율)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료 배합비에 따라 사료의 원가 차이가 커서 원료 %를 전부 공개하면 수익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업체는 이를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임. 이미 해양수산부는 2014년 양어용 사료 원료의 배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양어용 사료가 어떤 동물성단백질을 사용하는지도 공개하고 있음. 사료의 유형별로 사료 원료의 배합비율(%)의 공개 여부가 다르다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양축용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포함해 사료 원료의 % 공개를 공론화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마. 유기사료 표시 법률

- 반려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유기사료에 대한 수입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하게 돼 있음.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0] 유기배합사료의 공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함. 기타 사항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규정 하고 있음. 반려동물 양육인 등 반려동물용 사료의 소비자는 유기사료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반려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한 유기배합 사료 공정과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0]

#### 유기배합사료의 공정 및 기준(제8조 제7항 관련)

##### 1. 제조시설 기준

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1]의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유기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가 일반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다른 경우에는 원료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 유기배합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 제품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 제품 생산 후 세척(Flushing)관리 되는 경우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2. 유기배합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 사항은 [별표 3]의 배합사료의 범위 및 별표 12의 성분등록 사항을 따른다.

##### 3. 유기배합사료의 기준

가. 유기배합사료의 원료는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기배합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단미사료는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의 사용 가능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기배합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보조사료는 제5조에 따른 보조사료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유기배합사료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잔류농약 :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의 1/10 이하

2) 중금속 및 곰팡이 독소 :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

3)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 불검출

4) GMO농산물 혼입율 : 불검출(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제외)

다.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제품 운반 후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 동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4. 수입 유기배합사료의 기준 및 성분등록 시 확인사항

가. 수입유기배합사료의 확인 및 성분등록에 대한 절차는 국내생산 유기배합사료의 확인 및 성분등록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수출국가가 유기 배합사료 및 제조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GMO혼입율 검사·사료안전성검사 등을 통해 유기사료로 확인될 경우 유기사료로 성분등록 한다.

서류검사시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사료제조업체가 수출 국가의 사료관련 법률에 의거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되는 사료가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생산·유통되는 사료인지 유무
- 2) 수출국의 인증기준(해당규정) 및 인증서
- 3) 인증기관이 국가가 아닌 민간인증기관인 경우 동 인증기관이 수출국의 관련법 및 국제적 인증기관(IFOAM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다. 수출국가가 유기 배합사료 및 제조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농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할 경우에는 다음 항목별로 세부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유기사료(원료)에 대한 관리체계(프로그램)
- 2) 배합사료원료의 유기여부 확인방법
- 3) 원료입고·제품생산·제품저장·출하단계에서 비 유기원료 및 일반배합사료가 혼입·혼합되는지 여부 확인
- 4) 유기사료(원료)의 유해물질, GMO 등 검사여부
- 5) 배합사료 및 대두박, 옥수수 등은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GMO 분석 실시

사료검사기준 제24조(수입사료의 검정) ⑭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 사료 중 유기사료를 수입신고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바. 분말 표시

- 닭고기 분말·오리고기 분말 등 사료 원료로 분말을 사용했다고 사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말로 만드는 고기의 원료나 제조 과정은 그냥 고기와는 다름. 육류 분말 제조에 사용하는 육류 원료나 제조 과정은 일반 육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예로 “이 분말은 일반 육류 원료와 다른 원료와 제조 과정을 통해 제조한 것입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함.

## 사. 유기사료 표시

<표 53> 유기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고시)

구분	인증품		비인증품 (제한적 유기표시 제품)	
	유기농함량 95%이상	유기농함량 70% 이상 (애완동물 사료)	유기농함량 70% 이상	유기농함량 70% 미만 (특정원료)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유기사료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	×	×	×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	×	×	×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	○	×	×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	○	○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	○	○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애완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설명

- 유기사료는 유기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유래 물질·합성화학물질·호르몬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가리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2014년1월부터 소·돼지·닭 등 가축용 유기사료 인증이 도입됨. 2017년6월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이 시작됨.
-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됨. 95% 유기사료(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와 70% 유기사료(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임. 95% 유기사료와 70% 유기사료 제품에 5% 또는 30% 이내로 사용하는 비(非)유기원료는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허용됨.<sup>83)</sup>
- 반려동물 유기사료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유기원료는 다음과 같음. 첫째,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유기 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둘째,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 가공식품임.
-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으면 유기원료 외 다음 원료를 제품 중량의 5% 이내(유기원료 70%

83) 반려동물 유기사료 Q&A 자료 (n.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상 사료는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유래 물질·합성화합물·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동물용 의약품은 유기사료에 첨가할 수 없음.

- 유기사료 인증품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95% 유기사료엔 유기인증 로고(표시 도형),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 표시가 가능함.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 문자 표시를 할 수 있음. 주 표시면은 사료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로고 등이 인쇄돼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가리킴.
- 70% 유기사료엔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문자 표시가 가능하지만 유기인증 로고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는 할 수 없음. 70% 유기 제품(70% 유기, 70% organic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의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함. 인증번호·인증기관명 등 인증정보와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제조업체·제품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함.
-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사료에 ‘Made with organic ○○’이란 표기는 할 수 있음. ‘Made with organic ○○’은 ‘유기 ○○으로 만든’과 같은 의미이므로 우리나라 유기사료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엔 사용한 유기 원료 명칭 또는 유기원료 품목군의 명칭(사용된 원료의 해당 품목군이 모두 유기원료일 때)을 기재함. 다만, ‘Made with organic’은 미국 국가유기인증프로그램의 표시사항이므로 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령 요건을 확인해야 함.
-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엔 유기 인증 로고나 유기 문자 표시, 이와 유사한 표시(외래어·외국어 포함)를 할 수 없음. 비(非)인증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외국어 표시 포함)를 하면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이 됨.

<표 54> 반려동물 유기사료 표시방법 예시

95% 유기사료	제품명에 유기농·유기사료 표시 가능 인증로고 표시 가능
70% 유기사료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유기농 ○○로 만든 등) 가능 제품명으로 유기농·인증로고 표기 불가 ‘70% 유기’ 등 유기원료 함량 문구 표시 유기농 문구 표시 가능 원재료명과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가능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반려동물 유기사료 Q&A 자료(2018.12.1.)

<표 55> 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의 제한적 유기표시 예시

<p>유기농축산물 함량 70% 이상(비인증품)</p>	<p>주 표시면에 유기농 관련 표시 불가능 유기농 원료 사용 문구 표시 가능 원재료명과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가능 총 함량 또는 원료별 유기 함량 비율 의무표시</p>
<p>유기농축산물 함량 70% 미만(비인증품)</p>	<p>주 표시면에 유기농 관련 표시 불가능 유기농 원료 사용 문구 표시 불가능 원재료명과 함량란에만 유기농 표시 총 함량 또는 원료별 유기 함량 비율 의무표시</p>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반려동물 유기사료 Q&A 자료(2018.12.1.)

### 아. 수입사료 표시의 외국어 번역

- 사료의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이때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해선 안 됨. 다만, 수입되는 사료와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예외적으로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음.<sup>84)</sup>
- 수입 사료를 한국어로 번역해 표기할 때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어감상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원료명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입사료업체도 일부 있음. 예를 들어 육분(고기를 갈아서 수분을 없앤 가루)이라고 기재하는 대신 밀(meal)·건어(말린 생선) 등으로 표기해 고급 재료를 사용한 것 같이 눈속임을 하기도 함. 육분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른 표시임. 수입 사료의 한국어 번역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 자. 반려동물용 사료 전용 표시

- 반려동물용 사료 전용 표시기준의 설정과 활용이 필요함. 양축용 사료 표시기준과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2019년7월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식품·농촌 분야 10대 유망 분야 지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용 사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원료와 가공·표시 기준의 도입을 포함함. 지금까지 반려동물용 사료와 양축용 사료에 동일한 표시 기준이 적용됨.<sup>85)</sup>
- 양축용 사료는 사람이 소비할 목적으로 신체에 유해하지 않은 고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사용 목적과는 큰 차이가 있었음. 일부 반려동물용 사료 중엔 반려견과 반려묘에 필요한 영양균형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사료도 있음. 종종 사료 원재료 구성 문제로 추정되는 반려동물 건강 피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반려동물용 사료 전용 표시 기준이 도입되면 반려동물용 사료 특성에 맞는 성분과 원재료가 사용되면서

8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 5조

8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식품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2019.7.25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sup>86)</sup>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반려동물사료 전용 표시 기준 도입에 이어 2020년엔 반려동물사료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현재 별다른 규제 없이 남발되고 있는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임. 양축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는 소비와 반려라는 사료의 사용 목적이 다르지만 그동안 반려동물용 사료는 양축용 사료의 표시기준에 맞춰 법이 적용됨. 반려동물용 사료 전용 표시 기준 도입은 반려견·반려묘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료업체가 자사 사료 제품의 품질 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반려견과 반려묘는 사료를 통해 제공 받아야 하는 영양소 기준이 다름. ‘고양이는 작은 개가 아니다’란 말이 있듯이 고양이의 영양 요구량은 개보다 훨씬 까다로움. 고양이는 타우린·메티오닌 등 일부 아미노산이나 아라키돈산 등 일부 지방산(아라키돈산), 일부 비타민 등을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를 통해 반드시 공급해줘야 함. 개와 고양이는 사료에 대한 기호도도 같지 않아 사료에 사용되는 향미제도 다를 수 있음. 반려견 사료를 고양이에게 장기간 급여하면 단백질 부족으로 털 빠짐·피부 면역감소·저단백혈증 등 건강상 장애가 생길 수 있음.<sup>87)</sup>
- 미국 사료검사관협회(AAFCO)·유럽 반려동물산업연맹(FEDIAF)이 설정한 고양이의 단백질 최소 요구량은 28%이지만 시중에 출시된 성견용 사료의 단백질은 20~25%여서 최소 단백질 요구량에 미치지 못함. 반려묘가 요구하는 영양소별 함량 수준이 반려견과는 다름. 반려묘에겐 반려묘 전용 사료를 급여해주는 것이 좋음. 반려묘 전용 사료를 반려견이 먹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반려묘 전용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므로 장기간 급여하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로 인해 분변의 냄새가 심해질 수 있음.
- 과거엔 반려견과 반려묘 사료를 만들 때 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연령대에 맞는 사료를 출시함. 현재는 반려견 사료로 강아지(Puppy)용과 성견용 사료가 별도 공급됨. 반려묘 사료도 새끼 고양이(Kitten)용과 성묘(Adult cat)용 등 생애 주기에 따라 2~3가지의 처방으로 구성된 제품이 출시됨. 반려동물 영양학이 발달함에 따라 특정 품종에 더 적합한 품종별 사료가 여러 업체에서 출시되고 있음. 현재 급여하고 있는 사료가 미국 사료검사관협회(AAFCO)나 유럽 반려동물산업연맹(FEDIAF)의 영양소 함량 기준을 모두 맞추고 있다면 영양제를 추가로 급여할 필요는 없음.
- 반려동물용 사료의 원료·명칭·용법 및 용량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함.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계육분·육골분 등 원료 명칭이 한자어로 돼 있어 실제 반려동물용 사료의 원료로 활용되는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자어 명칭을 우리말로 바꿔 반려동물용 사료 제품의 표시를 읽는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함.
- 다양화·세분화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표시사항을 사료관리법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86) "반려동물사료 전용 표시기준 생긴다..가축사료와 분리," 노트넷, n.d. 2019.7.25

87) "고양이 사료에 쥐 뇌에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데 맞나요?" 한겨레, n.d. 2018.9.10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61371.html](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61371.html).

에 따라 반려동물용 사료 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성분 등 표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는 혼합성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로 분류되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는 반려동물의 연령·품종·기능성 등에 따라 세분화되는 추세임. 건사료(수분함량 10% 미만)·습식사료(캔과 페이스트 등 수분함량 75% 이상)·간식류(육포·트릿 등) 등 종류와 조리법에 따라 관리 기준이 상이하므로 주요 선진국과 같이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표 56>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신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 홍보 내용

구분	반려견 간식	반려견 간식사료	반려묘 간식	반려묘 습식사료	반려견 습식사료	합계
첨가물·보존제 없음	182	51	33	8	7	334
프리미엄	154	28	11	15	2	257
피부개선	99	62	21	0	15	210
기타(기능성)	134	38	14	5	10	206
소화와 배뇨개선	76	55	12	1	21	178
이빨과 치석관리	144	10	9	1	2	170
고단백·단백질 첨가	123	26	7	0	0	162
알레르기 유발물질 감소와 제거	68	53	4	12	8	156
저지방·무지방 등 지방 함량 감소	110	8	10	5	2	148
비타민·미네랄 강화	48	37	14	1	9	140

자료 : Minte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South Kore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표 57>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p>표시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li> <li>2) 사료의 명칭과 형태</li> <li>3) 등록성분량</li> <li>4) 사용한 원료의 명칭</li> <li>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li> <li>6) 주의사항</li> <li>7) 사료의 용도</li> <li>8) 실제 중량(kg 또는 톤)</li> <li>9)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li> <li>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와 전화번호</li> <li>11) 채포장 내용</li> <li>12) 사료 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와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표시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li> <li>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종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루 : 곱게 가루로 만든 것</li> <li>(2) 펠릿 : 가루 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li> <li>(3) 크럼블 :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 목적에 맞게 분쇄·선별한 것</li> <li>(4) 후레이크 :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찌서 납작하게 압편(壓片)한 것</li> <li>(5) 익스투루전(팽화) : 압력과 온도를 가해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li> <li>(6) 액상 : 용액으로 된 것</li> <li>(7) 그 밖의 형태 :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li> </ol> </li> </ol> </li> </ol>

자료: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표 58> 보조사료·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p>표시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li> <li>2) 사료의 명칭과 형태</li> <li>3) 등록성분량</li> <li>4) 사용한 원료의 명칭</li> <li>5) 사료의 용도</li> <li>6) 주의사항</li> <li>7) 실제 중량(kg 또는 톤)</li> <li>8)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li> <li>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와 전화번호</li> <li>10) 재포장 내용</li> <li>11) 사료 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과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표시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li> <li>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명칭을 적는다.</li> <li>3) &lt;삭 제&gt;</li> <li>4)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반추동물용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 전용 남은음식물사료(8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해야 한다.</li> <li>5)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사료의 용도, 실제 중량, 제조(수입)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재포장 내용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li> <li>6) &lt;삭 제&gt;</li> </ol>

자료: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차. 보존료 표기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5]는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합성보존료를 사료 제조 과정에서 직접 사용했으면 이를 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의 해석상 원재료에서 이입된 경우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사료관리법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2]에 따르면 보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사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별표 22]의 ‘첨가, 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에선 항산화제·항곰팡이제의 허용기준만 규정하고 있음. 산미제 등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료는 원칙적으로 사료첨가물을 포함한 원재료를 모두 기재해야 함.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 카. 부당한 표시 광고

- 사료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선 사료 용기나 포장에 성분 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음. 제2항에선 거짓 표시나 과장 표시를 금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거짓·과정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로 구분해 금지하고 있음. 사료관리법에선 거짓·과장 표시 광고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사료관리법에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거짓·과장 표시·광고뿐 아니라 기만적인 광고·표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기만적인 광고·표시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부당하게 비교·표시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또는 자사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것을 말함.

#### 4.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표 59>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 라벨링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축산과학원/ 지상윤 연구원	① 원료명을 표기할 때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명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반려동물사료에 한해 이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② 대상 동물에 따라 표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량에 차이가 있음. 양축용은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가 거의 없고, 반려동물 사료는 거의 모든 것을 기재해야 함.
수산과학원/ 이봉주 연구원	① 사료 각 원료의 % 수치(비율)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원료 배합비에 따라 사료의 원가 차이가 커서 원료 %를 전부 공개하면 수익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업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임. ③ 사료 원료의 % 공개를 공론화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	① 반려동물용 사료 분야에서 최대 라벨링 이슈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마케팅임. 마케팅 관련 내용(정보)을 어디까지 알릴 것인지, 어떻게 소비자와 소통을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② 현재 사료업계에선 사료 원료의 비율이 몇 %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③ ‘천연’·‘신선’과 같은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해당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한국사료협회/ 홍성수 부장	① 2014년 해양수산부는 사료 원료의 배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② 양어용 사료가 어떤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는지도 공개하고 있음. ③ 사료관리법의 기타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시기준(라벨링)으로 바꾼 후 향후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 등에서 결정된 사항을 근거로 표시기준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④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칭)는 표시기준 위반 시의 처벌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사료안전관리위원회가 정부와 사료업체간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의미임.
한국단미사료협회/ 차근환 부장	① 사료 원료의 제조·수입에 관여하는 단미사료협회는 라벨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 필요성이 없음.

<표 60>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 라벨링 개선 방향

참여자	의견
이화여자대학교 / 오상석 교수	① 미국·EU에선 라벨링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국산 사료도 미국·EU 수준으로 라벨링 기준을 갖춰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② 라벨링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일본 'FAMIC'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강원대학교 / 송영환 교수	① 사료 라벨링에서 제품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표시 규정이 부족하거나 빠져 있음. ② 사료의 원료·칼로리·단백질·비타민 등에 대한 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대학교 / 홍준형 교수	① 사료 라벨링에서 영양 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포함되어야 함.

## 5. 사료 관련 협회의 사료표기 개선에 대한 의견

<표 61> 사료 표시제도(라벨링) 중 표시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의 의견 차이

사료 관련 협회명	의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① 현행 11가지 표시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음 ② 단, 등록사항과 실제 제품에 부착사항이 다른 위반 건에 대해선 관리가 필요함.
한국펫사료협회	① 글로벌 기준의 ‘반려동물사료 라벨링 가이드’ 등과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함. ③ 반려동물사료 사용 원료의 명확한 정의와 구분(특히 동물성 단백질 원료) ②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려동물사료 원료와 보조사료 명칭의 순화가 필요함 ③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면서 제품 판매자에게는 자유로운 제품의 효과·효능을 홍보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함. ④ 특수사료(목적식·처방식 등)에 대한 정의·표시 방법·유통 방식 등이 필요함. ⑤ 주식(완전식·균형식·completed diet)과 간식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기준이 필요함.
한국양어사료협회	① 현재도 사료 라벨링 규정에 배합사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판단됨. ② 배합사료 판매촉진을 위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동물의약품 또는 동물과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등의 표기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62> 사료 표시제도(라벨링)의 표시 기준을 양축용·수산동물용(생사료 포함)·반려동물용으로 나눠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별 의견 차이

사료 관련 협회명	의견
한국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재 사료의 표시사항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에 규정돼 있음.</li> <li>② 그중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은 2014년 12월 8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통해 마련됨. 반려동물사료의 소비자 민원과 수산용 사료의 해양수산부 요청에 따른 것임.</li> <li>③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 방지 요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li> <li>④ 축산농가가 소비자인 양축용 사료는 소비자가 판매업소에 가서 선택하는 제품이 아니라 축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임. 사료 제조업자와 축산농가의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료관리법에서 표시사항 규정은 최소화(2014년 개정 전의 시행규칙 규정만 적용)할 필요가 있음.</li> <li>⑤ 축산업은 생산성·경제성이 중요하므로 라벨링 규정의 잦은 교체는 제조원가 상승 요인에 해당함.</li> <li>⑥ 사료의 표시방안은 반려동물사료만을 위한 별도의 고시(반려동물용 사료의 표시기준) 제정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양축용은 최소한의 표시 규정을 통해 양축농가의 경제성 향상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li> <li>⑦ 수산동물용 표시 규정은 양축용 사료 표시기준에서 현재와 같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li> <li>⑧ 생사료는 현행 사료관리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허용돼선 안됨. 생사료에 대한 관리와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인 민원 대상임.</li> </ul>
한국단미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료 표시 규정을 양어용·양축용·반려동물용으로 나눠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li> <li>② 단미·보조사료는 모든 축종에 사용되고 있어 특정 축종을 지정해 별도의 표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li> <li>③ 생사료는 불법 사료, 수산동물용 사료에 포함되지 않음. 생사료는 사료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생사료를 사료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은 어분 등 사료제조업체만 가능함.</li> </ul>
한국펫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료 표시 기준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함</li> </ul>
한국양어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육환경·사육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료에 사용되는 원료의 차이가 존재함.</li> <li>② 사용자의 배합사료에 대해 원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사료 표시제도는 대상 축종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됨.</li> </ul>

<표 63>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의 사료 관련 법률

사료 관련 협회명	의 견
한국사료협회	일본의 ‘사료안전법’과 ‘애완동물사료 안전법’
한국단미사료협회	의견 없음.
한국펫사료협회	<p>① 국가별 사료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호주 : 정부와 협의를 통한 업계 자율규정, 거의 모든 업체가 준수하고 있음</li> <li>- 일본 : 일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과 위생·표기 등을 분범화해 관리하고 있음.</li> <li>- 중국 : 반려동물사료를 사료 관리에서 분장화해 관리하고 있음.</li> </ul> <p>② 우리나라 법체계나 반려동물사료 발전 단계를 고려했을 때 최근(2018년)에 만들어진 중국 사례가 가장 참고할만하다고 보임.</p>
한국양어사료협회	<p>① EU의 일반식품법은 사료와 식품의 생산방법, 사료 사용법, 사료와 식품의 제조과정 등의 표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음.</p> <p>② 미국의 식품 안전현대화법은 식용동물 사료와 반려동물사료의 cGMP·위해성 분석과 위해성에 근거한 예방관리를 명시하고 있음.</p> <p>③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사료안전 관리의 연계 조항이 필요하다고 봄.</p>



<표 64 >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만한 해외 사료 관리 제도

사료 관련 협회명	의견
한국사료협회	① 일본의 반려동물사료 표시제도 ② 에코피드 제도 ③ 사료산업실태조사 제도 등
한국단미사료협회	① 의견 없음.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양어사료협회	①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은 수산사료와 식품을 연계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관점에서 미흡함. ② 안전한 먹거리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수산사료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③ 연구현황 평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함.

## 6. 종합 검토 의견

- 우리나라는 표시·광고와 원료 인증에 관한 검토와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가칭 사료안전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 안에 사료 표시 분과위원회를 뒤 사료 표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
-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선 전문 협의체(산·학·관·연)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제를 소비자 친화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사료에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는 유통기한 표시의 폐지와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제안함. 이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채택되지 않는 일자 표시 제도이고, 유통기한 표시로 인한 식품과 사료 원료 낭비가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임. 최근엔 식품 분야에서도 유통기한의 폐지가 정부 차원(식약처)에서 적극 검토·추진되고 있으므로 식품(food)보다 안전 요구 수준이 높을 수 없는 사료(feed)에 계속 유통기한 표시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식품 분야에서 유통기한 표시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사료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유통기한 표시 폐기를 발표하면 소비자와 미디어의

반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human grade'·'genuine'·'pure'·'natural'·'100%' 등 사료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사료 표시에서 해당 용어의 사용이 가능한 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GMO 완전 표시제의 채택을 대비해 GMO 사료 표시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수입 사료의 한국어 번역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 사료 각 원료의 % 수치(비율)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미 해양수산부는 2014년 양어용 사료 원료의 배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양어용 사료가 어떤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는지도 공개하고 있음. 사료의 유형별로 사료 원료의 배합비율(%)의 공개 여부가 다르다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양축용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포함해 사료 원료의 % 공개를 공론화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 전용 표시기준의 설정과 활용이 필요함. 양축용 사료 표시기준과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사료관리법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2]에 따르면 보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사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별표 22]의 '첨가, 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에선 항산화제·항곰팡이제의 허용기준만 규정하고 있음. 산미제 등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료관리법에선 거짓·과장 표시 광고만을 금지하고 있음. 사료관리법에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거짓·과장 표시·광고뿐 아니라 기만적인 광고·표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표 65> 사료 표시제도 개선 관련 제안

개선 내용	현황	참고 사항
사료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신설	유통기한 폐지는 세계적 추세 식품에서도 유통기한 폐지 노력	소비기한 표시 통해 사료 폐기물 감소
'human grade' 등 사료 품질 강조 표시에 대한 규정 마련	사료 품질 강조 표시는 반려동물용 사료 소비자의 민원 사항	제외국의 강조 표시 정의·규정 등 참고
사료 GMO 완전 표시제 대안 마련	식품에서 GMO 완전 표시제 관련 논란 중	사료에서 GMO 표시법 검토
수입 사료 한국어 표시 통일안 개발	소비자 혼란 요인	표시 통일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사료 원료의 사용 비율(%) 표시 기준 강화	수산동물용 사료에선 % 표시 중	법의 형평성과 소비자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검토 필요
반려동물용 사료 전용 표시기준 개발	현재는 양축용 사료 표시기준과 동일	고시 등에 별도의 반려동물용 사료 전용 표시기준 포함
산미제 등 허용기준 없는 화학적 합성품 기준 설정		사료관리법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2] 개정 필요
기만적인 광고·표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에 대한 규정 신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 거짓·과장 표시·광고만 규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참고

## VIII. 사료관리법의 분법화

## VIII. 사료관리법의 분법화

### 1. 사료관리법의 입법 목적

- 헌법 제123조 제4항에선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여 축산업의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축산업은 농업에 포함되는 산업으로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상 헌법 제123조로부터 축산업의 보호·육성 의무가 도출됨.
- 사료관리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축산물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안전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 안정·품질관리·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사료관리법 제1조).
- 사료관리법에선 규제와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축산업’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음.
- ‘축산업’의 사전적 의미는 가축을 기르고 그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이고, ‘가축’의 사전적 의미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임.<sup>88)</sup>
- 축산법령에 따르면 ‘가축’이란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기러기·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과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임. 염소엔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도 포함됨. 가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동물(짐승 1종, 관상용 조류 15종, 곤충 14종, 기타 1종)을 의미함.<sup>89)</sup>
- 1981. 6. 25. 전부개정으로 사료의 개념에 가축용 사료 이외에 양어용(養魚用) 등 기타 동물용 사료를 추가함.
- 현행 사료관리법 제2조에서 ‘사료’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임. 단미사료·배합사료와 보조사료를 말함. 다만, “동물용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에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대해 실험용 동물·반려용 동물·사육하는 동물·수산동물을 규정하고 있음.
- 사료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뿐 아니라 실험용·애완용 동물·사육하는 동물이나 수산동물이 먹는 사료를 전부 포괄하고 있음. 다만 ‘가축’의 사료를 중심으로 시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사료 관련 외국 입법 사례

-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선진국 등은 2007년 ‘멜라민 사료 사태’를 계기로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8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89) 축산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위해 반려동물용 사료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강화함. 일본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이란 독립된 법률을 제정해, 산업동물용 사료와 분리된 단독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일본 정부는 반려동물 사료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과 반려동물 사료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가. 미국<sup>90)</sup>

- 미국에서 반려동물 ‘식품’엔 사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됨. 간식·껌·뼈·장난감도 반려동물 ‘식품’임. 제조업체가 제품 라벨이나 광고에 동물용 식품으로 명시하거나 동물에 영양학적 가치가 있다고 밝힌 동물의 섭취가 가능한 제품도 반려동물 식품에 포함됨.
- 미국에서 반려동물 식품의 행정처분 주체는 미국 식품의약처(FDA)·농무부(USDA)·각 주 정부임. 미국 사료감시관협회(AAFCO) 등이 관여하고 있음.
- FDA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인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 & 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근거해 제품 안전성, 생산 시설의 위생, 제품 라벨의 표시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과 동물용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반려동물 생산시설의 cGMP, 원료 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 수준을 규제하고 있음.
- 규정에 따르면, ① 식품첨가물에 해당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반려동물용 식품은 FDA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고, ② 캔 포장된 반려동물 식품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며(21 CFR), ③ ‘제품표시’에서도 동물용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제품명·중량·제조업체명과 소재지·성분 표시를 의무화함.
- 미국 농무부(USDA)는 FDA와 같은 강제적인 규제 권한은 없지만, 다양한 반려동물 식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용 식품 제조 시설의 등록,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대상에 반려동물 식품도 포함하고 있음.
- USDA의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사료 업체의 신청에 따라 우수제조기준(GMP)에 맞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는지 확인한 후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임. USDA 프로그램의 실무부처인 농업마케팅서비스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은 FDA의 수의의약품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와 협력하고 있음.
- 미국 각 주의 농업부는 반려동물 식품 제조업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관할지역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식품과 간식의 제조업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각 주 농업부에 등록해야 함. 일부 주는 반려동물 식품 표시, 시설 위생 관리, 제품 성분, 영양 요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관리하고 있음.
- AAFCO는 ‘제품표시’와 관련해 상업용 사료의 라벨 표시, 판매·제조에 관한 모델, 모델 적용 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각 주는 AAFCO의 모델 일부 또는 전체를 도입하고 있음. 반려동물 식품 판매에 관한 연방 요구조건도 설정돼 있으나 주마다 상이한 점이 많음. AAFCO는 해마다 반려동물 식품의 제조와 라벨 표시에 관한 요구조건 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있음. 해당 자료엔 반려동물 사료 판매·제조에 관한

90) 한국법제연구원,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2017. p.58

모델과 규정, 동물용 사료에 사용이 승인된 전체 성분 목록이 포함돼 있음.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리법을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애완동물용 등으로 분법 또는 분장화 하는 작업을 할 때 참고할만한 미국의 관련 법규론 식품의약품화장품법과 식품안전현대화법(2011)이 있음.
- 미국에선 산업동물용 사료와 달리, 반려동물 사료 기준 설정 과정에서 반려동물 사료 성분에 대한 기준과 정의,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 기준, 영양과 성분 정보를 포함한 표시 기준에 대한 개정 등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장관이 미국사료감시관협회(AAFCO)를 포함한 기타 관련 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음.
- 미국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 & CA) 범위 내에서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와 제조 기준, 조기 경보시스템 등 안전성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FoodNet(Foodborne Diseases Active Surveillance Network)와 같이,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질병 발생을 발견하기 위한 조기 경보와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조기 경보와 감시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관련 협회나 민간 동물병원과 협력하고 있음.
-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사건·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전 예방·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된 법률임. FSMA의 하위 규정인 ‘동물용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을 통해 동물용 사료에 대해서도 cGMP와 예방관리 준수 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반려동물 사료 관련 오염사고의 식별과 추적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한 상태임.
- 미국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 & CA)을 통해 사료를 포함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유통·소비 과정을 규제하고 있음. FD & CA는 식품과 사료가 안전하고 적절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연방규정집(21 CFR)에선 항(Part)별로 사료의 표시사항·제조시설·허용되는 첨가물 기준·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과 사용이 금지된 물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21 CFR(2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FD & CA 하에서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 규정집임. 사료 관련 규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음.

<표 66> 21CFR Volume 6 목차(발췌)

Parts	주제
501	사료의 표시사항(ANIMAL FOOD LABELLING)
507	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cGMP 기준(FSMA 이후 신설)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515	약품첨가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사항 (MEDICATED FEED MILL LICENSE)
558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의약품(신규) (NEW ANIMAL DRUG FOR USE IN ANIMAL FEEDS)
573	사료와 물에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PERMITTED IN FEED AND DRINKING WATER OF ANIMALS)
579	사료와 펫푸드의 생산·가공·취급에 대한 방사능 기준 (IRRADIA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HANDLING OF ANIMAL FEED AND PET FOOD)
582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584	사료와 펫푸드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IN FEED AND DRINKING WATER OF ANIMALS)
589	사료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OR FEED)

자료 : FDA,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 나. EU(유럽연합)

- 농식품부가 사료관리법을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반려동물용 등으로 분법 또는 분장화 작업을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EU(유럽연합)의 관련 법령으로 일반식품법과 사료위생법이 있음.
- EU는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고려해 사료 전체에 대해 EU 공통의 규칙(Regulation)과 지침(Directive)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
- EU는 일반식품법을 통해 사료의 제조·유통 등을 식품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음. 일반식품법은 식품 안전에 관한 EU의 총괄 법률임. EU는 식품과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 원칙으로, 사전예방 원칙·투명성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음.
- EU는 일반식품법 외에 사료위생법(사료의 시판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EU의 사료위생법은 사료 원료에 대해 규정하고, 사료를 유형에 따라 배합사료·완전배합사료·보조사료·특수목적 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사료의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음.
- EU의 사료위생법에서 반려동물용 사료의 표시기준·방법은 산업동물용 사료의 표시기준·방법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사료 원료의 정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은 유럽 반려동물 식품산업연맹(FEDIAF)의 공동체 규범을 따르고 있음(제 17조 제2항 제c호). FEDIAF가 제정한 ‘안전한 반려동물용 실행기준 등’은 EU 의회의 인증을 받음. EU에서 사료를 업계 자율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음.
- EU는 일반식품법과 사료위생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HACCP 적용, 신속 경보시스템(RASFF) 구축, 산업동물용 사료 표시기준과 다른 반려동물사료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EU는 사료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하고 있음.
- EU는 HACCP 적용을 위한 공동체 규범(Community Guide)으로, FEDIAF(유럽 반려동물 식품산업연맹)의 안내서를 채택하고 있음. EU의 사료위생법 제 22조는 위생 또는 HACCP 적용을 위한 모범 사례(Good Practice)를 개발·배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사료위생법 제 31조에 따라, 유럽 PAFF 위원회(Committee on Plants, Animals, Food and Feed)는 2007년 1월 29일 FEDIAF의 ‘안전한반려동물사료 제조를 위한 모범사례 안내서’(Guide to good practice for the manufacture of safe pet foods)를 공식 가이드로 채택함.
- FEDIAF 안내서는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관상어·파충류에 이르는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관리 시스템에서부터 제조시설 허가조건·HACCP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에선 사료 첨가제와 FEDIAF 공동체 규범에 제시된 사료 원료가 기재돼야 하고 소비자가 필수 표시 사항 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락처·기타 연락수단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음(사료위생법 제 19조). 사료의 안전성 기준에선 반려동물용 사료와 산업동물용 사료 간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음.

## 다. 독일(91)92)

91) 한국법제연구원,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2017., p.83

92)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2017. 8.

- 독일은 ‘식품, 생활용품과 사료법’(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으로 동물 사료를 규제하고 있음. LFGB의 규율 대상은 식품·사료·화장품과 생활용품임.
- 독일에서 사료는 가공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되거나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에게 먹이는 물질 또는 제품과 첨가물을 가리킴.
- LFGB는 식품과 사료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생활용품·화장품 등의 유통에서 기만을 방지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음.
- LFGB는 유럽연합(EU)의 식품에 관한 일반 법규인 ‘유럽공동체법령 178/2002호’를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임. 식품이나 사료 안전이 문제 되는 상황별·단계별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종합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유럽공동체법령은 EU 역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전통제품을 포함한 식품공급의 다양성을 특별히 고려해, 식품과 관련한 인간의 건강과 소비자의 이익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U 27개 회원국은 1996년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BSE) 파동 후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유럽 차원에서 일원화하기 시작함.
- 2000년 11월 독일에서 광우병(BSE) 감염 쇠고기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독일 내에서도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광범위한 공론화가 제기됨. 이 후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는 연방보건부(BMG)와 연방식품농업부(BMEL) 사이에서 혼선을 빚다가 연방식품농업부(BMEL)로 일원화됨. BMEL 산하로 2002년 5월 신설된 연방소비자 보호식품안전청(BVL)에서 식품과 사료 안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의 설립에 관한 법률’(BVLG)임.
- 독일의 LFGB는 총 11개 장, 7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음. 단순한 개별 법률(Gesetz)이 아니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포괄하는 종합법으로, 식품안전 관리 ‘법전’(Gesetzbuch)의 형태를 띰.
- LFGB 제3장에 동물사료의 유통과 관련해 금지사항(제17조), 보험(제17a조), 건강 관련 광고금지(제20조), 기타 금지 및 제한(제21조), 건강보호를 위한 전권 위임(제22조), 그 외 건강보호를 위한 전권 위임(제23조), 동물 건강보호와 동물 생산촉진을 위한 전권 위임(제23a조), 요구사항의 보장(제24조), 행정관청의 협력(제25조) 등이 규정돼 있음.

**독일 식품, 생활용품과 사료법(LFGB)**

**제1장 일반규정(제1조~제4조)**

**제2장 식품의 유통(제5조~제16조)**

**제3장 사료의 유통(제17조~제25조)**

**제4장 화장품의 유통(제26조~제29조)**

**제5장 기타 생필품의 유통(제30조~제33조)**

**제6장 수권근거(제34조~제37조)**

제7장 감독(제38조~제49a조)

제8장 모니터링(제50조~제52조)

제9장 수출과 수입(제53조~제57조)

제10장 벌칙과 과태료 규정(제58조~제62조)

## 라. 일본<sup>93)</sup>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리법을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반려동물용 등으로 분법 또는 분장화를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일본의 관련 법령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 있음. 일본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완결적인 형태의 개별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법의 명칭으로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표방한 일본의 유일한 법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임.
- 일본의 반려동물용 사료 관련 성령(省令)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시행규칙,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상 민간사업자 등이 행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 등 보고에 관한 성령,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정한 성령 등이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에 관한 성령’,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행규칙’ 등도 있음. 성령에서 반려동물용 사료의 라벨링·성분 규격·유해물질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에서 정령과 성령은 우리나라 법제의 시행규칙과 유사한 법령 하위 규정임.
- 일본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과 같은 법 정령·성령을 통해 산업동물용 사료와는 별도로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유통·판매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가 제정 목적임.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한정해, 반려견과 반려묘 중심으로 제정된 법률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일본은 2008년 반려동물 사료안전법(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반려동물용 사료와 산업동물용 사료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음. 이는 일본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반려동물 양육인 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임. 현행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엔 양축용·양어용(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사료관리법 분법화를 검토할 때는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선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법률 시행규칙도 제정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본의 반려동물사료 제조와 수입업자는 신고서를 규정된 양식에 맞춰 농림수산성 장관과 환경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일본의 사료안전법이 축산물 생산용 사료의 안전과 품질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둔 법률임. 반려동물용 사료 품질에서 중요한 영양 기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제1조 1항에서 이 법의 목적은 “반려동물사료”의 제조공정 등을 규제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며 동물 복지에 기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93) 한국법제연구원,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2017. p.74

<표 67> 일본의 사료안전법과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비교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한 법률(사료안전법)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반려동물사료안전법)
목적	사료·사료첨가제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 사료의 공정규격 설정과 이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해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한 공공안전 확보와 축산물 등의 생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를 실시해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 애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가축 등”이라 함은 가축, 가금 다른 동물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 돼지, 양, 염소, 닭과 메추라기, 꿀벌, 참돔, 연어 등	이 법에서 “반려동물”이란 반려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개, 고양이

자료 :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제2장 5, 6조엔 반려동물용 사료의 기준·규격 설정과 제조 금지 등이 기재돼 있음.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성령에선 사료 제조방법과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반려동물용 사료는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됨.
-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제2장 7조엔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일본의 농림수산성 장관(대신)과 환경성 장관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제2장 11~14조엔 농림수산성 장관이나 환경성 장관의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와 현장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농림수산성과 환경성 소속 검사원이나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 직원이 현장감사를 수행함. 이 때 창고·기계·운송장비 등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장감사 후엔 검사기록지를 제출해야 함.
-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면 보존 등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제정돼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 기록 장부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면 혹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함. 보존형태는 디스크·CD롬, 그 외 컴퓨터로 지원되는 형식이어야 함.

**일본의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해,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애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반려동물"이란 반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로, 정령으로 정한 동물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반려동물용 사료'란 반려동물의 영양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제조업자'란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배합과 가공을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입업자"란 반려동물용 사료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판매업자"란 반려동물용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습득,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반려동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회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5, 6조

### 기준 및 규격의 설정 및 제조의 금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은 성령에서 사료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료는 제조, 수입 및 판매는 금지한다.

## 제2장 7조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를 금지한다.

농림수산대신(장관)과 환경대신은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 제2장 11~14조

농림수산성 장관이나 환경성 장관에 의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업자로부터의 보고징수, 제조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환경성과 농림수산성 소속 검사원 혹은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가 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창고, 기계, 운송장비 등을 모두 검사할 수 있다. 검사 후에는 검사 기록지가 제출되어야 한다.

##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업자 등의 신고) 반려동물사료 제조 및 수입업자는 신고서를 규정된 양식에 따라 농림수산성 장관과 환경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관련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 기록 장부는 펫푸드 제조 및 수입업자가 서면 혹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보존형태는 디스크, CD롬, 그 외 컴퓨터로 지원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 마. 중국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리법을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반려동물용 등으로 분법 또는 분장화를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중국의 관련 규정으로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이 있음.
- 중국에선 반려동물 사료가 양축용 등 다른 사료제품과 별도로 규제되고 있음. 반려동물 사료와 양축용 사료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갖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는 반려동물의 직접 소비를 위해 제조된 제품을 의미함. 반려동물은 반려견·반려묘에 한정하고 있음.
- 중국에서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업체는 ‘반려동물 사료 생산업체 허용조건’에 맞춰, 생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반려동물 사료관리법 제3조, 정부 사료관리부서에 신청).
- 중국 정부 내 사료 관리부서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반려동물 사료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사료 관리부서는 국무원 산하 농업행정 주무부서와 군 단위 이상 지방 인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중국 애완동물 사료관리법

제1조(목적) 애완동물 사료관리를 강화하고, 애완동물 사료 제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며, 애완동물 사료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정의) 본 방법에서 “애완동물 배합사료”란 공업화를 거쳐 가공·제작된 애완동물 제품으로, 애완동물 첨가제 사전 배합사료 및 그 밖의 애완동물 사료 등을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직접 소비를 위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애완동물 식품이라고도 한다.

애완동물 배합사료란 애완동물의 생애 단계나 특정 생리 병리 상태에 따른 영양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료원료와 사료 첨가제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를 말한다. 단독 사용으로도 애완동물의 전반적인 영양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애완동물 첨가제 사전 배합사료란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미량원소, 효소제 등 영양성 사료첨가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양성 사료첨가제 및 운반체 또는 희석제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만든 사료다.

기타 애완동물 사료는 애완동물에게 보상을 주거나, 애완동물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씹고 물어뜯는 것을 자극하기 위해 사료원료와 사료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배합한 사료를 말한다.

제3조 애완동물 배합사료, 애완동물첨가제 배합사료 생산업자는 애완동물사료 생산업체 허가 요건에 맞춰 생산지 상급인 인민정부 사료관리기관에 신청해 사료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애완동물 사료 생산 업체는 관련 규정과 표준에 따라 구입한 사료 원료, 첨가제 사전 혼합 사료와 사료첨가제에 대해 검침하는 사람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료 첨가제 품목 목록」을 준수해야 한다. 사료 원료 목록에 기재된 사료첨가제 품목을 제외한 어떤 물질도 애완동물 사료 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애완동물 사료 생산 업체는 구입한 사료 원료, 첨가제 사전 배합사료, 사료 첨가제의 명칭, 산지, 수량, 유통기한, 허가 증명 서류 번호, 품질 검사 정보, 생산업체 이름 또는 공급자 이름과 그 연락처, 구매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 애완동물 사료 제품 포장에 붙이는 라벨은 「애견사료 라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애완동물 사료 생산업체는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애완동물 사료 제품의 위생지표는 「애견사료위생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와 군 단위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료 관리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애완동물 사료 제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애완견, 애완묘의 사료관리에만 적용된다. 다른 종류 애완동물 사료의 관리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 바. 한국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리법을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반려동물용 등으로 분법 또는 분장화를 검토할 때 사료관리법 조문수의 제·개정사와 조의 숫자를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현행 사료관리법은 5장, 36개 조(條, Article)로 구성돼 다른 법률에 비해 특별히 조의 숫자가 과다한 것은 아님. 이는 사료관리법이 특별히 다른 법률에 비해 복잡하거나 조의 수가 많아 분법화할 필요는 적다는 것을 의미함. 분장화를 하면 조의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용 사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용 사료를 사료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유통·소비 관련 법령체계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 조절, 가격의 안정과 품질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에선 사료의 범위를 '산업동물용 배합사료'와 '반려동물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사료공정서는 각 사료의 공정·성분 등록·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은 '생산'이 목적인 산업동물용 사료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제정됨.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용 사료에 적용하기엔 태생적 한계가 있음. 국내에서 반려동물용 사료는 현재 사료관리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나, 사료관리법은 축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주로 산업용 동물을 위한 산업동물용 사료의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임.
- 현행 사료관리법에선 반려동물용 사료와 산업동물용 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특히 사료관리법 제1조 목적에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 달리 반려동물용 사료 관리의 주목적인 반려동물의 건강한 양육이란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 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그 밖에 동물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실험용 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동물(마우스(mouse)·랫(rat)·햄스터(hamster)·저빌(gerbil)·기니피그(guinea pig)·토끼·개·돼지 및 원숭이 등)
2. 애완용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동물
3. 사육하는 동물 : 원앙새·청둥오리·곤충(누에 등)·멧돼지·곰·호랑이·사자·표범(재규어·퓨마 및 치타를 포함한다)·늑대·원숭이, 기타 동물원 등에서 사육하는 동물
4. 수산동물 :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

“첨가물 프리믹스용 사료”란 배합사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사료로서 비타민제와 미량 광물질류를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 아미노산제 등의 보조사료와 부형제를 혼합하여 균질화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한국-사료 공정서 제2조 제2항>

다른 애완동물 사료는 애완동물에게 보상을 주거나, 애완동물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씹고 물어뜯는 것을 자극하기 위해 사료원료와 사료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배합한 사료를 말한다.

### 3. 사료관리법의 분법 필요성<sup>94)</sup>

#### 가. 분법 필요성과 기준

##### 1) 분법 필요성과 유의사항

- 우리나라에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법·제도 도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 법령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불필요하거나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관성이 없으면 법령의 체계 정당성에 맞지 않게 되며 국민이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게 됨.
- 하나의 법령에 지나치게 방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내용이 복잡하거나, 하나의 분야라도 내용이나 성질이 다른데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한다면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법령 분법(分法)을 통해 법률을 집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행정청에겐 법률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 주며, 수범자에겐 법률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에겐 법률 간의 체계를 파악하는 용이함을 제공함. 법령 분법은 법률 적용에서 모순의 예방과 법 적용에 대한 신뢰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sup>95)</sup>.
- 분법의 필요성은 법령의 내용과 산업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검토해야 함. 법령을 분법할 때는 분법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몇 개의 법령으로 분법할 것인지, 분법하는 경우 각 법령에 규정할 내용, 분법 상호 간의 연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내용·분야·기능 등을 기준으로 분법이 되도록 하고,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법령 상호 간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지나치게 세분해 분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법이나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분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함. 해당 일반법이나 기본법에 골격만 남게 되는 입법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규정을 두도록 노력해야 함.

##### 2) 법령 분법이 필요한 경우

- 법령 분법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는 단일한 법령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사회가 복잡화·분업화되면서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로 발전된 경우임.<sup>96)</sup> 소방과 관련해선 종전에 ‘소방법’ 하나로 규정하던 것을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분법해 규정하고 있음.
- 둘째는 단일 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 법 이해가 어려운 경우임.

9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 12.

95)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입법정책학회 제4면 참조.

96)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 12. 제14면 참조

- 셋째는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돼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임.
- 넷째는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임.
- 다섯째는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임.
- 여섯째는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임.<sup>97)</sup> 축산업 중 말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한 것이 사례임.
- 일곱째는 특정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임.<sup>98)</sup>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과 별도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사례임.
- 분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기존의 법령을 분법해 새로운 다수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됨.

### 3) 사료관리법의 분법 필요성 검토

#### 가) 반려동물용 사료 : 산업의 변화에 따른 수요 급증과 관리 필요

-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는 축산물·수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어류 사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축산업(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재에 해당함.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는 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sup>99)</sup>
- 반려동물용 사료는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에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목적으로 함.<sup>100)</sup>
- 소비자의 기대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는 축산물의 생산성·효율성·편의성이 중요함. 가축·수산동물 양식자와 축산물 소비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함. 반려동물용 사료는 다양한 기호·안전성·영양·위생·품질(유기농·유전자 변형원료 사용 여부 등) 등이 중요함.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며, 반려동물용 사료의 소비자인 반려동물 소유자(양육인)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의 관여도가 매우 높은 편임.
- 유통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는 사료 제조업체와 농장(어장)의 직거래·대리점 등 한정된 유통경로로 판매됨. 반려동물용 사료는 일반 소비재와 같이 마트·슈퍼마켓·펫샵·동물병원·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는 사료를 먹는 동물의 생물학적 분류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사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유통 과정·판매 형태·소비자의 기대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

9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 12. 제14면 참조

98)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입법정책학회 제48쪽 참조.

99) 이를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라 표현함.

100) 이를 ‘From the cradle to the trave(요람에서 무덤까지)’라 표현함.

-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는 단일한 법령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사회가 복잡화·분업화되면서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로 발전된 경우,<sup>101)</sup>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돼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sup>102)</sup> 또는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sup>103)</sup>에 해당해 일견 분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68> 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의 차이점

구분	산업동물용 사료	반려동물사료
목적	생산성(증체량·산란율, 육질)	성장과정 중 영양공급과 기호성을 위함
유통과정	농장 직매와 대리점	소셜커머스, 반려동물사료 전용매장, 식품매장
소비자	축산농가	반려동물 양육인
품목	축종별, 성장단계별	식품과 유사
소비자 성향	생산성 추구	기호성, 품질과 안전성 추구
표기 사항	필요 정보 이외 무관심	원료·가공·기능성 등 식품 수준 요구

자료 :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8. 농림축산식품부

101) 분법화가 필요한 경우 중 ‘①’에 해당  
 102) 분법화가 필요한 경우 중 ‘③’에 해당  
 103) 분법화가 필요한 경우 중 ‘④’에 해당

<표 69> 사료관리법상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용 사료의 차이점

자료: 한국사료협회

		양축용 사료	반려동물용 사료	수산동물용 사료
대상 동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등	어류, 갑각류 등
제조시설기준 (배합사료 형태)		공통시설(건물·저장·분쇄·배합·계량·정선·포장) 추가시설(먼지 제거·수송·작업)	공통시설(건물·저장·분쇄·배합·계량·정선·포장)	반려동물과 같음
공정설정	배합·단미 사료의 범위	보조사료 혼합 시(혼합성) 단미사료로 불인정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향미제에 한함) 혼합 시(혼합성) 단미사료로 인정	양축용과 같음
	사료 명칭	성장단계(자돈사료, 비육돈사료 등)별로 명칭 법제화(양축용 사료만 해당)	제조업자가 자율로 정함	반려동물용과 같음
	성분 등록	성분(단백질·지방 등) 비율(%) 등록 의무	성분(단백질·지방 등)이 아닌 원료명으로 등록 가능	양축용과 같음
	표시기준	원료 배합비율 표시 없음	양축용과 같음	원료 종류별 배합비율(동물성 단백질류 65% 이상 등) 표시
안전성 관리	동물성 단백질 평균·살균 기준	열처리(121℃ 15분 이상 등) 의무화	열처리 예외(익스트루전 형태, 소독제 처리 후 동결건조·조사처리 등) 인정	백장어용 입불임 사료 예외 인정
	배합사료 수분 제한(14%)	수분 14% 초과 불인정 원칙(단, 통조림, 레토르트 등 밀봉 형태만 인정)	수분 14% 초과 인정(단, 유통기한 18개월 이내)	반건조 수산용 배합사료 25%까지 인정(단, 유통기한 7일 이내)
	BSE(광우병)	BSE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 사료는 수입 시마다 BSE 현물검사 실시	BSE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 반려동물용 사료는 1년에 한번만 BSE 현물검사 실시	양축용과 같음
	HACCP	공통관리(시설·제조공정·위생·방역 등) 평가	공통관리 평가 외에 원료육에 대한 온도·해동·건조공정 등에 대한 평가 추가	반려동물과 같음

<표 70> 양축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의 차이

구분	반려동물용 사료	양축용 사료
목적	반려동물의 건강을 목적	축산물 생산 자재인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전제
	반려동물이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기호·영양을 공급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축산물 생산 목적) [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탁까지)
유통과정	일반 소비재와 같이 마트·슈퍼마켓·편의점·펫샵·동물병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산업동물용 사료는 농장 직거래·대리점 등 한정된 유통경로로 판매
소비자	1,000만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반려동물 양육인(주인)	제한된 축산농가
품목과 형태	1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품목. 추후 지속적 증가	축종별·성장단계별 단순한 형태와 종류
소비자 기대	안정성·영양·위생·다양한 기호, 품질(유기농·유전자 변형원료 사용 여부 등) (반려동물 + 보호자 중심)	축산물의 생산성·효율성·단가·편의성 중시 (사용자 중심)
표기	식품과 유사한 정보 및 안내	-
소비자 관여도	매우 높음(적극적) → 민원	-
고용효과	다품목·소포장·소량 생산 등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음.	소품목·자동화된 대량생산.
방역	개별 가정 내에서 양육하며, 식품과 유사한 다양한 단백질 원료와 가공 형태가 존재하므로 산업 동물과는 다른 기준 적용 필요	방역은 양축산업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료관리의 기본 요소(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등 동물전염병 등)

자료: 한국펫사료협회



<표 71> 배합사료의 축종별·판매형태별 현황

(단위 : 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축종	판매형태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산란계	직거래	1,203,357	21.8	2,362,361	35.3	1,321,647	23.4
	대리점 등	52,829	1.0	89,935	1.3	104,618	1.9
	OEM	147,651	2.7	157,002	2.3	147,101	2.6
소 계		1,403,837	25.4	2,609,298	39.0	1,573,366	27.9
육계	직거래	876,253	15.9	902,847	13.5	892,845	15.8
	대리점 등	30,721	0.6	23,303	0.3	43,953	0.8
	OEM	498,294	9.0	541,924	8.1	490,333	8.7
소 계		1,405,268	25.5	1,468,074	22.0	1,427,131	25.3
양돈	직거래	1,090,714	19.8	1,094,663	16.4	1,152,671	20.4
	대리점 등	151,152	2.7	127,042	1.9	99,847	1.8
	OEM	394,481	7.1	283,653	4.2	324,034	5.7
소 계		1,636,347	29.6	1,505,358	22.5	1,576,552	27.9
낙농	직거래	100,822	1.8	92,540	1.4	77,551	1.4
	대리점 등	62,732	1.1	57,119	0.9	47,433	0.8
	OEM	45,578	0.8	36,577	0.5	31,383	0.6
소 계		209,132	3.8	186,236	2.8	156,367	2.8
한우/ 비육	직거래	197,839	3.6	195,201	2.9	168,064	3.0
	대리점 등	213,949	3.9	196,150	2.9	163,522	2.9
	OEM	130,002	2.4	99,374	1.5	131,452	2.3
소 계		541,790	9.8	490,725	7.3	463,038	8.2
기 타		324,540	5.9	423,265	6.3	445,714	7.9
합 계		5,520,914	100.0	6,682,956	100.0	5,642,168	100.0

<표 72> 배합사료의 판매형태별 현황

(단위 : 톤,%)

판매형태	2014년		2015년		2016년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직거래	3,468,985	66.8	4,647,612	74.2	3,612,778	69.5
대리점등	511,383	9.8	493,549	7.9	459,373	8.8
OEM	1,216,006	23.4	1,118,530	17.9	1,124,303	21.6
계	5,196,374	100.0	6,259,691	100.0	5,196,454	100.0

주: 산란계·육계·낙농·한육우 사료 합계 기준(기타 축종 제외)

## 나) 수산동물 사료

- 수산동물용 사료에 대해선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과 규정이 필요함. 수산동물용 사료는 양축용·반려동물용 사료와 배합사료 원료 성분이 다르고, 가축·반려동물과 환경·생리적 특성이 전혀 다른 생물종을 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가축·반려동물과 수산동물은 대사가 달라 성분 허용기준, 사료 검정·분석방법 등에서 대상 성분·기준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sup>104)</sup>
- 수산동물 양식 배합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06년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사료연구센터가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됨. 2007년 1월 1일부터 양식사료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현행 사료관리법은 가축 사료 중심의 법체계를 갖추고 수산동물 사료에 관해선 부차적인 규율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산동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데 법체계상 한계가 있음.
- 수산동물용 사료의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사료관리법이란 하나의 법률에 규정돼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산동물용 사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율대상을 분리하는 분법의 필요성이 일견 일리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04) 2020. 8. 19.자 제1차 전문가 회의 수산과학연구원 의견.

## 4. 사료관리법의 분법 관련 개정 방향

### 가. 사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제점

-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사료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라고 정의해, 가축·반려동물·수산동물의 사료를 전부 포함해 규정하고 있음(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
- 사료의 종류는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로 구분하고 있고, 그 밖의 양축용·수산동물용(양어용)·반려동물용 등 급여 대상, 동물의 종류 또는 산업에 따른 구분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 사료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축산법 등 관련 법령과 체계적 위상에 비취, 사료관리법은 ‘가축’의 사료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다만 하위법령이나 고시에서 일부 양축용 배합사료를 구분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예외 조항을 뒤 일반 규정 적용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에서, 양축용 배합사료·대용유용 배합사료·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등을 구별해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별표 11]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서 양축용·실험동물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등 사료의 종류에 따라 허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사료의 수급 안정,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4장 사료검사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돼 있음. 사료의 수급 안정(제5조, 제6조) 외 대부분은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돼 있음. 법령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검사기준,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고시로 규정해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 & CA)·식품안전현대화법(FSMA)·동물용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 등으로 동물용 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FD & CA를 통해 사료를 포함한 식품의 제조·유통·소비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동물용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을 통해 동물용 사료에 대해서도 cGMP와 예방관리 준수 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미국은 통합법을 통해 식품과 사료를 함께 규율하면서, 사료에 대해서도 제조·유통·소비의 전 단계와 예방관리까지 규율하고 있음.
- EU는 일반식품법을 통해 사료의 제조·유통 등을 식품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음. 독일은 EU의 일반식품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식품, 생활용품과 사료법’(LFGB)에 근거해 사료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독일의 LFGB는 사료의 유통에 관한 금지사항·건강 관련 광고금지 등 사료 안전 문제에 따른 상황별·단계별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사료 관련 법령은 통합법인 것이 특징임. 법전 상 하나의 법률로 또는 하위법령에서 동물 사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식품과 유사한 수준의 제조·유통·판매 관리와 준수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사료관리 법령과 관련 고시는 대부분 대상 동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사료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일부 규정에 한해 사료 섭취 대상 동물의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친 추적·관리가 미흡하게 된다는 점(규정의 공백), 대상 동물의 생리적 특성에 따른 구별의 필요가 있어도 일반 규정이 적용돼 과도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점, 식품과 통합법으로 존재하는 외국의 법령에선 식품에 준하는 사료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춰 대상 동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와 이에 근거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에서 사료를 해외 주요국처럼 식품과 통합해(통합법) 규제·관리하면 현재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사료 섭취 대상 동물의 종류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통합법으로 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종류의 동물에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엔 사료 품질·안전성 관련 규정이 주로 포함돼 있음. 실질적인 품질·안전성 관리는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검사기준,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동물이 각각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를 섭취한 뒤 체내 대사를 통해 영양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은 동일함.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에선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사료관리법령을 분법 등 구분하는 것은 법령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반대 의견도 있음.<sup>105)</sup>
- 다만, 반대 의견은 형식에서 법령의 분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으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산업진흥 부문에 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반려동물·수산동물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원칙적으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의 원료에선 큰 차이가 없고, 동물성 단백질 사료의 사용 수준과 원료의 경제적 가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법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sup>106)</sup> 법령을 분법하면 행정력의 과중과 분산이 우려된다는 의견<sup>107)</sup>이 있음.

105) 2020. 8. 19.자 제1차 전문가 회의, 한국사료협회 의견.

106) 2020. 8. 19.자 제1차 전문가 회의, 한국단미사료협회 의견.

107) 2020. 8. 19.자 제1차 전문가 회의, 한국팻사료협회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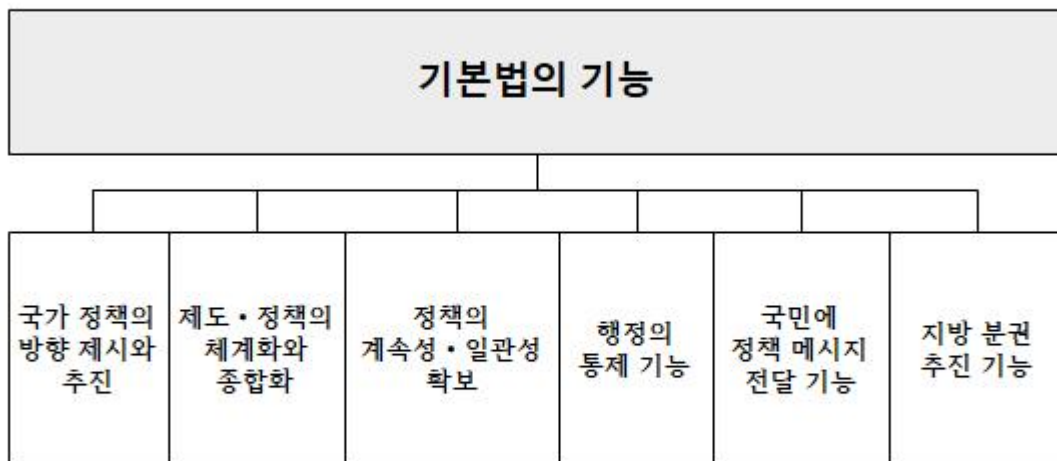
## 나. 분법의 유형

- 사료관리법에서 대상 동물의 유형(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을 기준으로 사료를 구분해 규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구체적인 입법 형식에 있어, ① 사료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사료 유형(대상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안 ② 사료관리법 내에서 사료 유형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하는 안 ③ 사료관리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사료 유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1) 사료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사료 유형에 따른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안

- 사료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사료 유형에 따른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사료관리법을 분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존 사료관리법은 원칙적인 형태로 기본법으로 유지하고, 정책입법·프로그램법 기능과 성격을 가진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입법 형식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시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 정비를 도모하는 입법 유형임. 기본법엔 사료관리 등 기본적인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됨. 기본법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임. 기본법엔 국가 차원에서 사료관리 정책이 중요하고 중점을 뒀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함. 기본법에 제시된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sup>108)</sup>

<그림 15> 기본법의 기능



자료: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 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본법 형식의 법률은 분법과 관련해 많은 제한요인이 될 수 있음. 기본법은 어떤 영역(입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전제가 되거나 규율돼야 할 내용에 대한 대강을 정하고 있을 뿐임. 이후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자의 입법 활동이 추가로 이뤄져야 함.

1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2014., p.9

- 기본법에 해당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 등을 두기는 매우 어려움. 기본법엔 대부분 선언적 성격이나 방침적 성격을 갖는 규정을 포함하게 됨. 상당수 기본법 속엔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기관과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본법 자체의 체계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sup>109)</sup>
- 지금은 폐지된 산림법은 오랜 기간 분법화 과정을 거친 사례임. 2001년 기존 산림법이 유효한 상태에서 산림기본법이 제정됨. 산림기본법은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하고 산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체계화하지 못한 채 입법화돼 실질적인 기본법으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함. 산림기본법이 산림 분야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데 필요한 산림·임산물·산림사업 등 기본적인 용어 정의 규정조차 없는 상태로 제정됨. 용어의 정의는 산림기본법이 아닌 개별 산림 관계 법률에서 정의하도록 법제화되는 등 법 체계성에 문제가 제기됨.<sup>110)</sup>
- 사료관리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법으로서의 사료기본법을 제정하려면, 사료관리법의 명칭을 사료기본법 등으로 바꿔 기본법적 성격을 분명히 표명해야 함. 해당 기본법엔 정책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 장기적 시책 등에 관해서만 규정해야 함. 사료기본법(가칭) 제정 후엔 개별 법령, 즉 사료관리법(양축용 사료 규율)·반려동물 사료관리법·수산동물 사료관리법에서 실질적인 규율 사항을 규정해야 함.
- 이런 방식으로 사료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미 사료관리법에 정의 규정·기본 시책 등이 규정돼 있고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규정 사항이 중복되거나 모순될 우려가 있음.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기본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사료 관련 산업과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구체적인 분야로 분법해, 집행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에선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가 전부 ‘사료’의 범주 내에 포함돼 있으나 산업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의 수요 급증과 관리 필요성, 생리적 특수성을 따른 수산동물 사료의 별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료관리법의 분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료’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사료관리법에 유지하면서 반려동물용 사료·수산동물용 사료에 특별히 필요한 규정을 분법해 규정하는 방식(폐기물관리법의 사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관리·처리와 관련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과 관계에서 기본법적 역할을 담당함.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이후 폐기물 관리·처리에 관한 기본법적 위상과 양법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자원순환기본법은 집행법적 성격을 가진 순환자원의 인정, 폐기물처분 부담금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원순환기본법은 정책입법·프로그램 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집행법적 일반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을 따르고 있음.<sup>111)</sup>

109)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입법정책학회 제4면 참조.

110) 한국법제연구원, 산림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111) 김홍균,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사료관리법을 분법해 반려동물용 사료와 수산동물용 사료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에 대한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수산동물용 사료의 급여 대상이 되는 수생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기준 등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sup>112)</sup>
- 현행 사료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사료는 원칙적으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 원료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없음. 사료관리법에 포함된 사료 품질·안전성에 관한 규정도 공통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므로, 법률 자체를 분법하면 필요 이상으로 법령의 수가 증가해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관성이 없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에서 한 분야가 지나치게 많아 전체적인 법체계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법보다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 사료관리법은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사료관리법을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에 대한 일반법으로 유지하면서 구체적 규정을 보완하고, 향후 해외 사례와 같이 식품·사료 등에 관한 통합법을 제정해 사료를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는 것이 안전 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는 유통전문점(펫샵·동물병원·전문 인터넷 쇼핑몰)과 종합유통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을 거쳐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마케팅 측면에서 일반 소비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등 수요·공급대상, 유통구조, 판매형태 등에서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와 전혀 다른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휴먼 그레이트’(human grade)를 요구할 만큼 높아지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사료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되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에 관해서만 분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에 대해서만 분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일본의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반려동물 사료안전법)’과 중국의 ‘애완동물 사료관리법’을 참고할 수 있음. 일본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과 같은 정령·성령을 통해 산업동물용 사료와는 별도로, 반려동물용 사료의 제조·유통·판매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중국에서 애완동물용 사료(펫푸드)는 애완동물의 직접 소비(섭취)를 위해 제조된 제품을 가리킴. 애완동물용 사료는 다른 사료제품과 별도로 규제되고 있음. 애완동물용 사료 제조업체는 ‘애완동물 사료 생산업체 허용조건’에 맞춰야 하고 제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사료관리법에서 반려동물 사료관리법(가칭)을 분리해 별도 법령을 제정하면 국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환경이 발전하고 반려동물 양육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분야로 분법되는 사례가 됨. 이 경우 기존 사료관리법이 집행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이 되고, 가칭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사료안전법)은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갖게 됨.

## 2) 사료관리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사료 유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안<sup>113)</sup>

112) 2020. 8. 21.자 제2차 전문가 회의, 서울대학교 홍준형 교수 의견.

11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 12. 제16면 참조

- 오늘날 전문적·기술적 수준의 발전, 경제·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입법 분야가 늘어나면서 법률이나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입법사항이나 위임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포괄적·일반적 위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헌법에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바로 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음.
-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명시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규정을 위임하더라도 위임하려는 내용에 따라 어떤 법령의 형식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함.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표 73>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소관 사항 예시

법률의 소관 사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li> <li>-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li> </ul>
대통령령의 소관 사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li> <li>-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li> <li>-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li> <li>-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li> <li>-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li> <li>-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li> </ul>
총리령·부령의 소관 사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li> <li>- 법률·대통령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li> <li>-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li> <li>-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li> <li>- 절차적·기술적 사항</li> </ul>

자료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 12.)

-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한 경우 그 고시 등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고시 등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임. 법규성이 인정되지만,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 업무의 성격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임해야 함.



- 예로,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임. 약사·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 등에 관해 정의하고 있음. 약사법은 사람에 대한 약(藥)과 약사(藥事,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선 제85조에서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음.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
  - 2.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④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방법·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또는 수산생물양식어가에 판매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

⑨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합행위의 금지, 판매장소의 지정, 기록관리 등 동물용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오남용 방지 등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⑪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⑫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의 규정에서 친환경 농어업(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농수산물’이라 함)과 친환경농수산물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선 친환경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법률에선 유기식품 등의 인증 관리(제3장),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제4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제5장) 등으로 나눠 ‘인증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과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으로, 각 소관 부서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로서 ‘인증 대상(농축산물·수산물)’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수산물)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9. 8. 27., 2020. 3. 24.>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 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 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 등"이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며, 유기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가. 유기수산물

나.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 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를 주 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규정에서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규정돼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의미함(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7호).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의미하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3호, 제6호) 대상이 되는 산업은 농업(축산업 포함)·어업을 전부 포함하고 있음. 법률 규정의 내용상 산업의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또는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규율 사항이 대부분 공통됨. 농업·어업이 분법화되거나 하위법령에서 나눠 규정하고 있지 않음.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고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임.
- 사료관리법에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으로 구분해 규정할 때는 단순한 절차에 관한 사항만 규율하지 않고 제조업·판매업 등 업종이나 그에 따른 등록 의무, 유통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성분등록, 표시의무 등 의무 부담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달리 규정될 수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함.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 각 사료 유형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리 규정되는 경우 법률에서 이를 구분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2015. 1. 6., 2017. 3. 21.>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위법으로 사료관리법을 유지하면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으로 구분해 하위법령에 위임·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존 사료관리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임.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의 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규정사항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함. 반려동물용 사료는 유통구조·판매방식 등의 특수성이 있고 수산동물용 사료는 생리적 특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물사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해야 하는 사항(사료의 수급안정 관련 조항·사료안전관리인·수입신고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함. 특별히 별도로 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제정하면 일관된 규정 적용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료관리법에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으로 구분해 하위법령에 위임·규정할 때는 단순한 절차에 관한 사항만 규율하지 않고 제조업·판매업 등 업종이나 그에 따른 등록 의무, 유통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성분등록, 표시의무 등 의무 부담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달리 규정돼야 함.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함. 각 사료 유형에 따라 권리·의무가 다르다면 법률에서 이를 구분해 규정해야 함. 결국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기 전에 법률에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으로 나눠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도출됨.

### 3) 사료관리법 내에서 사료 유형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하는 안

- 사료관리법의 분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사료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의 정당성과 실효의 문제, 사료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어떤 입법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법률·하위법령 또는 고시) 등을 종합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료관리법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 내에서 장(章)으로 구분해 법률에서 중요사항을 규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는 원료가 동물성 식품이므로 안전 관리가 힘들고 오염 위험이 큰 특성이 있으나, 사료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볼 때 사료관리법 내에서 규정과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sup>114)</sup>
- 사료관리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료 품질·안전성에 관한 규정은 공통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함. 각 대상 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규정은 많지 않음. 사료관리법 자체를 분법하면 법체계가 복잡해지거나 일관성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사료관리법 내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일반 규정으로 규율하고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에 한해 대상 동물의 유형(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에 따라 나눠 분장(分章)하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사료관리법 내에서 분장(分章)해 각 사료 유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율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분장(分章)의 기준은 대상 동물의 유형(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함. 사육 목적(취미·레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육 목적은 주관적 의사가 개입된 개념으로

114) 2020. 8. 21.자 제2차 전문가 회의, 강원대학교 송영환 교수 의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사육 목적별 분장은 개별적·구체적 판단에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산동물용 사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구별의 실익이 없음.

- 기존 사료관리법에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 등 사료의 유형별 분장을 검토할 때, 양축용 사료를 기본이 되는 유형으로 규정하되, 나머지 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내용은 준용 규정을 두면 중복을 피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의 정의, 사료 시책의 수립·시행과 재정 지원, 사료의 수급 안정에 관한 규정, 사료의 품질관리 중에서도 사료안전관리인 등에 관한 규정 등 공통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각 사료 유형(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에 따른 각 장(章)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도록 함.
-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해선 제조업 등 등록 요건, 유통·보관업과 판매업의 업종 신설과 그에 따른 추적 관리·제조방법·표시기준(라벨링)·위생 기준·영양 기준(특히 개·고양이)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수산동물용 사료에 대해선 생리적 특성과 환경을 반영해 성분 등록, 유해물질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임.
- 위 제1)안(사료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사료 유형에 따른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는 유통전문점(펫샵·동물병원·전문 인터넷 쇼핑몰)과 종합유통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을 거쳐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일반 소비재(마케팅)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등 수요·공급대상, 유통구조, 판매형태 등에서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와 전혀 다른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휴먼 그레이트’(human grade)를 요구하고 있는 특성이 있음. 사료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해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章)하고, 반려동물용 사료(펫푸드)에 대해 분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표 74> 사료관리법 분법의 입법 형식

입법 형식안	입법 형식 내용	권고안
1안	사료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사료 유형(대상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안	필요 이상으로 법령 수가 증가해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관성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
2안	사료관리법 내에서 사료 유형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하는 안	권고
3안	사료관리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사료 유형에 따라 하위 법령 제정하는 안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분법을 검토할 때 대안으로 검토 가능 각 사료 유형에 따라 권리·의무가 다르다면 법률에서 이를 구분해 규정해야 할 필요성 도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기 전에 법률에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으로 나눠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 도출

다. 우리나라 분법화 사례<sup>115)</sup>

1) 소방법 분법

-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된 최초의 소방법은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2003년 5월 29일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기 전까지 119개의 조문으로 증가함. 제정 당시 54개 조문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됐던 소방법이 25회의 개정을 통해 조문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이에 따라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기가 힘들게 됨.
- 조문의 수가 급증한 것은 소방법을 전면 개편하거나 정리하기 쉽게 분법 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됨. 소방법에서 분법된 4개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02년6월2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같은 해 9월19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02년10월2일 국회에 제출됨. 소방법의 분법으로 제정된 4개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75> 소방법의 분법 내용

법안명	조문총수	증가조문	
		신설	조문정리
소방기본법	제10장 제56조	6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제53조	10	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장 제40조	3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장 제39조	5	26
계	제32장 제188조	24	45

자료 : 이상윤,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2011.05)

- 소방법의 분법은 기존의 소방법을 폐지하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형식을 취함.
- 일반적으로 법률 분리(분법화)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시도됨. 첫째, 기존의 방대해진 법률에 실질적인 요소가 누적되면 서로 유사한 내용을 개별 법률로 나눠 용어를 통일하고,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 둘째, 방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셋째, 법률의 수용자인

115) 이상윤,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n.p.: 한국법제연구원, 2011.05)

국민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고 법령의 제명으로 쉽게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소방법 분법 당시 행정자치부도 4개 법령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법이 연계성을 가지면서 업무 분야 별로 전문화·세분화된 법령 체계를 유지하도록 정리함. 일반 국민도 소방법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실생활에 적용이 쉽도록 함. 기능별로 세분화해 소방산업 육성과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분법화의 이유로 제시함.

## 2) 환경보전법

- 지속되는 인구 증가와 고도 산업사회의 경제구조는 환경 문제의 다양화·심각화를 부름. 기존의 환경보전법으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됨. 정부는 1990년8월1일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 이른바 ‘환경 6법’으로 분법화함.
- 환경 관련 법령의 경우 오염 매체별로 복수법 체계를 채택하면 환경보호와 개선에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복수법 체계의 문제점으론 법령체계의 복잡성, 규제내용의 산만성, 개별 법률 간의 형평성 결여, 하위법령으로 지나친 위임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환경법의 입법방식으론 모든 환경문제를 하나의 법률에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주의, 오염 종류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복수법주의, 2개의 입법주의를 절충해 단일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단일법에 포함할 수 없는 사항을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절충주의를 들 수 있음. 선진국에선 대부분 복수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경험하면서 당시 발생한 가시적인 환경오염을 개별적 법률 제정을 통해 예방·규제해 왔기 때문임.
- 환경법령의 복수법 체계는 다양한 환경오염의 유형에 따라 오염 매체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지나치게 단순화·합리화된 법령체계도 이해의 곤란성, 법 집행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음.
- 환경법은 오염 매체별로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법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기본법·통합법 유형의 법률이 많아지면 일반 국민은 법 규정의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3) 교육법

- 교육제도와 운영은 각 급 학교의 교육 목적·방법·운영 등에 차이가 있지만, 1949년12월31일 제정·공포된 교육법이란 하나의 실정법으로 장기간 규율함. 교육법은 제정·공포된 후 38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 여건에 대응하지 못하며, 각급 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 교육법은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같이 규정해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법을 분법화, 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으로 분법화함. 교육법 체계의 전면 개편은 단순한 법률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에 관한 철학적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교육법은 먼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법된 뒤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 등이 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음. 복수법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현행 교육법령은 서로 다른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 학교급별 특성을 각각의 복수법령에 반영, 교육법령 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됨.

## 5. 기관별 역할 체계

### 가. 문제의 소재

- 사료관리법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있는 법령임. 대상 동물의 유형(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에 따라 사료관리법을 분장(分章)하는 경우 전체 법령에 관한 관할 부처를 현재와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산동물용 사료를 구분해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돼야 함.
- 반려동물용 사료의 경우 국가기관이 규제를 할 것인지,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자율적인 규제를 할 것인지(민관 공동규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나. 사료관리법령의 소관 부서

#### 1)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 현행 사료관리법의 소관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임. 사료관리법을 대상 동물의 유형(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에 따라 사료관리법을 분장(分章)하는 경우에도 전체 법령의 소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법임.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반대 개념으로서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를 규정할 수 있고, 양축용 사료와 수산동물용 사료는 유사한 원료를 사용해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것이므로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의 근원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사료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목적을 보다 확고히 달성하기 위해 소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sup>116)</sup>
- 수산동물용 사료의 규모는 전체 배합사료 중 1% 이하 수준(160,000톤/20,000,000톤)으로, 극히 적은 양의 수산동물용 사료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소관 부서를 두는 것은 사료 안전성 관리 기준의 일관성을 해칠

116) 한국사료협회 의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sup>117)</sup>

- 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사료관리법령의 소관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양수산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해양수산부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가 무엇인지, 언제 협력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이 매우 불분명해 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수산동물용 사료의 관리와 지원은 사료관리법 관할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수산동물용 사료에 관한 성분검사 등 검사와 적격성 판단은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존재함.<sup>118)</sup>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의 하부조직으로 규정돼 있는데(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 부서로 돼 있어 직제상 체계가 불완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양분화

- 양축용·반려동물용 사료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동물용 사료의 관리는 해양수산부를 소관 부서로 양분화하는 방법임.
- 사료관련법령의 소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수산동물용 사료의 규모가 전체 사료 시장 규모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양축용·수산동물용 사료는 유사한 원료를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동물이 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됐다는 점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 사료관리법령을 관할해야 한다는 것임. 수산동물용 사료의 분장(分章) 이유는 양축용 사료와 수산동물용 사료의 원료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수산동물의 생리적 특성과 환경에 기반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임. 수산동물용 사료에 대해선 해당 생물 종(種)의 특성과 산업 환경을 고려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임.
- 정부조직법 제36조 제1항에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산동물용 사료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라고 보기 어려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용 사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법규상 타당함.<sup>119)</sup>
-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의 경우, 약사법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의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법의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과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으로 각 소관 부서를 달리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을 분장(分章)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117) 한국단미사료협회 의견.

118) 한국사료협회 의견.

119) 한국양어사료협회 의견.

법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양축용·반려동물용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동물용 사료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3) 공동부령 가능성<sup>120)</sup>

- 상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동부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 수산동물용 사료 소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 관련 행정 각부가 반드시 공동으로 부령을 정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공동부령의 형식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야 함. 공동부령을 정하는 경우는 동일한 내용을 둘 이상 부령에 중복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행정 각부가 관할권을 보유해 불가피하게 관련 행정 각부가 협력을 통해 함께 행정의 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수산동물용 사료의 소관 부서를 공동부령으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여러 행정 각부가 관련된 사항이면 하나의 주무 부처를 정하고 해당 부령을 정할 때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 공동부령으로 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공동부령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료관리법령의 소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양분화하더라도, 각 개별 규정에서 반드시 관계 부처의 협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공동부령의 형식을 취할 수 있음.

<표 76>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습지보전법 사례

<b>습지보전법</b>
<p>제6조(습지조사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p>

12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 12. 제21면 참조



<표 77> 사료관리법 분장할 경우 사료관리법 소관 부서 검토

입법 형식안	소관부서	검토 내용
1안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사료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목적을 보다 확고히 달성하기 위해선 소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제안 수산동물용 사료의 규모가 전체 배합사료 중 1% 이하 수준이어서 수산동물용 사료 관리 위해 별도의 소관 부서를 두는 것은 사료 안전성 관리 기준의 일관성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 초래한다고 평가
2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양분화	법규상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용 사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
3안	공동부령	동일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행정 각부가 관할권을 보유해 행정 각부가 협력을 통해 함께 행정의 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

## 6.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표 78>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법화 방안

전문가	의견
축산과학원/ 지상윤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축종마다 다른 사료를 쓰지만, 본질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li> <li>② 축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사료관리법 내에서 분장화를 제안함.</li> </ul>
수산과학원/ 이봉주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산동물용 사료는 특수성이 있어서 현재 사료연구센터에서 업무를 맡고 있음.</li> <li>② 이는 수산동물용 사료만의 법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미임.</li> <li>③ 해양수산부에서도 분법화 관련해서 용역 과제를 의뢰한 적이 있음.</li> <li>④ 해양수산부는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분법화를 진행하지 못했음.</li> <li>⑤ 현행 사료관리법의 개정 때 해수부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음.</li> </ul>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료 원료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축종이 동일하지만 축종별로 사료를 이용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므로 사료관리법 안에서 축종별로 분장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봄.</li> <li>② 사료관리법의 큰 틀 속에서 수산용·양축용·반려동물용 사료를 각 장으로 분리한 뒤 제조시설·라벨링·위생·영양기준 등 규제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li> <li>③ 일본의 사료관리법은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민간에게 맡기고 있음.</li> <li>④ 반려동물용 사료 관련 규정은 다른 나라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처럼 영양기준에 대한 규제 정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한국사료협회/ 홍성수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재 사료업계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음.</li> <li>② 사료관리법에서 양축용·양어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하위 법령까지 분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봄.</li> <li>③ 모든 하위법령을 분법화하는 것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함.</li> <li>④ 사료 안전 규제를 축종별로 나누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하다고 판단됨.</li> <li>⑤ 사료관리법을 분법화해도 사료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사료 안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여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li> <li>⑥ 사료관리법을 분법화하면 사료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커짐. 분법화해 사료 안전을 집중 관리하면 사료산업에 엄청난 규제가 될 수 있음.</li> </ul>

	⑦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이나 수산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임.
한국단미사료협회/ 차근환 부장	① 사료관리법의 분법화에 대해선 강력 반대 입장임. ② 사료관리법 내에서 분장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 ③ 사료관리법 안에서 사료 공급 대상의 생물학적 특성·법의 목적에 따라 장으로 나눌 필요는 있음. ④ 사료는 동물의 먹이이므로 생물학적인 기준에 따라 사료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표 79>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법화 방안

전문가	의견
이화여자대학교 / 오상석 교수	① 사료관리법의 목적은 축산업의 발전이며,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음. ② 선진국인 미국이나 EU는 사료를 식품으로 간주하고 이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음. ③ 사료관리법을 분법화한다면 반려동물용·양축용·양어용 등 대상 동물별로 나눠 각각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원대학교 / 송영한 교수	① 반려동물용 사료는 원료가 동물성 식품이므로 안전 관리가 힘들고 오염 위험이 큼. ② 사료 안전관리 제고가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같은 법령(사료관리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봄. ③ 현재는 사료와 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규제·관리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임. ④ 사료관리법을 분법화하면 분법화 이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 책임이 너무 분산된다는 점이 문제임.
서울대학교 / 홍준형 교수	① 사료관리법의 분법화는 SWOT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함(강점·약점·기회·위협). ② 사료관리 측면에선 분법화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음. 사료 관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별도의 sector(장)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현재 선진국에서 식품·사료의 안전관리 관련법은 분법화가 아니라 통합관리 쪽으로 가고 있음. ④ 환경보전법의 환경 6법으로 분법화 등 분법화 성공 사례는 있음. ⑤ Issue Matrix를 만들어서 이슈별로 어떤 옵션이 가능한

	<p>지 비교·분석하면 분법화가 가능한지,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 수 있음.</p> <p>⑥ 분법화의 장점은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임. 단점은 부서·예산·인원이 늘어나는 등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임.</p>
<p>법무법인 대화 / 이형찬 변호사</p>	<p>① 사료의 원료는 반려동물이나 산업동물이나 모두 동일하지만 사료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축산(산업동물)과 반려동물 등 특성이 완전히 다른 대상을 다루고 있음.</p> <p>② 산업동물은 사료를 먹여 사육한 뒤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임.</p> <p>③ 반려동물용 사료는 해당 동물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반려동물은 99%가 사료를 먹고 영양분을 보충함.</p> <p>④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법은 분법화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봄.</p> <p>⑤ 분법화를 하지 않더라도 사료관리법 내에서 관리 주체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내 부서이면 관리가 잘 될 것이지만,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은 사료를 구매하는 대상부터 다르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p> <p>⑥ 사료관리법의 분법화를 검토할 때 분법화와 관련해 학계의 비판이나 찬사를 많이 받았던 사례를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음.</p>

## 7. 사료 관련 협회의 사료관리법 분법화에 대한 의견

<표 80> 사료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법화 방안에 대한 사료 관련 단체의 찬·반 의견

사료단체	찬/반	의견
<p>한국사료협회 홍성수 부장</p>	<p>반</p>	<p>① 현행 사료관리법에서 사료는 축산법상 가축 및 동물(수산, 반려 포함)의 영양 등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법률상 구분이 없음).</p> <p>②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그 밖의 동물·어류용” 제조시설을 “양축용”과 구분하는 등 공정설정과 안전성 관리에 있어 수산·반려동물의 예외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음(예외 인정은 하위고시 전부개정(2014.4.29)을 통해 시행. 참고 1 참조)</p> <p>③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료관리법은 4개 조문을 제외하고 대부분(28조문)이 품질·안전성과 관련돼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품질·안전성 관리는 하위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검사기준,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통해 규율하고 있음</p> <p>④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품질·안전성 관리에 있어 양축용과 수산·애완용의 차이점은 없는 상황에서 사료관리법령을 구분하는 것은 법령을 운영하고 제도를 마련할 때 혼란이 가중될 우려(사료를 섭취하고 대사를 통해 동물이 영양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동일함)가 있음.</p> <p>⑤ 1963년‘사료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사료의 품질·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과 비슷함. 사료관리법을 사료의 유형별로 분리하면 방대한 양의 사료공정서를 용도별로 분리해야 하나 그 실익이 의문임. 이는 마치 식품공전을 성인용·유아용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음)</p> <p>⑥ 사료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때 법령을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산업진흥 부문에 한정 또는 하위법령에서 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이 필요한 고시(사료의 표시기준 등)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p>
<p>한국단미사료협회 차근환 부장</p>	<p>반</p>	<p>① 생물학적 동물 분류 등에 따른 법의 세분화는 한계가 있음. 현행 사료관리법은 축산·수산·반려동물 산업을 포괄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사료의 안전성 등을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함.</p> <p>② 사료로 사용하는 원료가 동일함. 기본적으로 양축용·반려동물용·수산동물용 사료의 원재료는 큰 차이가 없으며 동물성 단백질 사료의 사용 수준과 원재료의 경제적 가치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함.</p>
<p>한국펫사료협회 김중복 회장</p>	<p>반</p>	<p>① 사료관리법을 분법하면 행정력의 과중과 분산이 예상됨</p>

		<p>② 현행 사료관리법에서 양축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에서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 많음(사료 원료·사료첨가물·행정 조치 등)</p> <p>③ 현행 제도가 장기간 보완 정비돼 왔고, 사료관리법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 산업계가 적용하는데 큰 혼선이 예상됨</p> <p>④ 미국·EU·호주 등은 해당국의 법규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국 펫사료협회 단체가 정부와 협의해서 만든 자율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음. 일본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을 제정해 반려동물용 사료의 위생·안전·표시 또는 마케팅 영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p>
<p>한국양어사료협회 최찬환 협회장</p>	<p>찬</p>	<p>① 수산사료는 축산사료와 비교해 환경과 생리적 특성이 전혀 다른 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원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분명함.</p> <p>② 현행 사료관리법은 동물사료 중심의 법체계에 수산동물용 사료가 부차적인 규율 사항으로 포함돼 규율상의 한계가 있음. 수산동물용 사료에 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지 않음.</p> <p>③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의 세계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산사료의 특수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별도의 체계적인 법제 마련이 필요함.</p>

<표 81> 사료관리법 분법, 분장(章)화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의 찬·반 의견

사료 관련 협회명	분법화 찬반 의견	분장화 찬반 의견
한국사료협회	반대	찬성
한국단미사료협회	반대	찬성
한국펫사료협회	반대	찬성
한국양어사료협회	찬성	반대

<표 82> 사료관리법 분장(章) 때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별 의견

사료 관련 협회명	의견
한국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료관리법의 정의, 산업진흥, 지원 부분만 분장해야 함.</li> <li>② 사료관리법에서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부문은, 하위법령(고시) 분장을 위한 상위법(법률) 근거 조문 신설만으로 충분함.</li> </ul>
한국단미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육 목적에 따른 사료관리법 분장이 가능함. 사료산업은 전통적으로 축산물·수산물 등을 식품으로 섭취하기 위한 양축·양어용 사료를 공급하는 산업임.</li> <li>② 최근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으로, 동물을 기르는 목적이 양분화된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사료관리법 틀에 반려 목적 또는 취미(레저) 등의 목적 등을 포함해 분장할 수 있음.</li> <li>③ 사료관리법에서 반려동물을 분장해 관리하면 시설기준 등 간소화로 중소 상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li> </ul>
한국펫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 사료관리법의 분장을 검토할 때 반려동물용 사료와 산업동물용 사료(양축용 사료)의 차이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와 산업동물용 사료는 목적·소비자·유통채널이 다름. 산업동물용 사료는 생산재이고, 반려동물사료는 소비재(마케팅)이자 무역이 이뤄지는 제품임.</li> <li>② 사료관리법을 분장해 반려동물용 사료를 별도 관리한다면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업체를 위한 사료등록(허가) 기준, 사료 위생 기준, 사료 표시 기준, 사료 영양 기준(개·고양이) 등이 설정돼야 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제품 이력관리 등은 산업동물과 별도로 마련돼야 함.</li> <li>③ 사료관리법에서 반려동물용 사료를 분장하면 반려동물용 사료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ul>
한국양어사료협회	

<표 83> 사료관리법 분장(章)할 때 수산동물용 사료의 정부 내 관리 부서에 대한 사료 관련 협회별 의견

사료 관련 협회	의견
한국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산동물용 사료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사료 계에서 담당해야 함.</li> <li>②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반대 개념으로서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는 양축용과 수산동물용의 차이가 없음. 특히 사료의 품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 내 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li>③ 현재와 같이 수산동물용 사료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되 관리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사료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맞다고 판단됨.</li> </ul>
한국단미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재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일원화함.</li> <li>② 양축용과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동일 원료를 사용함. 양축용과 양어용 사료의 관리를 이원화하면 안전성 기준, 행정관리 등의 차별화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③ 전체 배합사료 중 점유율이 1% 이하 수준(16만 톤/2천만 톤)으로 미미한 수산동물용 사료에 대한 별도 관리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li> <li>④ 현행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되 해양수산부와의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li> </ul>
한국펫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견 없음.</li> </ul>
한국양어사료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부조직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 사료에 관한 관리와 지원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 부서라고 보기 어려움.</li> <li>②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진 현시점에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가 수산 사료에 대한 정책을 전담하는 것이 타당함.</li> <li>③ 사료관리법의 소관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정돼 해양수산부가 관련 정책이나 행정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li> <li>④ 이는 수산동물용 사료 분야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li> </ul>



## 8. 종합 검토 의견

- 반려동물용 사료는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고 사료의 영양 가치·생산성을 중시하는 산업동물용 사료와 특성이 완전히 다름. 반려동물용 사료는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원료 종류와 품질, 기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일반 식품과 같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소비자가 신중히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
- 현행 사료관리법은 산업동물용 사료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다양화·고급화된 반려동물용 사료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산업동물용 사료와 차별화(구분)된 반려동물용 사료업체와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반려동물 사료 법령(기준·규격)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함. 반려동물용 사료는 식품과 유사하게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용 사료와 유사한 원료·가공·표시 기준 하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 유통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함.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보상·배상 등)제도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반려동물용 사료에 적합한 별도 법률 ‘(가칭)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와 유통공정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는 물론 반려동물의 특성에 적합한 반려동물용 사료가 판매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현행 사료관리법은 산업동물용 사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려동물용 사료에 적용하면, 다양화하고 고급화되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음. 일본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법’을 제정함.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에 따라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종류별로 사료첨가물·오염물질 등에 대한 허용치에 차이를 두고 있음. 반려동물의 유형에 따라 반려동물용 사료 성분과 안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용 사료 관리를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해 반려동물의 종류와 특성에 적합한 반려동물용 사료가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용 사료는 산업동물용 사료와 다른 법률로 관리·규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반려동물용 사료는 수출 등 무역 거래에서 건강 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 기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음. 산업동물용 사료는 일반적으로 같은 국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반면 반려동물용 사료나 반려동물용 사료 원료(특히 동물성 원료)는 주로 국제 무역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는 동물성 원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동물 유래 질병의 전파 방지에도 유의해야 함. 반려동물용 건사료나 반건조 사료의 향미제로 동물의 내장 원료로 사용하

고 있음. 반려동물 사료 제조 과정에서 동물 유래 신선 재료나 냉동 원료(특히 냉동 무척추동물)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함. 산업동물용 사료는 주로 혼합과 사출 방식으로 제조되지만 반려동물용 사료는 장기간 품질을 유지하면서 유통·보관하기 위해 냉동·베이킹·레토르트·사출성형·몰딩·냉동 건조 등의 방식으로 수분 활성도를 낮추고 있음. 산업동물용 사료는 생산 후 대개 바로 사용되지만 반려동물용 사료는 제조 후 최대 2년까지 유통됨(유통기한). 이처럼 반려동물용 사료는 산업동물용 사료보다 위생상 취약한 면이 많다는 것도 사료관리법의 분법 또는 분장을 검토할 때 적극 고려해야 함.

-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사료관리법의 분법 또는 분장을 통한 특별 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함. 반려동물용 사료 원료의 정의와 기준 규격을 새로 설정하고,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 설비와 제조기준, 표식 기준, 품질과 안전 기준, 유통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 사료관리법의 분법 또는 분장을 계기로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제품 안전관리 교육 등을 규율할 수도 있음. 반려동물용 사료의 분법 또는 분장은 사료관리법에 사료판매업을 추가하고 사료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 반려동물의 판매 과정에서 보관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판매업을 둘 수 있음. 사료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과 표기, 새로운 기준 규격을 심의·평가할 수 있음. 일본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민간위원회인 펫푸드 표기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동물용 사료의 표기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참고 문헌

- 김대영 외. "양식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12.)
- 김대영 외,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12.)
- 김정대 외, "환경친화형 해산어류 양식업 육성을 위한 배합사료 개발 방향" (2002.02.25)
- 김종진 외,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시장성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0.)
- 김홍균,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2017.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반려동물 유기사료 Q&A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12.)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2017.8.)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6.29)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 (2019.7.25.)
- 류광해, "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02.)
- 박균성, 행정법 강의, (2011)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 12.)
-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입법정책학회. (2011.08)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20.8.)
-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 식품 영업 인허가 제도, (2018.9.)
-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19.6.)
- 오준근, "표시·광고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경희법학』 제42권 제1호, (2007)
- 윤덕훈 외,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매뉴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5.)
- 이상윤,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5.)

이주형 외, “EU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2018.12.)

전략양식연구소, “양식배합사료정보” 국립수산물과학원.

정원준,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2014)

정하중, 행정법 개론, (2017,)

정해량, “소비자 오인 · 혼동 표시 개선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2.)

조성국 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2)

진현정 외, “각국의 동물용 의약품 관리제도 및 조직체계 비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

진현정 외, “농산물(사료)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4.12.)

축산환경자원과, “사료산업 정책방향”. 농림축산식품부, (2019.7.8.)

최병선, “경제적 규제완화 추진방식의 평가 — 인·허가 등록 및 신고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코리아서치. “2019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2019)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통계표.” (201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 반려동물 간식시장 조사 보고서” (2017.9. 15.)

한국단미사료협회. “단미·보조사료 편람” (2018)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수출지원센터.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동향” 한국식품연구원, (2018.3.)

한국법제연구원,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2017)

한국법제연구원, “산림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2019.9)

한국법제연구원,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도출을 위한 연구” (2012. 7)

한국펫사료협회.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17.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2014.)

홍기성 외, “각국의 동물용 의약품 관리제도 및 조직체계 비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세대학교 보건대

학원. (2006)

FAO/WHO. "Hazards Associated with Animal Feed." (2015)

FDA. "A Food Labeling Guide Guidance for Industry." (2014.)

KSFBA. "A Study on the Supply and Demand of Fishmeal and Stable Securing Strategies."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44 No.3 (2013)

Mintel., 2018 (Sector Trend Analysis - Pet food trends in South Kore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재인용)

USDA. "Food Standards and Labeling Policy Book" (2005)

農業資材審議會飼料分科會委員名簿,  
<https://www.maff.go.jp/j/council/sizai/siryou/49/attach/pdf/index-2.pdf>

農業部成立第三屆全國飼料評審委員會,  
[https://www.sohu.com/a/58788422\\_378814](https://www.sohu.com/a/58788422_378814)

전국 사료 심사위원회 후보자 추천에 관한 농무부 총무실 공지,  
[http://www.xmsyj.moa.gov.cn/zcjd/201411/t20141102\\_4123594.htm](http://www.xmsyj.moa.gov.cn/zcjd/201411/t20141102_4123594.htm)

미국 FDA 사이트, [www.fda.gov](http://www.fda.gov)

농림수산물안전기술센터 홈페이지, [www.famic.go.jp](http://www.famic.go.jp)

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http://www.at.or.kr)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jp/iinkai/index.html>

유럽연합 식품안전청 사이트, <http://www.efsa.europa.eu>

ARFSA, <http://www.arfsa.re.kr/index.php?cate=002001&menu=2&sub=1>.

BMEL Statistics Portal, <http://www.bmelv-statistik.de/de/statistisches-jahrbuch/>

BVL, [http://www.bvl.bund.de/DE/Home/homepage\\_node.html](http://www.bvl.bund.de/DE/Home/homepage_node.html)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index.html>

EFSA.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첨가제 및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패널,  
<https://www.efsa.europa.eu/en/panels/feedap>